

인터넷상의 선거보도, 현황과 전망

황 용 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졸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 석사, 박사
- 전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 논문: 「인터넷시대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언론」
「인터넷뉴스사이트: 편집과 기사 쓰기」 외 다수

1. 인터넷언론과 선거과정의 변화

2000년에 치러진 제16대 총선과 2002년 대통령선거 이후 인터넷은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중요한 매체로 그 기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소통시키는 데 있어 인터넷의 영향력은 신문이나 방송과 대등한 위치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이 선거와 같은 정치 커뮤니케이션과정에 가져온 변화는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인터넷이라는 전자적 공간을 통해 뉴스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가 일어나면서 언론산업의 지형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여론과정도 변화했다는 점이다.¹⁾ 전통적 매체의 뉴스가 인터넷에서 새롭게 유통되기도 하고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새로운 뉴스 생산자가 등장하기도 했다.

둘째는 모든 정치행위자들이 서로 직접 연결되는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다원적 구조가 등장한 것이다. 과거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에 의해 정치정보가 제한적으로 걸러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에서 언론을 거치지 않고도 정치집단과 유권자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즉, 정치영역과 시민영역을 이어주던 정보의 관문이 넓어지고 다원화됨으로써 정보의 손쉬운 전달과 확산을 통해 정치 정보 흐름이 증가한다.²⁾

셋째는 전통적 언론보도와 다르게 인터넷언론 보도는 다른 사람과 관심 있는 주제를 두고 토론할 수 있게 해주며 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정치정보의 이용, 정치적 토의, 그리고 행동적 차원에서 정치참여를 증대시키는 인터넷의 잠재력은 기존 정치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³⁾ 인터넷언론보도는 정보제공과 대화의 영역을 넘나든다. 인터넷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1) 황용석, 김재영, 정연정(2000).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언론』. 서울 : 한국언론재단. p.5.
2) Bonchek, Mark Seth(1997). From Broadcast to Netcast: The Internet and the Flow of Political Information. 원성목 옮김. 『브로드캐스트에서 넷캐스트로: 인터넷과 정치정보의 흐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15-28.
3) Rheingold, Howard(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f the Electronic Frontier,

일방향적 매체와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수용자와 저널리스트 또는 수용자간의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호작용적인 매체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정보제공자인 기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메시지 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장치로는 이메일, 채팅룸, 온라인 투표/설문조사, 토론 포럼, 독자투고, 전자게시판, 그리고 네티즌 리포트 등을 들 수 있다.⁴⁾

넷째, 인터넷언론은 공중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드러남으로써 언론 중심의 일방향적 보도 흐름을 바꾼다.

제17대 총선은 인터넷언론을 정치제도 속에 포함시키고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넷째, 인터넷언론은 단순히 뉴스를 보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매개로 여론집단을 형성한다.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 형성된 네티즌 여론은 대중매체에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반영되거나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여론을 강화시키고 확산시킨다.

다섯째, 인터넷언론은 전통적 언론매체에 요구되던 보도 규범의 틀을 깨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객관주의 저널리즘으로 대변되는 선거보도 규범은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중립성, 불편부당성, 심층성, 진실성, 사실성, 정확성, 적절성, 심층성, 유용성, 다양성, 계도성, 참여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민주주의가 언론에 요구하고 언론 스스로도 표방하는 대단히 중요한 언론의 덕목의 하나다.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서 언론인은 무엇보다 뉴스에 당파적 요소가 있는 견해를 투사하지 않아야 한다.⁵⁾

그러나 선거보도와 관련된 이 같은 규범은 인터넷언론에서는 상당부분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 언론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이 같은 개념을 깨고 있다. 특정정당 지지나 정책적 선호도의 표출 등은 객관주의 저널리즘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뉴스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번 제17대 총선에서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선거가 새로운 정치도구로서 인터넷의 힘을 부각시켜줬다면, 지난 4월에 있었던 제17대 총선에서는 영향력이 높아진 인터넷을 정치제도 속에 포함시키고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 2004년 3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이하 공선법)은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규제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법이라고 하겠다. 이 법의 등장으로 인터넷언론이 사실상 국가의 법적 규제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인터넷언론이 선거과정에서 국가차원의 규제대상이 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적 모호성과 인터넷언론보도가 갖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규로 인해 규제대상과 규제기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등 인터넷언론에 대한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Cyberhood vs Neighborhood Community, Utne Reader, Vol. 65, pp.61-73, 1995.

4) 황용석(2003). 온라인저널리즘. 『세계의 인터넷미디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pp.61-94.

5) 이효성(2002).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선거보도 개선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제안.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자료집.

제도화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언론이 최초로 제도 속에 포함된 제17대 총선에서의 인터넷언론의 보도활동을 평가하고 여기에 대한 현행 법제적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인터넷의 언론과 보도매체로서의 특성

1) 인터넷언론

‘인터넷언론’이라는 용어는 ‘온라인저널리즘(online journalism)’, ‘사이버 저널리즘(cyber journalism)’, ‘디지털 저널리즘(digital journalism)’, 그리고 ‘인터넷 뉴스(internet news)’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통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들이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인터넷과 같은 가상의 정보공간을 통해 뉴스로 대표되는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 분배,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⁶⁾

인터넷언론의 영역은 아직까지 역동적으로 변화해나가고 있어 개념정의가 쉽지 않다

이들 용어는 인터넷을 통한 취재, 인터넷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뉴스그룹 서비스나 게시판, 그리고 공공문제를 다루는 토론방 등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지칭하는데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언론은 인터넷이라는 기술환경, 시장환경, 그리고 수용자 환경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역은 아직까지 역동적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생태계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종의 분류가 어려운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인터넷언론을 명확하게 정의내리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먼저, 인터넷언론 개념에서 ‘인터넷’은 TCP/IP라는 프로토콜에 기반한 물리적 네트워크이자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공간을 의미한다. 인터넷언론을 흔히 온라인저널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온라인’이라는 용어는 인터넷보다 더 광범한 용어이다. 온라인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 검색, 그리고 배포를 가리킬 때 느슨하게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generic term)라고 하겠다.⁷⁾ 따라서 온라인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성이나 통신 프로토콜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네트워크 자체에 접속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온라인미디어의 대표적인 것이 웹이므로 통상적으로 온라인과 웹 또는 인터넷이라는 용어들이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6) 윤영철(2001). 온라인저널리즘과 뉴스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7호. p.182.

7) Ward, Mike(2002). Journalism Online. Oxford : Focal Press. p.4.

다음으로 언론 또는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어로 ‘언론’이라는 용어는 journalism을 번역한 경우와 press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저널리즘을 번역한 언론의 개념은 “언론활동이나 이러한 활동분야, 시사적 문제에 대한 뉴스 등을 취재, 편집해서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 보도, 논평, 해설 등을 하는 활동 또는 이러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분야”를 말한다.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인 지르나(jurna) 즉, ‘매일매일 기록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것이 변해서 영어의 저널(journal)로 변형이 되었다. 저널의 개념은 우리말로 정기간행물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여기에 행위, 주의, 제도, 직업 등을 뜻하는 ‘ism’이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⁸⁾

어원상으로 저널리즘은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직업활동을 의미하지만 방송과 같은 전자매체가 등장하면서 방송을 포함하게 되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광고나 오락적 활동을 제외한 시사문제에 대한 논평이나 해설 등을 지칭하기도 한다.

프레스(press)를 번역한 언론의 개념은 신문사 또는 신문제작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언론의 개념을 사용한다. 워드(Ward, 2002)는 언론(journalism)을 언론인에 의해 수행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그 핵심 과정을 4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뉴스의 독자나 수용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정보를 확인(identify)하고 발견(find)하는 행위, 둘째, 기사작성에 필요한 소재를 수집(collect)하는 행위, 셋째, 수집된 정보가운데 선택(select)하는 행위, 넷째,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시(present)하는 행위가 그것이다.⁹⁾

따라서 인터넷언론은 일차적으로 전자적 또는 디지털 정보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저널리즘 활동 즉, 뉴스의 생산과 배포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념정의는 현재 통용되는 인터넷언론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실제로 인터넷언론이라는 개념은 인터넷을 통한 취재, 인터넷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뉴스그룹 서비스나 게시판, 그리고 공공문제를 다루는 토론방 등과 같이 정보공간에서 일어나는 교환행위까지 포괄하는 우산적 개념(umbrella concept)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공통적이고 명료한 개념정의는 찾기 힘들다.

2) 인터넷언론의 종류와 보도상의 특성

<표1> 온라인저널리즘의 형태와 조직특성

8) 임영호(2000). 『신문원론』. 서울 :연암사. pp.20-21.

9) Ward, Mike(2002). op.cit., p.30.

형태	중심기능	대상	선거보도 상의 특성
주류 온라인저널리즘	오프라인 뉴스의 2차 유통 종합 콘텐츠유통 1차뉴스 및 콘텐츠생산	- 언론사 닷컴(동아닷컴, 조선닷컴, 조인스 등) - 언론사내 온라인조직(기존 언론사내 온라인뉴스서비스)	전통적 언론규범의 틀 중시 신문이나 방송의 보조기능
독립형 온라인저널리즘	뉴스의 1차생산 및 유통	- 시사형(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브레이크뉴스, 독립신문 등) - 전문형(아이뉴스24, 이데일리 등) - 지역형(디지털성남 등)	탈 객관주의 보도 뉴스의제의 선택과 집중 높은 상호작용성
인덱스형 온라인저널리즘	뉴스콘텐츠의 2차유통 다매체 뉴스의 통합분류 및 서비스	- 포털 뉴스(네이버뉴스, 야후뉴스 등) (여외, 다음(자체 취재인력 보유))	통합적인 선거뉴스 정보의 재구성 기사 데이터베이스적 성격
토론형 온라인저널리즘	뉴스를 기반으로 한 논평 및 토론/패러디	-논객/방담 사이트 -패러디사이트	이용자 또는 전문가집단간의 선거 이슈에 대한 토론 기능 선거이슈에 대한 창의적 표현매체

인터넷언론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인터넷 언론에 대한 법제화나 규제의 일반화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을 기능적인 측면(담론-정보제공)과 전문직 여부(아마추어리즘-프로페셔널리즘)의 두 차원을 고려해 보면 인터넷언론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주류 온라인저널리즘이다. 여기서 주류란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의미한다. 즉, 대중매체에 의해 운영되는 온라인저널리즘이란 의미이다. 여기에는 언론사 닷컴과 언론사내 온라인뉴스조직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조직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언론은 기능적인 측면과 전문직 여부를 고려,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주류 인터넷언론은 전통적 언론의 규범이나 가치가 우선시 되며 그 틀 내에서 뉴스의 편집이나 제작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선거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신문이나 방송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터넷보도가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모델은 독립형 온라인저널리즘이다. 순수 온라인 뉴스사이트가 다수 등장하면서 기존의 뉴스 매체와 제한적이지만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시사언론적 성격을 띤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은 이미 언론매체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들 온라인저널리즘은 기존 언론매체들의 취재방식과 보도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보도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정치정보의 새로운 유통통로로 기여하고자 한다. 독립형 온라인 저널리즘의 두 번째 형태는 정보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독립형 온라인 전문뉴스이다. 현재 경제전문 온라인 매체와 정보통신 온라인 매체들은 인터넷의 속보성을 바탕으로 기존 매체와 경쟁하고 있다. 경제전문 매체로는 ‘이데일리’와 ‘머니투데이’가 있다. 이들 매체는 경제뉴스의 유통속도뿐만 아니라 소비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inews24’, ‘코리아인터넷닷컴’, ‘ZDNet 코리아’ 등은 정보통신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독립형 온라인 저널리즘들은 투자한 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뉴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뉴스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언론매체의 보도 틀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너뜨리는 시도들이 다수 목격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또한 독립형 온라인 저널리즘은 온라인 이용자만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용 행태에 맞는 뉴스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뉴스의 주제가 제한적이지만 심층적인 경우가 많다. 전문 뉴스매체들의 경우는 수용자 층에 따라서 제공하는 뉴스가 이미 정해져 있어 이용자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도 특징이다.¹⁰⁾

선거보도와 관련해서도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지지를 명시적으로 천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뉴스를 생산, 편집, 유통한다. 전통적인 저널리즘과는 다소 다른 문화와 관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는 인덱스형 온라인저널리즘이다. 목록 분류형(Index & Category sites)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목록 분류형은 야후나 알타비스타와 같은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형태로서 웹에 있는 다른 뉴스 사이트와 링크를 연결해 보다 자세한 뉴스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때로는 자체 편집진에 의해 기존 뉴스를 분류하거나 설명을 덧붙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 포털 사이트들인 야후! 코리아, 네이버, 다음에서 기존 오프라인 언론사와 제휴를 맺어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음은 미디어 다음을 통해 자체 뉴스를 생산하기도 한다.

네 번째는 논쟁적일 수 있는 유형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인터넷에 기반하여 일반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특정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흔히 정치칼럼웹진 또는 논객 사이트로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에 취재기자와 칼럼리스트가 불분명한데, 특정 주장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발적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기업의 형태보다는 동호회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적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프라이즈가 그 예이다. 이 유형은 1차 정보로서의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직업적 언론인으로 부를 수 있는 취재기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문제와 관련한 상호작용적 토론이 주된 운영의 목적이며 대안 언론적 성격을 띤다.

또 다른 유형은 이른바 패러디사이트 또는 풍자사이트로 불리는 인터넷언론이다. 패러디사이트는 전문직주의적 언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의적인 풍자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이므로 사실보도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심의의 규제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범주이기도 하다.

3. 제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인터넷언론 보도의 특성

10) 황용석(2003). 온라인저널리즘. 『세계의 인터넷미디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pp.61-94.

지난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인터넷언론 보도의 여러 특성들 중 특히 특징적인 보도 양상들을 실례 중심으로 몇 가지로 분류하여 이를 정리하였다.

1) 보도 행태상의 특성

(1) 총선 특집사이트 구성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총선보도는 포털 사이트들의 적극적인 가세에 크게 힘입었다. 이들은 특히 오프라인 언론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쳤다. <미디어다음>은 지역 10개 일간지와 제휴를 통해 네티즌들로 하여금 이들 지역신문이 제공하는 총선 관련 뉴스에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야후>는 국민일보, CBS, iTV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폭넓은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블로그와 모바일 등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포털사이트들은 오프라인 언론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쳐**

언론사명	총선 특집 웹사이트 (웹사이트 주소)	주요 메뉴	특징
조선일보 (조선닷컴)	바꿔라! 4·15 총선 (www.chosun.com/politics/elections.ht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선 지역뉴스 △ 선포라치 △ 화제의 지역과 주자 △ 동영상으로 본 총선 △ 총선일기 △ 총선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선 지역뉴스 - 12개 주요 지역 언론과 제휴를 맺고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현장 뉴스를 제공함 △ 선포라치 - 독자들이 총선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림 △ 동영상으로 본 총선 - 직접 제작 △ 총선일기 - 총선에 출마하는 주자들이 직접 겪는 현장을 그대로 전달함 △ 4·15 총선 퀴즈 짬을 찾아라! - 4·15 총선 예측 게임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17총사 (17joins.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선뉴스 △ 총선주자 △ 총선여론 △ 참여마당 △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낡은 정치, 새 정치 - 독자들의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새 정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함 △ 온라인폴 - 총선 관련 이슈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을 조사함
한겨레 (인터넷한겨레)	정치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17대 총선 (415.hani.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표결과 △ 총선기사 △ 네티즌의견 △ 17문 17답 △ 총선정보 △ 사이버 총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브폴 - 총선 관련 이슈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을 조사함 △ 1000자평- 독자들의 후보자와 지역구에 바라는 점을 제시함 △ 17문 17답 - 총선 후보자에게 17가지의 총선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질문하여 이 결과를 제시함 △ 사이버 총선 - 각 분야별 네티즌이 뽑은 비례 대표를 제시함
다음 (미디어다음)	4·15총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vote.media.daum.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표토론펙 △ 총선뉴스 △ 총선포커스 △ 참여마당 △ 만화 속 세상 △ 제17대 총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일간지들과 제휴, 지역의 총선정보를 제공함 △ 클린존 캠페인 - 특정 선거구를 '클린존 (Clean Zone)'으로 선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유권자 및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 실천활동 △ 디씨 IN 총선 - 디씨인사이드와 MBC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imnews와 함께 독자들이 직접 찍은 총선 관련 사진, 패러디 이미지 등 다양한 총선 사진을 제보 받음 △ 정당성향평가 - 유권자 자가진단 테스트인 KBS 정당정책 비교 프로그램을 통해 각 당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확한 이해 도움(주요 정책에 대한 유권자와 정당정책간의 비교가 가능, 유권자의 선거참여율과 관심을 증대시켜 정책선거를 유도, 정당의 정책개발 문화를 유도)

언론사명	총선 특집 웹사이트 (웹사이트 주소)	주요 메뉴	특징
오마이뉴스	2004년 4·15총선 네티즌이 정치판을 바꾼다 (www.ohmynews.com /election2000/index.as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찰칵! 총선 이모저모(디카/TV) - 시민기자들과 네티즌들이 찍어보내는 디카와 동영상을 공개 모집함 △ 나도 정치 전문가 - 독자들이 정치에 대한 정책들을 개진 △ 라이브폴 - 총선 관련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조사함 △ 정치 개혁을 향한 멀고 험한 퀴즈 여정, 도전 서바이벌 퀴즈 - 총선시민연대와 오마이뉴스가 정치개혁을 위한 서바이벌 퀴즈를 진행함 △ 총선 신문보도 리포트 - 총선미디어연대 신문보도 평가 리포트 제공함
미디어몹	www.mediamob.co.k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몹'은 게시판 기능과 개인들의 블로그 문화를 합쳐 놓음 △ 주 3회(월, 수, 금) 자체 제작하는 '헤딩라인 뉴스'를 제공함 △ 포토샵을 이용한 합성사진, 플래시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로 제작함

(2) 이용자의 선거 보도 참여를 위한 기제의 개발 및 강화

지난 17대 총선에서의 인터넷언론 보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언론 이용자 스스로가 선거 보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들이 개발되거나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언론사가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보도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류인터넷언론의 경우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확장하거나 강화해 다채로운 정보제공 및 유권자 참여를 선보였다. 가령, 중앙일보는 <조인스닷컴>을 통해 총선 사이트인 '17총사'를 개설해 2004 총선 주식시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네티즌 정치자금 '모의후원'을 통해 총선후보에게 사이버머니를 후원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KBS는 인터넷 팀을 신설하고 MBC는 <아이엠뉴스>를 통해 뉴스속보나 관심 지역의 현장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독립형 인터넷언론의 총선보도 형태는 더욱 참여 지향적이었다. <오마이뉴스>는 기사 댓글 가운데 참신한 시각과 내용을 '나도 정치평론가' 코너에 올리거나 정치개혁을 위한 서바이벌 퀴즈를 진행하기도 했다.

17대 총선에서의 인터넷언론보도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물을 통한 이용자 참여의 기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각 인터넷언론은 이용자가 디지털카메라나 디지털캠코더 등으로 직접 찍은 영상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선거 보도에서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기제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조선닷컴의 '선택파라치', 오마이뉴스의 '찰칵! 총선 이모저모', 미디어다음의 '디씨 IN 총선'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온라인폴과 같은 여론조사 기법을 통해 유권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장치를 두었다.

이번 선거에서 상당수의 인터넷언론사는 총선 관련 이슈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조사하는 온라인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선거 기간 동안에 발생한 민감하거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이용자의 관심을 유발하거나 여론의 추이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기제로서는 인터넷한겨레의 '라이브폴', 조인스닷컴의 '온라인폴'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퀴즈나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이슈에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다가가도록 했다. 17대 총선에서는 위의 참여 기제 이외에 다양한 참여 기제들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조선닷컴의 '4·15 총선 퀴즈쟁을 찾아라!'와 인터넷한겨레의 '사이버 총선'을 들 수 있다. 조선닷컴의 '4·15 총선 퀴즈쟁을 찾아라!'는 일종의 4·15 총선 예측 게임으로서 이번 총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인터넷한겨레의 '사이버 총선'은 이용자들이 사회 각 분야별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추천함으로써 네티즌이 뽑은 비례대표를 제시하여 총선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다.

(3) 중앙기반 인터넷언론과 지역기반 인터넷언론의 제휴를 통한 선거 보도 뉴스의 공유

이번 총선에서는 중앙기반 인터넷언론, 특히 중앙지의 인터넷신문과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지역기반 인터넷언론인 지역지의 인터넷신문과 제휴를 하여 총선 관련 보도 뉴스를 공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이는 총선이 각 지역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총선 관련 뉴스를 생산할 수 없는 현재의 중앙기반 인터넷언론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인터넷언론사의 효율성 제고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미디어 통합 및 멀티미디어 이용

이번 총선 보도에 있어서 인터넷언론은 기존 매체의 특성들이 상호 융합되고 통합되면서 미디어 통합의 양상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터넷신문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조선닷컴의 '동영상으로 본 총선'은 조선닷컴이 직접 총선 관련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여 보도함으로써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또한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하여 총선 관련 보도에 있어서도 다양한 멀티미디어 포맷을 이용한 제작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총선 관련 패러디사이트에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총선 기간 동안 화제가 되었던 미디어몹의 '헤딩라인뉴스'의 경우 플래시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제작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여 전달력의 극대화를 이루어내었다.

(5) 보도 준칙 제정

인터넷언론의 이번 총선 보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인터넷언론이 선거보도준칙을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물론 오마이뉴스라는 특정 인터넷언론이 이러한 준칙을 만들었지만, 향후 인터

넷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각종 규칙 마련에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자사 선거보도준칙에서 정치개혁과 참여주의 확대, 정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높은 선거보도 수준, 질적으로 높은 인터넷저널리즘,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높은 신뢰성을 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권자 중심 보도, 정책대결 중심 보도, 독자 참여 쌍방향 보도 등을 제시하였다.

2) 인터넷 총선보도의 내용적 차원

(1) 의제설정 위력 대선에 비해서 약화

주류 인터넷언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터넷언론은 조직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 힘들다. 보도 역시 특정 이슈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인터넷언론은 보도되는 의제의 특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매체이다. 즉, 이슈지향적인 매체이다. 이슈의 집중화를 위해 개별 언론사는 특정 목표이용자 집단을 설정하고 제공하는 뉴스의 범주를 그 집단에 맞추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즉, 이슈의 틈새시장을 이용하려는 시도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국 2백여개 지역구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총선은 취재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다양한 지역이슈가 혼재되는 등 대통령선거에 비해서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어렵다.

또한 지난 총선이 '탄핵정국'이라는 특정 이슈가 전체 의제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독자적으로 의제를 창출하고 공론화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터넷언론이 탄핵풍, 박풍, 추풍, 노풍(老風) 등 정치권과 기존 언론이 만들어낸 의제에 휩쓸리는 양상을 보인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7대 총선에서 인터넷언론은 정치권과 기존 언론이 만들어낸 의제에 휩쓸리는 양상을 보여줘

(2) 정치 풍자와 패러디의 활성화

기존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인터넷이용자들의 저항적 참여를 유희적 방식으로 매개하는 풍자형 보도 또는 패러디 보도가 여론형성의 새로운 도구로 등장했다. 탄핵 가결 직후부터 붓물처럼 쏟아져 나온 패러디 정치풍자와 현실 비틀기가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대표적으로 <디씨인사이드>, <라이브이즈닷컴>, <풀빵닷컴>, <미디어몹> 등의 활약과 부상을 들 수 있다.

정치풍자나 패러디 사이트의 상당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규제대상에서는 제외되었

지만 경찰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내용적 성격에 대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3) 인터넷언론간의 이념적 대결구도

기존의 오프라인 미디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익성이라는 매체 성격과 사회의 공기관이라는 매체 역할 등이 강조된다. 따라서 선거 보도에 있어서 오프라인 미디어는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거나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표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자사의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대변하는 인터넷언론의 역할이 상당하였다. 특히 인터넷 언론의 이념적인 지향에 따라 이용자층도 양극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인터넷언론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이용자층도 양극화되는 경향이 나타나

이번 총선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로 굳어지면서, 대표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독립신문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진보 진영의 오마이뉴스 등이 자사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총선 관련 뉴스들을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보도의 공정성 시비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기계적인 중립에 매몰되거나 이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편파성을 띤 기존 오프라인 언론과 달리 보다 큰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응하려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이를테면,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 뉴스가치가 높은 정치인의 말이 일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었다면 인터넷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유권자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덧붙여짐으로써 공론의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4.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와 법적 쟁점

1) 인터넷언론에 대한 법적 정의의 문제

인터넷언론에 대한 매체법이 없는 가운데 급하게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이하 공선법)에서의 인터넷언론 정의는 선거보도 심의 및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규제행위와 관련해서 많은 혼선을 가져왔다.

공선법은 인터넷언론과 관련된 매체 법이 없는 가운데 선거보도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를 법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인터넷언론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5에 의거)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

하는 자”로 정의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배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조에 의거)’ 조항도 두고 있다.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내용, 운영 및 이용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이다.

개정 선거법은 인터넷언론의 개념을 정간법에서 형식적으로 차용해 와

이 법안에서 정의 내린 인터넷언론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간법의 ‘신문’과 ‘잡지’ 등에 대해 내려진 법적 정의를 형식적으로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정의에서는 보도와 논평이라는 내용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운영의 형태나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사적 또는 공적, 개인 소유 또는 조직이나 법인 소유,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 사이트가 모두 포함된다. 언론적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는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를 포함시킬 수 있다.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선거시기에 선거와 비선거를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회적 담론이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2) 인터넷언론에 대한 내용규제상의 문제

이 법의 내용 가운데 인터넷언론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부정 감시단을 선거일전 120일부터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에 위법한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중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정보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스팸메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도록 함(제82조의4 및 제82조의5 신설), ▷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제82조의6 신설) 등이다.

공선법상의 인터넷언론 개념은 규제의 효율성을 위해 조금하게 만들어져

공선법이 돈 안 드는 선거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인터넷언론의 매체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규제조항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많은 실정이다.

아울러 공선법이 담고 있는 규제모델은 방송규제모델에 가깝다. 방송은 제한된 자원인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과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정부로부터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사실상 공선법상의 인터넷언론개념은 매체의 특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도출되었다기보다는 규제의 효율성을 위해 조급하게 만들어진 개념으로 인터넷언론을 대중매체와 등치시키는 논리구조에 기반 해 있다.

가. 심의 기준의 문제

공선법에서 인터넷언론을 정의 내리고 하부 시행령에 근거한 정부의 규제행위를 보면 신문과 방송에 적용되던 법규를 인터넷언론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내용규제와 관련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위원회는¹¹⁾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훈령 제1호(제정 2004. 3.19)를 통해 선거기간에 인터넷언론에 대한 보도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¹²⁾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은 기존의 대중매체에 적용되는 것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먼저, 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심의 규제내용이 과도하며 그 기준 역시 대중매체에 적용되는 것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심의규제기준을 보면, 보도의 ▷ 공정성, ▷ 형

1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근거해 있다.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훈령 제1호,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제2조(법규정 준수) 인터넷언론사는 선거보도를 함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정성) 인터넷언론사는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함에 있어 그 내용과 구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형평성) 인터넷언론사는 선거보도의 편집 및 기사배열 등에 있어 정당·후보자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객관성)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6조(정치적 중립성) 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평성, ▷ 객관성, 그리고 ▷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상호작용적인 매체인 인터넷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많은 언론들은 상업적 저널리즘의 초기 형태였던 정파지 모델과 유사한 언론들이 많다.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서 정파지적 언론의 존재가 여론의 질서를 훼손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논의지만, 적어도 현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들 매체들이 사회적으로 언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창의적인 표현매체라고 할 수 있는 페러디매체나 논객 또는 담론 사이트 역시 표현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전통적인 전문직 저널리즘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양한 인터넷언론 영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과도한 내용규제조항과 표현성의 침해

둘째는 과도한 내용규제조항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방송에 대한 심의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심의조항을 보면 방송모델을 인터넷언론에 일반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심의조항을 살펴보면,

▷ 사실과 의견기사의 분리¹³⁾

이 조항의 경우, 인터넷언론의 스토리텔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조항으로서 전통적인 데드라인 뉴스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전통적 언론의 기사작성방식도 혼합형으로 변해가는 추세에 인터넷언론에 대해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는 기사를 작성하라는 지침은 인터넷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은 과도한 내용규제조항을 담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규제¹⁴⁾

이 조항은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확률표집에 의한 대표성 있는 조사결과만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과 표본 오차를 명시해야 한다'는 선거법 108조 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다. 이 법안이 적용된 사례로, 3월 25일 <한국방송>과 <아이엠비시> 등 5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법 및 인터넷선거보도 심의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해진 경고 1건, 주의 2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2건 등의 제재조치를 들 수 있다.

13) 제2장 7조, "인터넷언론사는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며,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전달과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14) 제2장 9조 ②, "인터넷언론사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방송〉에 대해서는 3월 20일 서울 강남지역 7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에서 1위”라는 등의 표현을 썼다”며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이엠비씨〉쪽에는 지난 21일 대구 동구갑·수성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내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역시 보도를 자제토록 했다.

또한 〈이슈투데이〉가 홈페이지(<http://www.issuetoday.com>)를 통해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조사대상과 표본오차율 등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경고조치와 함께 내용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한국방송〉과 〈아이엠비씨〉의 경우, 기술한 문항이 ‘오차범위’라는 확률적 진술을 전제로 해서 통계치에 대한 결과를 해석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해서 심의규제의 대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물론, ‘접진’ 등과 같이 더 좋은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기사가 국가기구에 의해 규제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들 두 기사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로부터 같은 기사에 대해 전혀 심의통보를 받지 않은 것들이다.

이것은 결국, 선거방송심의보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의 규제 강도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이슈투데이〉의 사례에서는 대표성 있는 확률 표집에 근거한 조사만 가능케 함으로써 사실상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조사의 보도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대다수 보도들이 자기 선택형 비확률 표집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조항은 인터넷언론매체가 갖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문과 방송매체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여론조사(온라인 폴)는 해당 사이트 방문자들의 의견표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게 해주는 정기능이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도도 기존 매체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사진에 대한 규제¹⁵⁾

이 조항은 선거보도에 있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패러디사이트와 같은 풍자형 언론행위를 원천적으로 불법화시키고 있다.

▷ 광고에 대한 규제¹⁶⁾

이 조항은 기존의 신문과 방송에는 허용되는 정치 및 의견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어서 매체간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책임조항 즉, 심의조항은 있지만 권리조항은 없는 불평등한 규제라고 하겠다.

다. 이용자의 표현적 참여저해

15) 제3장 14조 ② “인터넷언론사는 사진·동영상의 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제4장 15조 “인터넷언론사는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선법에서 ‘인터넷언론 게시관 실명제’ 조항¹⁷⁾은 인터넷언론사의 게시관에 글을 쓰는 사람은 주민등록전산데이터에 기초해서 실명인증을 받아야만 된다는 강제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대표적 조항 가운데 하나이다. 법안이 준비되던 초기 단계부터 관련 단체나 기업,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되었다.

위헌소지가 있는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이용자들의 표현적 참여를 가로막아

인터넷언론 게시관 실명제의 찬반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 명제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익명성의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17일 실명인증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이 법은 △명백한 사전검열이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본래의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어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실명제가 아무 소용이 없어 도입목적의 적합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중앙선관위의 감시와 현행법으로도 사후적인 처벌이 가능하여, 인터넷실명제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 법이 규정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 등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실명제는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혼재된 인터넷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실명화로 인해 ‘표현적 참여’가 저해된다.

그리고 이미 대다수 언론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 자율규제방식을 무시하고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대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포털사이트는 자율 규제에 의해서 이미 게시관 실명제를 하고 있다. 실명인증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신용평가원의 자료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금융거래가 없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업계에서는 다른 방식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완전한 인증은 사실상 어렵다.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해외동포들에 대해서는 검증할 자료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러 위험을 고려하면서도 직접규제 법안을 마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5. 결론

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관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항 “①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관 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언론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매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내 매체법은 아날로그매체의 물질적 특성에 맞추어져 제정
되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매체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언론과
가장 유사한 정책모델을 갖는 매체법을 수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신문, 그리고 방송 가운데 인터넷 언론은 신문 또는 출판모델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
다.¹⁸⁾ 전통적 언론매체에 대한 규제모델은 신문모델, 방송모델, 전송모델(common carrier)로 구분
할 수 있다. 신문모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소규제의 원칙을 적용시킨다. 그
러나 방송모델은 방송이 가진 영향력과 희소성에 근거하여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규제중심의 모델이다.¹⁹⁾ 통신모델의 경우 보편적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업자의 시장규제는
하지만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는다. 또한 통신은 사적 커뮤니케이
션으로 비밀이 보장된다.

인터넷언론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매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이 세가지 모델을 고려할 때 인터넷언론은 신문이나 출판모델에 가깝다. 출판이란 그 사전적
의미가 ‘문서(文書) · 회화(繪畵) · 사진 등을 복제하여 다수 독자에게 발매 또는 배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선 일반 출판물과 같은 물질적 형태(stoffliche Verkoperung)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e-book과 같이 전자출판임을 전제로 공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정기간
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 상의 ‘기타 간행물’ 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다. 또한 인터
넷언론에서 수행하는 주된 기능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의 발간 또는 출판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전기통신회로’ 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상 통신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비밀이 가
장 요구되는 통신과는 달리 인터넷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정보는 공개적인 정보유통을 그 특성으
로 하는 점에 착안하여 본다면 출판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방송의 경우는 전파의 희소성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규제모델로서 인터넷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언론과 관련한 기술발달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규제모델을 설정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언론이 신문모델에 가깝기 때문에 정간법을 디지털
미디어에 맞도록 대폭 개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18) 박선영(2003). 인터넷매체와 관련한 제언. 국회언론발전연구회 제10차 토론회 토론발제집.
2003년 5월 28일.

19) 이영음, 최영목, 박진희(2000). 『방송·통신 융합과 경계영역 서비스 등장에 따른 규제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pp.21, 23.

20) 박선영. 앞의 글. 발제문.

참고문헌

- 박선영 (2003). 인터넷매체와 관련한 제언. 국회언론발전연구회 제10차 토론회. 2003년 5월 28일.
- 윤영철 (2001). 온라인저널리즘과 뉴스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7호, 182-213.
- 이효성 (2002).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선거보도 개선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제언.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자료집.
- 임영호 (1999). 『신문원론』. 서울 :연암사.
-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2000.11.), 한국헌법학회.
- 황용석 (2003). 온라인저널리즘. 『세계의 인터넷미디어』, 61-94,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황용석, 김재영, 정연정 (2000).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언론』. 서울 : 한국언론재단
- Bonchek, Mark Seth (1997). From Broadcast to Netcast: The Internet and the Flow of Political Information. 원성묵 옮김. 『브로드캐스트에서 넷캐스트로: 인터넷과 정치 정보의 흐름』, 15-28,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Rheingold, Howard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f the Electronic Frontier,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93, "Cyberhood vs Neighborhood Community, Utne Reader, 65, .61-73, 1995.
- Deuze, Mark (2003). The web and its journalisms: considering the consequences of different types of newsmedia online. new media & society. 5(2), .203-230.
- Garrison, Bruce (1998). Computer-Assisted Reporting, 2n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ll, Jim (2001). Online Journalism - A Critical Primer, London : Pluto Press.
- Janowitz, Morris (1975). "Professional Models in Journalism: The Gatekeeper and the Advocate." Journalism Quarterly, spring, 618-626.
- Pavlik, J. (2001). Journalism and New Media,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ultz, T. (2000). Mass media and the concept of interactivity: An exploratory study of online forums and reader email. Media, Culture & Society, 22, 205~221.
- Ward, Mike (2002). Journalism Online. Oxford : Focal Press.
- 헌법재판소결정 1998. 2. 27. 96헌바2; 1996. 10. 31. 94헌가6; 1996. 10. 4. 93헌가13 등.

인터넷 선거보도의 문제점과 법적 책임¹⁾

도 두 형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대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

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석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공보이사

논문:독점규제법의 기업종합규제
조항의 해석상의 문제점 외 다수

1. 서(序)

가. 많은 논란을 거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또는 '법'이라 함) 개정안이 2004. 3. 9. 국회를 통과하였고, 개정 공선법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개정 공선법은 선거가 공정히 치루어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 보완, 강화하였고, 이처럼 새롭게 도입된 장치 중 하나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나.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애초 통신수단으로서 개발된 것이지만,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언론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언론이 활자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활동하는데 비하여, 인터넷 언론은 인터넷이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한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으로는, 쌍방향성, 시간·공간의 무제약성, 다기능성, 정보과다성, 익명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²⁾ 인터넷을 이용한 언론을 통상 인터넷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인터넷언론에 의한 선거보도 역시 매체의 특성이 반영되어 다른 언론에 의한 선거보도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다. 공선법의 개정으로 인터넷 선거보도가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규제의 필요성 유무, 개정 공선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어서 현재까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례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정 공선법의 문제점과 향후의 과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본 논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한 것이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2) 윤명선, '사이버스페이스와 자유', 「인터넷·언론·법」(한국법제연구원 2002. 5. 29) 13 내지 16쪽.

2. 인터넷 선거보도 규제의 도입

가. 국민의 언론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란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는 전통적으로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충족되어 왔으므로 언론의 자유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언론사를 통한 언론보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함)과 방송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³⁾ 따라서 현행법상 언론매체는 크게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로 분류되고, 전자는 정간법에 의하여 그리고 후자는 방송법에 의하여 각 규율되는 이원적 시스템이 채택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들 법에는 한편으로는 언론기관의 활동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기관의 역기능으로부터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나.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매체는 전통적인 인쇄매체나 전자매체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인터넷의 성격에 관하여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통신매체로서 출발한 것이고 인쇄매체보다는 방송매체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더 나아가 인터넷언론의 위력은 지난 대선 때 발휘되었고 향후 공직선거에서도 그 위력은 점점 더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통신과 방송이 점차 융합되어 가고 있고, 소위 인터넷 방송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으나 방송법상 인터넷 언론은 방송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정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타간행물'(정간법 제2조 제9호)에는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정간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호), 인터넷언론도 정간법상의 기타간행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간법의 실무상 인터넷언론은 언론으로서 취급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인터넷언론도 하나의 언론으로 볼 경우 이를 정간법의 개정을 통하여 규율할 것이냐⁴⁾ 아니면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규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는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다.⁵⁾ 그런

3) 정기간행물이 아닌 출판물에 의한 언론활동에 대하여는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적용되지만 이 법에 의한 언론활동의 규제의 정도와 의미는 정간법의 그것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되므로 이하의 논의에서는 위 법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취급하지 아니한다.

4)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인터넷언론을 규율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인터넷언론은 위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5) '인터넷시대의 언론매체 관련법제의 제문제' 「인터넷·언론·법」(한국법제연구원 2002. 5 29.) 37쪽

데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매체를 종래 주로 종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해 온 정간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소위 사이버자유주의자들(cyber-libertarians)은 인터넷매체에 대하여는 다른 표현매체와는 달리 공적인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⁶⁾ 즉 인터넷은 국경이 없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통신수단이므로 이를 일정한 영역에서 물리적으로 한정된 사회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법제로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언론활동은 사이버자유주의자들이 바라는 대로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폭력적 표현, 무절제한 표현, 무책임한 표현이 난무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난장판이 초래될 것은 불문가지이고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우정치, 국론분열, 정보조작 등 극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규제수단으로서 자율적 규제, 기술적 규제 및 법적 규제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는데,⁷⁾ 최종적인 규제수단은 법적 규제수단에 귀착할 수밖에 없다. 우리 법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인터넷언론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다만 이처럼 다른 언론매체와는 달리 법적 규제장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특정한 분야에서 인터넷언론을 규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터넷언론이 다른 전통적인 인쇄매체와 다른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라. 공선법은 선거의 공정한 운영과 선거부정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과거 우리 나라에서 행하여진 선거의 대다수가 부정, 타락, 금권 선거로 얼룩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선법이 선거의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부정선거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위 역사적 경위에 비추어 필연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규정이 많은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⁸⁾ 2000. 2. 28. 공선법이 개정되어 선거기사심의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제도가 금번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제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기사심의제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데,⁹⁾ 그 중 인터넷선거보도심의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본다면, 첫째, 방송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에서도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인터넷언론의 자율성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오류에 기인한 것이고, 둘째, '불공정'이란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자의적인 개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셋째, 심의위원회의 구

6) 윤명선, 전계논문 21쪽

7) 전계논문 23 내지 29쪽

8) 성낙인, 전계 논문 39쪽

9)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년) 405, 406쪽

성과 운영 측면에서도 시민적 대표성을 갖는 구성이 어려워 결국 정치적 구성이 예상되며, 넷째, 심의기준이 모호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마. 개정 공선법은 종전보다도 선거공영제를 강화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고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과 함께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보도가 과거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공선법이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제도를 신설한 것은 선거기사심의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새로운 제도를 신설함에 있어 선거기사심의제도와 뚜렷이 구별되는 차별성이 나타나는지, 즉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3. 개정 공선법 및 관련 규정

가. 개정 전 공선법은 인쇄매체에 의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 공선법은 인터넷언론사에 의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신설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비상설적인 기관임에 비하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상설기관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나. 개정 공선법은 '인터넷언론사'를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아울러 동법상의 '선거보도'의 범위에는 "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법 제8조의5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방송'은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방송을 의미하므로 방송법상의 방송 개념과는 다르다고 할 것인데, 법상 이에 관한 구체적 정의를 하지 아니하여 향후 인터넷과 방송이 점차 결합할 경우 개념상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위원회는 특정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가 인터넷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일반의 의문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2004. 3. 18.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라는 제목으로 예시기준을 공표하였는데, 이 기준에서는 인터넷언론사를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첫째 유형은 정간법상의 언론사 및 방송법상의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둘째 유형은 자체적으로 기사·논평·칼럼 등을 생산하여 신문·방송·웹진 등의 형태로 보도하는 인터넷 사이트, 셋째 유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뉴스 공급원으로부터 뉴스

나 기사를 제공받아 편집·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포함), 넷째 유형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인터넷언론관련단체에 회원사로 가입된 인터넷 사이트, 다섯째 유형은 기타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로 결정한 인터넷사이트이다. 한편 인터넷언론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는, 첫째,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둘째,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셋째, 기타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내용·운영 및 이용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함) 제2조}.

다. 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법 제8조의5 제6항), 이에 따라 위원회가 제정·공포한 것이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이하 '심의기준'이라 함)이다.

라. 심의기준은 먼저 총칙에서 인터넷언론사의 법규준수의무(제2조) 및 공정성·형평성·객관성·정치적 중립성 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3조 내지 제6조),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사실보도, 사실과 의견의 구별, 여론조사 보도, 인용보도, 인터뷰 보도, 대담토론 등의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제7조 내지 제12조). 그리고 표제 및 사진과 관련하여 보도제목, 사진·동영상 등의 게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제13조, 제14조), 광고에 있어서는 의견광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제15조), 상업광고를 제한하고 있다(제16조). 심의기준 제7조 내지 제16조가 규정하는 사항들은 결국 심의기준 총칙,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 제8조의5가 규정하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구체적인 세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심의기준에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법 소정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하여도 위원회가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마. 인터넷언론사의 불법적인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정정보도의 경우를 보면,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법 제8조의6 제1항), 위원회는 심의 후 당해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정정의 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한편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보도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날까지)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발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계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가 제기되면 먼저 당사자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즉시 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 후 반론보도 여부 및 그 내용 여하를 결정하게 된다(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 한편 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위원회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정당·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위원회규칙 제20조 제2항). 그리고 위원회에 의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에 관한 최종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하여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일반원칙에 따라 소송으로 이를 다룰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정정보도 명령 또는 반론보도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통보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법 제256조 제3호).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의 절차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반론보도청구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8조의6). 이러한 절차를 순수한 권리구제절차라고 본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기능 중에 이러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뿐 아니라 사전적으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권리침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심의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로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한 법 제8조, 위원회의 목적을 규정한 법 제8조의 5 제1항, 제6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보다 넓게 해석하는 입장에서, 위원회 위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청구가 없더라도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위원회규칙 제18조 제2항). 다만 이처럼 이해관계인에 의한 신청이나 청구 없이 위원이 스스로 상정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위원회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법문상 이와 같은 구제수단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나 반론보도청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원 발의에 의한 심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구제조치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겠다. 다만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와는 달리 정정보도를 위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것은 단지 위원회의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원 발의에 의한 심의를 거쳐서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게 되므로 향후 법 개정시 이상과 같은 취지를 명백히 하는 내용으로 법규정이 제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위반사례의 분석

가. 서(序)

위원회는 2004. 3. 15. 발족하였고 곧바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므로 현재까지 위원회가 취급한 사례들은 대부분 제17대 총선과 관련된 것이다. 인터넷 언론사에 의한 불공정 기타 왜곡된 선거보도의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이를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나누어 주요한 사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나. 여론조사결과보도 관련

- (1) 일부 TV 방송사들이 자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OOO당 텃밭인 OOO 선거구 무명인 모 후보가 여성인 OOO당 모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다.", "OOO 선거구 지지도에서 OOO당 모 후보가 크게 앞섰으나 인물 적합도는 OOO당 모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1위이다."라고 보도한 사안 및 "당선 가능성에서도 모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라고 보도한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결과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향후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하여 위와 같은 보도는 자제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였다.
- (2) 모 인터넷언론사가 자사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선거관련란을 마련하고 이에 "4.15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질문과 함께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에 대한 '투표하기'를 통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누구든지 '결과보기'를 통하여 정당별 투표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는 이는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결과 공표시 조사대상,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한 공선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경고조치와 함께 위반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 (3) 모 인터넷언론사가 자사 홈페이지의 3월 20일자에서 서울 OOO선거구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관세분석을 하면서 "여론조사결과 지지율에서는 모 후보가 두배가 넘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모 후보측은 맥이 빠진 상태이다."라고 보도하고, 서울 OOO 선거구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관세분석을 하면서 "OOO당 모 후보측은 17일 모 방송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모 후보와 10% 이상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당혹한 표정이 역력하다."라고 보도한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는 이는 여론조사결과 공표시 조사대상,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한 공선법을 위

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의조치를 하였다.

- (4) 모 일간신문의 인터넷사이트가 온라인 리서치업체와 동등으로 3월 23일, 24일 양일간 자사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는 네티즌만을 대상으로 대표성이 결여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당별 지지도를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네티즌의 75% 탄핵찬성의원 안 찍겠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는 "일부 네티즌들만이 참여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전체 네티즌의 의견으로 확대해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공선법 제10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 (5) 지방신문의 인터넷사이트가 '선택 4.15 총선표발'- △△ 000 당 정서 업고 000 후보 3선가도 질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O 후보를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같은 날 '△△ 000당 000 후보 우세 00당 000 약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특정 후보를 부각하여 보도하고 "000당 O후보의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라고 선거결과를 예단하여 보도한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는 심의기준 제7조 제3항(인터넷언론사는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해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편파 보도 관련

- (1) 모 인터넷신문 사이트가 '하루 1000명에게 인사합니다 000 후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동 후보의 "고향 OO을 실리콘 밸리로 키우겠다."는 등 총선공약을 집중 부각시키고 동 후보의 사진을 게재한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는 위 보도가 전체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한 것은 심의기준 제3조(인터넷언론사는 선거보도를 하면서 그 내용과 구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및 제4조(인터넷언론사는 선거보도의 편집 및 기사배열 등에 있어 정당·후보자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각각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 (2) 모 인터넷방송사이트가 3월 2일자 뉴스관련 프로그램에서 "OO 총선거획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을 보도하면서 모 후보가 "000 의원이 8년을 000 민주당악회라는 데서 매주 약 1000명씩 가는 걸로 알고 있다", "000당 의원님쪽에서 당원 간담회를 하면서 빵하고 우유를 줬어요"라고 하는 등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방송하고, 동 프로그램 사회자가 "000 의원은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들어가서 썩었습니까?"라고 상대 후보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동

방송내용을 자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시듣기'를 통하여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게시한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는 이는 공선법 제8조, 심의기준 제3조(공정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정보도 조치를 하였다.

(3) 모 지역인터넷신문이 3월 31일자 '△△△ · 000 50억 커넥션'에 대한 무소속 000 출마예정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무소속 000 후보 폭탄선언 △·0 30억 커넥션 전면 부인 지역정가 적잖은 파장 예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00 대학과 000 정치특보 사이에 50억이 오갔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000시 00대학교 4년제 인허가, 00교회 옆 실버타운 설립, 제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시 000 후보 공천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용보도한 데 대하여, 000 후보가 사실확인이 안된 기자회견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하여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는 위 보도가 기자회견 내용과 000 후보 측의 반론내용을 균형있게 보도하였고 달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4) 모 지역인터넷신문이 4월 9일자에서 '000 후보 재산축소 · 은폐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 중 "000 당 000 후보가 지난 3월31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관위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28억원 대의 금액을 축소하였다"라고 보도한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는 언론사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보도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자유이나 관련 사항이 이미 선관위에 고발되어 최종 판단을 남겨둔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후보자의 소명 없이 보도한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사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 보도는 공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하였다.

(5) 모 전국지의 인터넷사이트가 4월 6일자 '00당 3보1배 후 00지역 지지도 상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선거기간 중 금지된 여론조사결과를 구체적인 지지율과 함께 정당관계자의 발언을 인용보도하였고, 3월 31일자 '00당 멈칫 000당 완만한 상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내용을 보도하면서 특정 정당의 대표사진만을 부각 보도한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는 공선법 제108조 제1항, 심의기준 제3조(공정성), 제4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라. 인용보도의 출처표시 관련

(1) 모 전국지의 인터넷사이트가 '4.15 총선 현장 진짜진보-진짜보수'라는 제목의 기사 중 "00당 공천 직후인 27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 O 대표(45%)가 O 의원(19.7%)을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보도한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는 여론조사

인용보도시 인용매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거나 재편집해 게재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주의조치를 하였다.

마. 사례의 분석

(1) 현재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사안 중 불공정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사례 및 여론조사결과를 불공정한 방식으로 보도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례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의 보도를 한 사례들이라고 하겠다. 즉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문제된 사안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터넷 선거보도는 대부분 선거에 임박하여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몰두하다보니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선거보도가 행하여지더라도 이를 즉각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현재까지 처리한 사안의 상당수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이의신청, 반론보도청구를 하여 구제절차를 개시한 사안들 보다는 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 심의 상정을 한 사안이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으나 이러한 재심청구가 인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위원회가 스스로 위반사례를 찾아서 심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시정조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제도에 대한 홍보와 선전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위법한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조치는 신속하고 강력하여야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즉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가 끝나버리면 피해자로서는 위법한 인터넷선거보도의 피해를 복구하거나 만회할 기회를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가 현실화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다만 위원회가 발족 후 준비나 경험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곧바로 제17대 총선을 겪었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여러 번 위원회를 개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5.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제재

가. 공선법상 위법한 선거보도를 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

치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명령이라고 하겠다(법 제8조의6 제2항, 제5항).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위원회가 반론보도를 명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정정보도를 명한 사례도 극히 적다. 법 위반이 인정되어 위반내용 삭제요청을 한 사례도 있지만, 당해 인터넷언론사가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후속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위반내용 삭제요청은 일응 정정보도결정보다는 약한 제재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제재의 일종이므로 설사 당해 인터넷언론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적 제재라고 해석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나.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된 사례도 있지만, 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의 대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취한 조치는 경고, 주의, 공정보도협조요청 등이 대부분이다. 위원회가 이처럼 경미한 조치를 한 것은 사안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재를 가하기에는 경미하다고 판단하였거나,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여서 아직 인터넷언론사들이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향후 당해 인터넷언론사가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촉구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그 실무관행이 정착된 것도 아니므로 부득이 처음부터 강도 높은 조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고려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위법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인을 생각할 때 초기부터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제도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실무관행을 축적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6. 결론(향후의 과제)

가. 정간법상 인터넷매체가 기타간행물이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 정간법의 실무운용상 인터넷언론사는 정간법상의 언론사로 취급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간법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언론사를 정간법상의 언론사로 편입시켜서 종래의 언론매체에 추가되는 새로운 유형으로서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언론이 종래의 언론매체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과연 인터넷언론을 전통적인 언론규제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아직 인터넷언론사의 성격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선법이 비록 선거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인터넷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러한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자들로부터 심한 저항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법적, 사회적,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와 논의가 거듭되어야 하겠지만 개정 공선법이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성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보인다.

나. 다만 익명성, 신속성, 쌍방향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매체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여러 번의 선거과정을 통하여 입증되었고, 비록 계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짧은 기간의 시행을 통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인터넷언론사의 분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인터넷언론사라는 명칭이 사용되더라도 그 종류가 극히 다양하다. 즉 기존의 제도언론의 인터넷사이트처럼 인쇄매체의 언론을 그대로 인터넷으로 옮겨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인터넷사이트만을 통하여 언론활동을 하는 사이트도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인쇄매체에 대한 기존의 선거기사심의제도가 적용되므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제도는 중복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 제도의 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터넷언론사의 유형에 따른 규제의 다양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음에 비하여 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바 비록 규제대상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선거보도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규제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이처럼 소속기관을 달리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중국적으로는 양 기관을 통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심의기준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현행 심의기준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넷언론이 전통적인 언론과 여러 면에서 상이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인터넷언론에 고유한 독자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사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제재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위원회가 스스로 의안을 상정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문상으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청구를 기다려서 위원회가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실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아직도 사이버공간을 자유공간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한 규제의 시도를 자유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네티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도 엄연히 사회구성원이 관여하는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서의 활동이 오프라인의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이 이러한 사이버공간에 적용되고 규제가 행하여져야함은 당연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향후의 논의는 인터넷언론사에 의한 선거보도의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이버공간에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불공정

한 선거보도를 억제하고 규제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 선 제
가톨릭대 법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법대 및 동 대학원 졸
인디애나대 로스쿨 법학석사
위스콘신대 로스쿨 법학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저술: 『네티즌을 위한 e-법학』, 『Cyberlaw』
논문: “언론의 자유의 사상적 기초”,
“명예의 사회적 기초” 외 다수

I. 문제제기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은 인터넷언론의 의견게재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최초의 법규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법의 내용 가운데 인터넷언론과 관련된 주요 논란사항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인터넷언론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상의 위법정보에 대해 삭제요청권을 부여한 점, 인터넷언론사에 실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허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언론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개정 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 관련조항은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위 조항들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불복운동을 전개중이다.

이에 본 주제 하에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싸고 일었던 논란을 짚어 보고 위원회의 설치와 심의대상 선정 그리고 실제 심의내용 등이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실명제와 위법정보 삭제요청권, 통신자료 요구권, 패러디물에 대한 엄격한 단속 등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모델의 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문제점 개관

1. 인터넷언론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문제의 논의는 공직선거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영역인 인터넷언론의 정의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언론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유일하다. 특히 개정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언론과 관련된 법이 없는 가운데 단지 인터넷상의 선거보도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언론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¹⁾ 그러나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내용, 운영 및 이용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은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서 배제된다.²⁾

이 법에서 정의 내린 인터넷언론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기간행물법의 '신문'과 '잡지' 등에 대해 내려진 법적 정의를 형식적으로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의 정의에서 보도와 논평이라는 내용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운영의 형태나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사적 또는 공적, 개인소유 또는 조직이나 법인 소유,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 사이트가 모두 포함된다. 언론적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는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를 포함시킬 수 있다.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선거 시기에 선거와 비선거를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회적 담론이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 개념은 인터넷의 특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도출되었다기보다는 규제의 효율성을 위해 조급하게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제3항에서 통신·방송의 설비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개념이나 설명은 헌법이나 판례, 학설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다. 따라서 사상이나 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표하는 것이면 어떠한 형태의 행위(담화, 토론, 연설, 연극, 방송, 신문, 도서, 문서, 사진 등)이건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³⁾ 실제로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하다.⁴⁾ 따라서 인터넷도 의사형성적인 작용을 하는 한,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

1) 공직선거법 제8조의 5.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

3) 권영성, 헌법학원론, 463-464면.

4) 헌재 1998. 2. 27. 96 헌바 2; 1996. 10. 31. 94 헌가 6; 1996. 10. 4. 93 헌가 13 등.

는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킬 목적으로 제작하는 정보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인터넷의 언론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사상이나 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발표하는 것이면 어떠한 형태의 행위이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인터넷도 당연히 그 언론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더욱이 막대한 시설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는 달리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직접 생산·가공·송수신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대재생산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매체(alternative media)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기도 한다.⁵⁾ 따라서 인터넷은 그 자체로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언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도식적인 매체구분론에 의존, 인터넷의 언론성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미디어와는 상호작용성, 탈중앙집권성, 익명성, 접근의 용이성, 초월성 등이 분명히 다른 기술적·본질적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특성분석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사이버공간에 대한 법제문제에 관해 오랫동안 자유시장론(free marketplace of idea)과 공적검토론(public deliberation) 사이에 공방이 있었으나,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넷매체를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새로운 매체로 인정하고 정보수용자의 들을 권리, 말할 권리, 접근권 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양성 증진을 강조했다.’⁶⁾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의 언론성을 아직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도식적인 매체구분론에 의존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의 언론성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거보도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의 홈페이지까지 인터넷언론사로 규정하여 이를 직접 또는 매개하는 행위까지 모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반

5)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I -21세기 표현의 자유-, 417-19면; 박선희, “인터넷신문의 뉴스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한국언론학보 제45-2호(2001), 117-55면; 박춘서, “시민운동과 대안언론: 한국적 대안언론 유형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2000년 여름호, 190-221면; 윤영철,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7호, 2001.

6) Jack L. Goldsmith, Against Cyberanarchy, First Amendment Law Handbook(James L. Swanson ed.); Cass R. Sunstein, The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 First Amendment Law Handbook(James L. Swanson ed.).

론보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인터넷언론사를 언론사로서의 권리주체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거기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기간동안에는 강력한 의무주체로 관리·감독·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함목적성이라고 하는 법의 이념을 간과함과 동시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결과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언론관련법에서는 인터넷매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왜 유독 공직선거법에서만 인터넷매체의 언론성을 부분적이거나 인정했는지, 그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1994. 3. 16.에 제정된 이후 20번에 걸쳐 개정하면서 그 중 10번의 개정을 인터넷이 대중화된 2000년도 이후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특성을 살려 조문화하지 못한 채, 규제와 관리·감독 위주의 졸속 개정작업을 한 것은 매체에 관한 우리나라 입법수준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⁷⁾

3. 선거와 인터넷의 관계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최근의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으면서도 인터넷에서 교환되는 공론과 시민단체의 활동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의 예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한 매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현촉진적인 매체이자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정치과정 중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잠재력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⁸⁾

그것은 인터넷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과 실시간 토론의 가능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이 선거매체로 기능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여론을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선거를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도 찾을 수 있으며, 정치적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선거매체로서의 기능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선거매체·정치매체로서 가장 강력한 장점을 갖는다.

기존의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존의 유권자동원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후보자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⁹⁾ 특히 후보자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선거운동보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미디어선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공중파방송의 주파수가 부족하여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 내에 화면을 통해서만 자신을 표현할 뿐 상호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진실로 유능한 후보자보다는 임기응변이 능하고 감성적인 인물이 더 잘 선택된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이버선거운동이 정착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상호작용성이 가장 큰 특징인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토론문화가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유권자

7) 김영석 외 5인 공저, 인터넷언론과 법, 60-61쪽.

8) B. M. Owen, The Internet Challenge to Television.

9) Michael A. Bailey, Ronald A. Faucheux, Paul S. Herrnson & Clyde Wilcox, Campaign & Elections: Contemporary Case Studies, Congressional Quarterly, 2000; Larry M. Bartels & Lynn Vaveck, Campaign Reform: Insights and Evidence; Stephen Coleman, Televised Election Debat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들이 후보자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한 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¹⁰⁾ 또한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사이버선거운동의 특징을 간과할 수 없다.¹¹⁾

미디어선거보다 사이버선거가 훨씬 더 국민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더 친화적이라는 것은 이론이 없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인터넷정치시대'로 옮겨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²⁾ 급격한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상황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체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보혁명에 가까운 IT의 발전은 기존의 헌법체제에도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대표제에 기초한 기존의 통치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기존의 헌법체제의 불완전성 또는 기능실패를 교정할 수 있으며, 둘째, 네티즌이나 사이버공동체들이 활발하게 공공정책에 대하여 비판과 요구를 함으로써 참여정부를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셋째,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으로 인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는 개방성과 정보유통의 신속성, 그리고 상호작용성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올려진 정보는 공간이나 시간적 제약없이 누구나 접속하여 얻을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터넷은 여론형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거기서 비롯되는 정치과정상의 특성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 즉 정당이나 언론·이익집단이 아닌 개개의 네티즌들을 통해 나타난다. 결국 선거운동도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4. 인터넷 선거보도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은 정부가 인터넷언론의 의견계재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최초의 법규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법의 내용 가운데 인터넷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에 위법한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중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정보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 정보 전송시 스팸메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위의 조항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 돈 안 드는 선거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조항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많은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선거보도 규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0) 2002년 대통령선거때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가 4위로 기록됨으로써 종이신문에 대한 인터넷신문의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 신문은 '대한민국의 언론권력이 교체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한겨레 2003. 5. 15.자)

11) 자세한 것은 윤영민, 사이버공간의 정치 참조.

12) 백선기, 사이버선거와 인터넷, 2002년도 한국언론학회 봄철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5-61면.

Ⅲ.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점

1. 문제의 규정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언론사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 등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³⁾

또한 제2항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6항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항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¹⁴⁾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문제점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그 설치와 기능에 있어서 다수의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관련매체를 담당·관리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일반적 태도이다. 예컨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하고 있다.¹⁵⁾ 그런데 인터넷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는 유독 그 심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직접 설치한다는 것은 동일한 공직선거

13) 공직선거법 제8조의 5 제1항.

14) 공직선거법 제8조의 6.

15) 공직선거법 제8조의 2 및 제8조의 3.

법 내에서도 입법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일반적이며 절차적인 공정을 담보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공정성의 문제로 주로 인식되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취급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국가기관 안에 설치하는 것은 간접적인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어

둘째,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검열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 경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명백한 국가기관 안에 설치하는 것은 그 조직과 기능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사전검열에 해당할 우려가 없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록 명백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라면 그 기관이 행한 등급분류보류제도 사전 검열의 금지대상이 된다고 한 바 있다.¹⁶⁾ 그렇다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명백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휘하에 있고 통제를 받는다면 검열 금지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언론이 알 권리와 정치적 기본권의 신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터넷언론을 위축시키기에(chilling effect) 충분하므로 간접적인 검열에 해당할 우려가 없지 않다.

셋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그에 따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아무리 선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댓글이 자유로운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규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⁷⁾

넷째, 인터넷 선거보도의 규제의 일환으로 위법정보 삭제요청권, 통신자료 요구권, 패러디물에 대한 엄격한 단속 권한 등이 부여되어 있는 바, 이것은 인터넷이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범법의 우범지대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막강한 권한이다. 이 중에서 특히 패러디물에 대한 엄격한 단속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고양된 정치적 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비례의 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의 많은 부분은 인터넷이 범법의 우범지대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어

16) 헌재 2001.8.30, 2000 헌가 9.

17) 성낙인, 개정 국회의원선거제도 관련, 2004. 3. 26. 한국헌법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문.

다섯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대중매체 기준을 인터넷언론에 적용하고 이중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정부의 규제행위를 보면 신문과 방송에 적용되던 법규를 인터넷언론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론조사보도와 관련된 조항들이다. 특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확률표집에 의한 대표성 있는 조사결과만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거방송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같은 기사에 대해 전혀 심의통보를 받지 않은 것들조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선거방송보도 심의보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의 규제 강도가 더 크다는 매우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IV.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1. 배경 및 경과

인터넷의 확산은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통해서도 정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치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지평을 넓혀왔다.¹⁸⁾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기존의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이나 게시판에 이용하는 방법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표출과 정보제공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토론방이나 게시판을 통한 유권자들의 의견개진이다.¹⁹⁾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의견개진은 곧바로 정치적 의사소통이나 여론형성으로 이어짐으로써 그 자체가 바로 사이버선거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때로는 이와 같은 정치과정에서의 변화가 새로운 매체에 익숙하지 아니한 연령층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2002년의 대통령선거에서 경험한 바 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선거운동은 기존의 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 후보자 거리연설회 등 면대면 접촉의 각종 집회를 개최하는 선거운동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진입장벽이 낮으며, 인터넷이 갖는 쌍방향성 또는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²⁰⁾

따라서 기존의 미디어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소외되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대안매체인 인터넷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인터넷상의 각종 게시판이나 커뮤니티가 잘못된 욕구분출의 수단 또는 다수의 폭력으로 악용되었던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검증되지 않은 선거관련 정보나 입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한 전파의 신속성과 편리성, 참여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선거결과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인터넷보급률과 이용률이 가히 세계 최고이며 정보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더라도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문화가 저급하다면 인터넷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인터넷을 통한 민주적 토론과 숙고를 통한 여론형성 기능이

18) 김영래,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2001.

19) 이종희, “인터넷 시대 진보의 가치와 행동양식”, 황해문화, 여름호, 42-56면.

20) Norris Pippa, A Virtuous Circle: Political Communications in Postindustrial Societies, 143면.

나 인터넷 선거운동의 장점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²¹⁾

이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만이라도 인터넷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입법화되었으나, 그 실효성과 부작용이 예상되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명제를 주장하는 측은 의사표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익명제를 주장하는 측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의견이 완전히 상반되어 있다. 이처럼 논란이 많은 이 부분을 성급히 법제화하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공직선거법은 충분한 숙고를 거치지 못한 채 줄속으로 개정되었다.

인터넷실명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했어야

개정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언론사 및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사이트 혹은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 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과 신용정보업자는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해 줄 수 있고, 허무인 또는 타인명의의 아이디(이용자식별번호)로 게시된 의견은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²²⁾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언론 게시판 실명제’ 조항은 법안이 준비되던 초기 단계부터 관련 단체나 기업,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되었다. 현재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그리고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같은 인터넷 언론 단체와 148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인터넷언론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이 되고 말았다.

인터넷언론 게시판 실명제의 찬반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익명성의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실명인증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이 법은 명백한 사전검열이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본래의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어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실명제가 아무 소용이 없어 도입목적의 적합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중앙선거위의 감시와 현행법으로도 사후적인 처벌이 가능하며, 인터넷실명제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 법이 규정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 등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인터넷실명제의 문제점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갖고 있는 쌍방향성으로 인한 자정능력과 익명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인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과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원래의 목적 이외로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을 강제하

21)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판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2)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는 것이어서 또 다른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조문을 문언대로 해석하여 확인의무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확인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연 강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실명확인이 된 자의 의견만을 게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터넷언론사 또는 홈페이지관리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²³⁾, 이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친목이나 화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의미의 친교 사이트도 오고가는 내용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선거기간 동안에는 정치성을 띤 내용들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이트에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장치를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그동안 사이버공간에서의 무분별하고도 무책임한 정치적 콘텐츠들이 정치문화와 그 결과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인터넷이 정치적 기본권의 신장에 기여하는 것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인터넷언론 게시판 실명제의 반대 논거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익명성의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인터넷실명제는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준국가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의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극단적이며 최후적 방법을 표현의 최초 단계에 적용한 경우로서 사전 검열의 금지에 해당한다.

둘째, 개인정보가 본래의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염려가 다분히 있으므로, 자기개인정보 관리 및 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예컨대 민간 인터넷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구할 때 네티즌의 행태에 대한 조사에서 약 10% 이상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²⁴⁾ 따라서 현실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의 경우 그 빈도가 더욱 심하리라고 예상된다. 그렇다면 실명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즉 인터넷실명제 도입목적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와 현행법으로도 사후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실명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도(less restrictive method)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 중에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이 갖고 있는 익명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축시켜

넷째, 실제로 인터넷실명제는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혼재된 인터넷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언론에 직접적으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간과

23) 공직선거법 제261조.

24) 성선제, 사이버공간과 사생활 보호, 56면, IT의 사회문화적 연구:21세기 메가트렌드 시리즈 04-15 (2004).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이미 대다수 인터넷언론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율규제방식을 무시하고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인터넷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대다수의 인터넷언론사나 포털사이트는 이미 자율적으로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율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권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자율방식이 강제방식보다 덜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실명인증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신용평가원의 자료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금융거래가 없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소년의 경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투표권은 없지만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인 동시에 현재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또한 누구보다도 인터넷에 익숙한 계층인 청소년에게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이자 실험의 장이다. 그런데 이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크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업계에서는 다른 방식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완전한 인증은 사실상 어렵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상망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해외동포들은 검증할 자료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러 위험을 고려하면서도 직접규제 법안을 마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이 같은 법적 행위가 인터넷상의 여론 활동이나 인증의 정확성 차원에서 더 이상의 큰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V. 바람직한 개선방안

1. 규제의 원칙

인터넷언론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방법과 한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바로 인터넷이 갖는 공개성과 신속성, 상호작용성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공적 광장(public forum)이라는 이론으로 그 제한의 방법과 수단을 정립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오프라인에서 정부가 일반대중의 접근을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도로나 공원(traditional public forum)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 검열이나 허가 등과 같은 전면적인 규제가 불가능하며, 정부가 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필수불가결한 이익(compelling interest)이 있음을 정부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용규제는 불가능하고 시간과 장소, 방법상의 규제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신분증이나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해당하는 제한적 공적 광장(limited public forum)의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에 비추어 표현의 주제와 행위자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요컨대 전통적인 공적 광장에서는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content-based regulation)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위헌심사도 엄격심사의 기준이 적용되지만, 제한적인 공적 광장에서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시간과 장소, 방법에 따른 규제(content-neutral regulation)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 선거보도에서의 문제는 오프라인에서처럼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부학자들은 마을공원(village green)이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마을회관이나 동네모임의 공원처럼 그 동네에 거주하는 자(회원 내지는 네티즌)가 언제든지 접속해서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부각된 것이다.²⁵⁾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인터넷이 언론으로서의 속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존의 정보제공자(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주도의 언론개념에서 이용자 주도의 언론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포착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터넷이 가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서 민주적인 의사표현에 가장 적합한 매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인터넷 선거보도의 규제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제한의 문제가 바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그 매체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²⁶⁾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이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촉진적 매체라는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²⁷⁾

이렇게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선불리 매체구분론에 근거해 제정된 입법에 구속된다면 인터넷매체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

선거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하나로서 선거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는 방법 등에 의해 너무나 많은 제한과 규제를 받고 있다. 선거와 관련된 이러한 일련의 규제가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상의 선거보도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주적 자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그 무엇보다도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실임은 틀림없으나, 절대적 자유는 물론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명예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본질적 부분의 침해는 금지되며 과잉금지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제한의 경우에도 인터넷이 가장 참여적 시장이고 표현촉진적 매체라는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상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올라오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치적·사회적으로 위법한 표현에 대하여 선거보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적·사회적으로 위법한 표현을 담고 있는 인터넷 선거보도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는 전적으로 실정법의 위반여부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²⁸⁾ 사이버공간

25) 김영석 외 5인 공저, 인터넷언론과 법, 61-62면.

26) 권영성, 헌법학원론, 489-95면.

27) 헌재 2002. 6. 27. 99 헌마 480.

28) 박용상, 표현의 자유, 190-91면, (2000).

에서의 표현자체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고 실정법을 위반하였다면, 인터넷이라고 해서 다른 매체를 통한 표현보다 더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²⁹⁾

2. 구체적 개선방안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폐지 내지는 민간기관으로의 전환

위의 규제의 원칙에서 볼 때,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선거보도 규제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정보화사회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시일에 쫓겨 줄속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여론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선거기사와 관련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정부가 국가목적으로서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은 뒷전으로 미룬 채 행정편의주의에서 규제와 관리·감독만을 입법화했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증진하거나 보장 또는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정부기관으로 인식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바람직해

주기 보다는 주로 규제와 금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입법의 시각도 문제지만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되는 수많은 홈페이지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도 의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인터넷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과거지향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입법태도로는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운동과 정치방식을 개선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생활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사이버생활로 접어들었으나 법은 아직도 그 부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준정부기관으로 인식되는 옥상옥 격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일종의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이의 폐지가 바람직하다. 차선책으로 순수한 민간기관으로 그 조직과 기능을 이관하여 자율적 규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율에는 권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편파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고 그 기관의 결정에 대한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도 스스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삭제요청권도 인터넷의 특성과 법 집행의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역시 의문시된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법집행을 위하여 삭제요청권을 삭제하고 인터넷언론 자체에 강한 사후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29) Kenneth J. Brown, Assessing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Regulation of Modern Speech Aimed at Social Reform,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Feb. 2002, 478면.

30) 성낙인, 개정 국회의원선거제도 관련, 2004. 3. 26. 한국헌법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문.

2) 인터넷실명제 폐지

공직선거법은 법의 명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거부정을 척결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부정 방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규정이 많아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참여적 기능과 표현촉진적 기능을 위축시키는 인터넷실명제는 폐지되어야

이미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공중과 방송과 다른 ‘가장 참여적 시장’ 내지 ‘표현 촉진적 매체’라 하면서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된다고 밝힌 바 있다.³¹⁾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 시장 내지 표현 촉진적 매체’로 규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은 인터넷의 참여적 특성과 표현 촉진적 특성을 막는 법적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즉각적인 의견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 법에 대한 위헌적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의 참여적 기능과 표현 촉진적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인터넷실명제는 첫째, 사전검열의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둘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셋째, 현실적으로 이의 규제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가 압도적 다수이다. 그렇다면 이의 폐지가 정당성 측면이나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3) 사후 책임 강화

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언론의 등장에 따라 그것이 전통적인 언론법제의 규제 밖에 있는 통신에 불과하다면 그들은 자유로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사전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사후책임을 철저히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사실 일부 인터넷언론은 정치적 입장 표명을 이미 한 것이나 다름없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터넷언론은 스스로의 부담을 짊어진 것이다. 즉 인터넷언론은 그 공간의 무한성만큼 책임도 무한하다. 따라서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고 그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하여 책임을 질 사안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인터넷언론의 생존 여부는 바로 인터넷의 바다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³²⁾

따라서 사전 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사후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31) 헌재 2002. 6. 27. 선고, 99 헌마 480.

32) 성낙인, 인터넷매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술논총, 122-23면, 방일영문화재단, 2003.

잘못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민·형사상의 법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후보자의 고정관념을 철저히 불식시키고, 네티즌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의 자율 규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기폭제가 되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실무근의 악의적인 비난을 일삼는 네티즌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될 것이다.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장 철 익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 논문은 필자가 2003년 11월 법원 내 <언론법 연구회> 세미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과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 판례, 우리나라의 현실 등에 대해 발표한 것을 보완·정리한 것으로 이번에는 전회에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부터 게재한다. -----편집자 주

3. 우리 나라의 경우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여부

(1) 미국의 위와 같은 입법 및 판례의 태도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방지하고, 투고 내용을 사전에 자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다는 정책적 고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¹⁾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위에서 언급한 나라들의 입법이나 판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예견가능성(침해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회피가능성(침해배제의 기대가능성)을 구체적 작위의무(삭제의무 등)의 근거로 삼아 위 작위의무에 위반할 경우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2) 우리 나라에는 명예훼손에 있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¹⁾ 학설상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완전 면책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찾기 어렵고,²⁾

1) 정보통신부에서는 2000. 9. 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개정안에서는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바꾸고 있다)의 입법예고 당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규정은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①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 ② 당해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 가능한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단순히 접속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불법정보에 대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연방정보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상당 부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청회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이 정보통신사업자들에 의한 정보검열의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정보유통 및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결국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그 규정이 삭제되었다. {권영준, 앞의 글, 주 46)에서 인용}

2) 일본에서는 앞서 본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였다(速水幹由, “인터넷프로바이더의法的責任論·通信役務說の立場から”, 「인터넷法学案内」(인터넷弁護士協會編著), 日本評論社, 189면).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통신사업자인데, 동법에 규정된 통신의 검열 금지 조항과 통신의 비밀 보호 조항에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check하여 부적당한 것을 삭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즉 우리 나라는 미국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화나 법의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침해행위를 가능하게 한 시설 등을 제공하였고, 서점·레코드점·소프트웨어도매상 등 배포업자들이 일정한 경우 그 책임을 지게되는 점과의 균형 문제,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역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피해자들보다 더 쉽게 가입자들의 침해를 막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는 유효한 방어수단이 없다는 점, 명예훼손 등의 가해자, 위법한 자료를 게시한 행위자는 기술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고 인터넷의 국제성에 비추어 재판관할 등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며, 가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등 피해자의 가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상충하는 가치와 이해관계의 조화를 생각한다면, 미국처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책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³⁾

나. 법적 구성

(1) 제3자가 게시한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방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강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는 ① 손해배상, ② 침해금지 및 제거청구, ③ 정정보도청구, ④ 반박내용의 게재청구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⁴⁾

(2) 관련법령

우리 나라에서도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의 투고내용을 스크린 하도록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제3조 제1항), 통신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제54조) 및 이용에 있어서의 공평의 의무(제3조 제2항)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게시판 등의 투고 내용은 공개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성질상 비밀성을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통신의 자유에서 말하는 보호받아야 할 통신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통신의 비밀보호 규정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실질적으로 통신의 비밀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예컨대 1:1 채팅을 통한 명예훼손적 발언의 반복)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황찬현, 앞의 글, 23면 ; 이인석, 앞의 글, 193면.(일본에서는 앞서 본 通信役務說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付髓役務說이라 부르고 있다).

- 3) 이인석, 앞의 글, 188면 ; 권영준, 앞의 글 569면 ; 김재형, 앞의 글, 533-534면 ; 황찬현, 앞의 글, 28면
4) 나머지 구제수단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손해배상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이나 약관의 해석을 통하여 삭제의무를 도출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김재형, 앞의 글, 535면 ; 新美育文, “パソコン通信での名誉毀損”, 法学教室 205호(1997. 10), 有斐閣, 77면).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더 나아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까지 부담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므로(니프티 사건 항소심 판결 이유 참조 : “퍼스컴 통신 네트워크 주재자는 개개의 회원에 대하여 비방, 중상 등의 발언을 삭제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 또는 기타 계약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인석, 앞의 글, 주 31)도 같은 입장이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다루지는 아니한다.

② 금지청구 및 제거청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침해상태를 직접 야기한 침해자가 아니므로 침해배제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민법 제214조의 침해배제청구의 상대방은 그 방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다(김재형, 앞의 글, 537면 ; 이인석, 앞의 글 189면).

③ 정정보도청구 :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나 정정문 게재 또는 철회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김재형, 앞의 글, 538면).

④ 반박내용의 게재 청구 : 반론보도청구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제53조 제1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는 그러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대한 경고나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법 제44조는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률들은 추상적으로나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의 통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다음에는 이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해된다.⁵⁾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도 참고할 만하다.⁶⁾

5) 이인석, 앞의 글, 192면 ; 김재형, 앞의 글, 536면 ; 권영준, 앞의 글, 580면

6) 제5장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신설 2003.5.27>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77조의2 (복제 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 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는 자(이하 "복제 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

(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법률들을 검토하여 보면,⁷⁾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피고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에서 정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이나 정보통신법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⁸⁾ 위 법률들에 근거해서 곧바로 피고에 대한 작위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이다.

(3)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 작위의무위반

(가) 관리, 통제권 유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작위의무를 논하기 위한 전제로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게시판 등의 관리는 이용자와 사이에서는 회원과의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이용약관에 의한다. 통상은 위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투고는 서비스제공자측에서 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약관과 앞서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법 및 ‘조리’에 근거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내용의 삭제 등의 통제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통제권의 유무에 대하여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대법원 1998. 2. 13. 97다37210 판결(공 1998, 736)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에 따른 삭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 평가된다.⁹⁾

이 사건 피고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저속한 표현, 근거 없는 내용, 동일한 사안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는데,¹⁰⁾ 이용자가 게시물을 올림에 있어서는 위 문구의 유효함을 인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피고의 삭제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설령 위와 같은 문구의 게시가 없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조리상으로 피고의 삭제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작위의무의 근거

학설은 일정한 경우 앞서 든 전기통신사업과 정보통신법의 규정 및 조리에 기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작위의무까지도 인정된다고 한다.¹¹⁾ 인격권 보호를

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 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7) 앞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8) 따라서 모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9) 원고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이 PC통신하이텔에 올린 통신게시물을 피고 한국피씨통신측이 임의로 삭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용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 노동조합의 회원들만 사용하는 회원메뉴게시판을 포함하여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일시중지, 폐쇄를 한 것은 법령 등에 위반한 게시물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법하고 이를 필요한 한도를 넘은 과잉 조치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10) <http://www.cheongdo.go.kr/> (2004. 2. 24. access).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이러한 문구가 게시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1) 이인석, 앞의 글, 195면 ; 황찬현, 앞의 글, 33면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작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조리에서 찾고자 하는 학설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 피고의 경우, 위 작위의무의 근거는 조리로부터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작위의무의 인정 요건

작위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견된다.

1) 일반적 감시의무의 존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관리, 통제권이 있다고 하여 일반적 감시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 통제권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게시판 등에 투고되는 모든 내용을 사전에 점검·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기대할 수도 없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냉각효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¹²⁾

2) 예견가능성(침해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

투고된 글 등의 내용 자체로부터 명예훼손이 명백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힘들지 않을 것이나, 반대로 투고 내용 자체로부터는 명예훼손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예훼손을 합리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로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¹³⁾

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직접 작성하거나 게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여야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격권의 침해한다는 것을 알았던 경우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¹⁴⁾

문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발언 자체로부터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하여 개별상황의 전체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예견가능성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충분한 자료의 제공과 설명을 하여 문제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 비로소 서비스제공자에게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¹⁵⁾

3) 회피가능성(침해배제의 기대가능성)

우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앞서 본 관리, 통제권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별로, ① 전자게시판을 통한 침해의 경우 그 전자게시판을 관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 통제권이 있고,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에게 대여한 홈페이지 공간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의 해석에 따라 관리, 통제권이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③ 전자우편이나 파일전송 등을 통한 침해나 링크를 통한 침해

12) 황찬현, 앞의 글, 33면 ; 이인석, 앞의 글, 196면 ;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6권 3호(2000. 11.), 114면. EU 권고안 제15조와 니프티 사건 판결에서도 이 점을 밝히고 있다.

13) 황찬현, 앞의 글, 34면 ; 이인석, 앞의 글, 196면

14) 김재형, 앞의 글, 534면

15) 황찬현, 앞의 글, 34면 ; 이인석, 앞의 글, 196면. 한편, 김재형, 앞의 글, 536면에서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적 발언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의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침해에 대한 관리, 통제권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¹⁶⁾

다음으로, 침해행위의 합리적 중지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이용약관의 내용 때문이나 혹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시간적 또는 재정적 부담을 요하여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¹⁷⁾

(라) 작위의무의 내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작위의무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① 삭제의무를 한정적으로 파악하는 견해 : 삭제의무까지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등자 사이의 논쟁을 전제로 하여서도 위법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발언이 명백히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든가,¹⁸⁾ 표현의 자유의 배려로부터 삭제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일견 명백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¹⁹⁾는 견해이다. 이 입장에 찬성한다.

② 삭제의무를 널리 인정하는 견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운영에 대한 특별한 방침이 있고 피해자도 이 운영방침을 승인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삭제조치가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견해²⁰⁾이다.

③ 중간설 : 명예훼손발언을 안 경우 곧바로 삭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해결을 위하여 일정한 성실한 대응을 취할 시간적 유예가 인정되는 견해²¹⁾이다.

④ 개별검토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즉 교육 목적인가, 상용인가 등에 대응하여 의무의 내용을 개별로 검토하는 견해²²⁾이다.

(마) 반론권과의 관계

인터넷의 특성상 게시판에 반박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반론권의 보장 또는 반론권의 행사가 손해배상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른바 대항언론이론은, 언론의 폐해에 대하여는 또 다른 언론으로 대항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대항언론에 의하여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국가가 명예회복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언론에 맡겨두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범위를 한정하려고 한다.²³⁾

그런데 반론권은 언론법에서 피해구제를 위하여 민법상 주어지는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청구권만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히 충분하게 구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므로, 반론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법에서 허용되는 손해배상이나 피해의 원상회복으로서 투고내용의 삭제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특성상 반론권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⁴⁾ 즉 ① 온라인상에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반론권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글

16) 권영준, 앞의 글, 주 50) ; 이인석, 앞의 글, 196면

17) 황찬현, 앞의 글, 35면 ; 이인석, 앞의 글, 197면

18) 高橋和之, “パソコン通信と名誉毀損”, *ジュリスト* 1120호(97.10), 86면

19) 福島力洋, 앞의 글, 13면 ; 町村泰貴, 앞의 글, 80면

20) 橋本佳幸, “パソコン通信の電子会議室における発言による名誉毀損の成否および名誉毀損にあたる発言に関するシステム・オペレーターの削除義務違反の有無 : ニフティサーブ現代史想フォーラム事件控訴審判決”, *判時* 1809호(2003. 4.)(判例評論 530호), 24면

21) 山口いつ子, “パソコン通信における名誉毀損 : ニフティサーブ事件”, *法時* 69권 9호(856호)(97. 8.), 95면

22) 松本恒雄, 앞의 글, 111면

23) 高橋和之, “インターネットと表現の自由”, *ジュリスト* 1117호(97. 8.), 28면

24) 潮見直之, 앞의 글, 63면

이 게시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실제로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② 명예훼손적 글보다 자신의 글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주로 불확실한 심증과 사실인식에 기초한 논쟁이나, 사생활에 밀접한 내용인 경우에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③ 기본적인 네티켓(Netiquette)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게시자에게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이 더욱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보완적으로 병존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²⁵⁾

다만, 유효·적절한 반론권이 보장되고 그것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니프티 사건 항소심판결은 이 점을 일반론으로 설치하고 있고, 대상판결도 원고가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고 있다.

다. 판례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판결이다.

[사실관계]

피고 회사(한국통신하이텔 주식회사)의 가입자인 A가 하이텔 공개게시판에 인기가수 박지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박지윤 팬클럽 회원인 원고(원고 역시 피고 회사의 가입자이다)는 그러한 비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위 공개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A는 5일만에 걸쳐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연예인스토커, 과대망상증, 기획자로부터 매수된 사람이라는 등의 내용)들을 계속하여 게시하였다. 원고는 이틀째 되는 날, 하이텔의 게시판 관리담당자에게 A의 글들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플라자에서는 여론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욕설이 들어있지 않은 이상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용자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론의 글을 올리시면 된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자, 원고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였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는 A에게 경고 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약 5-6개월간 A의 글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

하이텔과 이용자간에 적용되는 정보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가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과, 게시물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등에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다.

[판결 요지](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 이유이다)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판시 하이텔의 공개게시판 플라자에 게재된 A의 글들은 피고 회사의 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제21조에 정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 6개월 동안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5) 이인석, 앞의 글, 198면 ; 황찬현, 앞의 글, 75면

26) 이인석, 앞의 글, 198면

4.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가. 위 대법원 2001다36801 판결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원심 판결의 이유를 지지함에 따라, 위와 같은 판리가 이 사건 원심 판결에도 유지되어 이 사건 원심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작위의무가 발생하고, 그 내용은 “삭제하거나 원고와 그 글들의 처리에 대한 의논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그런데 대상판결은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② 그 삭제의무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③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입장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한정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특히 삭제의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니프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여 인터넷상 발언의 삭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구제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실시한 데서도 간취할 수 있다. 온라인상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대상판결의 위 입장에 찬성한다.²⁷⁾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지위와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삭제의무의 발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사건 피고가 운영, 관리한 홈페이지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비영리 목적의 군정(郡政) 홍보 사이트인 점에서 상용(商用)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홈페이지와 달리 관리의 정도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가입자나 방문자 수도 미미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점 역시 삭제의무의 발생 여부를 살핌에 있어 고려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대상판결의 이 부분 실시도 타당하다.

한편,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에 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에는 반대하는 견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명예훼손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도로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7) 김기섭, 앞의 평석에서는, 삭제의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구를 한 경우에 발생하고, 그 위반 여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투고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는 앞서 본 침해배제의 회피가능성에 관한 판시이다. 경제적 난이도 역시 고려 대상이라고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 한편, 대상판결에 따라 환송된 대구지방법원 2003. 10. 8. 선고 2003나9535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글들의 삭제를 요구하였던 2001. 6. 12.경에서야 피고에게 위 글들을 삭제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그 다음날 곧바로 위 글들을 삭제한 이상 피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²⁸⁾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원고의 공직생활 중 성추행사건, 의성군부군수 재직시 금품수수, 감사 명목의 금품수수에 관한 것’이라면 일견 명백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라고 할 것이므로(앞서 본 삭제의무를 한정적으로 파악하는 입장), 원고로부터 삭제요구를 받은 시점에서는 피고에게 삭제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원고가 공직자의 지위에 있었고, 충분히 반론권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글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원고에 대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조금 더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5. 결(結)

대상판결은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시함으로써 실무에 큰 지침을 제공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보산업화의 물결 속에서도 개인의 인격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가 촉진되면서 인터넷 정보 산업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별첨 1]

Communication Decency Act, 47 USC (1996) (USA)

Section 230(c) 'Protection for "Good Samaritan"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

(1) TREATMENT OF PUBLISHER OR SPEAKER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2) CIVIL LIABILITY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held liable on account of—

(A) any action voluntarily taken in good faith to restrict access to or availability of material that the provider or user considers to be 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excessively violent, harassing, or otherwise objectionable, whether or not such material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or

(B) any action taken to enable or make availability to information content providers or others the technical means to restrict access to material described in paragraph (1).

(Matthew Collins, 앞의 책, 405면에서 인용)

28)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4. 1. 28. 선고 2003다59440판결).

[별첨 2]

Defamation Act 1996 (UK)

Section 1

- (1) In defamation proceedings a person has a defence if he shows that—
 - (a) he was not the author, editor or publisher of the statement complained of,
 - (b) he took reasonable care in relation to its publication, and
 - (c) he did not know, and had no reason to believe, that what he did caused or contributed to the publication of a defamatory statement.
- (2) For this purpose 'author', 'editor' and 'publisher' have the following meanings, which are further explained in subsection (3)—

'author' means the originator of the statement, but does not include a person who did not intend that his statement be published at all;

'editor' means a person having editorial or equivalent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or the decision to publish; and

'publisher' means a commercial publisher, that is, a person whose business is issuing material to the public, or a section of the public, who issues material containing the statement in the course of that business.
- (3) A person shall not be considered the author, editor or publisher of a statement if he is only involved—
 - (a) in printing, producing, distributing or selling printed material containing the statement
 - (b) in processing, making copies of, distributing, exhibiting or selling a film or sound recording (as defined in Part I of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ontaining the statement;
 - (c) in processing, making copies of, distributing or selling any electronic medium in or on which the statement is recorded, or in operating or providing any equipment, system or service by means of which the statement is retrieved, copied, distributed or made available in electronic form;
 - (d) as the broadcaster of a live programme containing the statement in circumstances in which he has no effective control over the maker of the statement
 - (e) as the operator of or provider of access to a communications system by means of which the statement is transmitted, or made available, by a person over whom he has no effective control.

In a case not within paragraph (a) to (e) the court may have regard to those provisions by way of analogy in deciding whether a person is to be considered the author, editor or publisher of a statement.
- (4) employees or agents of an author, editor or publisher are in the same position as their employer or principal to the extent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or the decision to publish it.
- (5) In determining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whether a person took reasonable care, or had reason to believe that what he did caused or contributed to the publication of a defamatory statement, regard shall be had to—
 - (a) the extent of his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or the decision to publish

- it,
- (b)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publication, and
 - (c) the previous conduct or character of the author, editor or publisher.
- (6)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ny cause of action which arose before the section came into force.

(Matthew Collins, 앞의 책, 403면에서 인용)

[별첨 3]

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 – IuKDG) in der Fassung des Beschlusses des Deutschen Bundestages vom 13. Juni 1997

§ 5 Verantwortlichkeit

(1) Diensteanbieter sind für eigene Inhalte, die sie zur Nutzung bereithalten, nach den allgemeinen Gesetzen verantwortlich.

(2) Diensteanbieter sind für fremde Inhalte, die sie zur Nutzung bereithalten, nur dann verantwortlich, wenn sie von diesen Inhalten Kenntnis haben und es ihnen technisch möglich und zumutbar ist, deren Nutzung zu verhindern.

(3) Diensteanbieter sind für fremde Inhalte, zu denen sie lediglich den Zugang zur Nutzung vermitteln, nicht verantwortlich. Eine automatische und kurzzeitige Vorhaltung fremder Inhalte auf Grund Nutzerabfrage gilt als Zugangsvermittlung.

(4) Verpflichtungen zur Sperrung der Nutzung rechtswidriger Inhalte nach den allgemeinen Gesetzen bleiben unberührt, wenn der Diensteanbieter unter Wahrung des Fernmeldegeheimnisses gemäß § 85 des Telekommunikationsgesetzes von diesen Inhalten Kenntnis erlangt und eine Sperrung technisch möglich und zumutbar ist.

(<http://www.iid.de/rahmen/iukdg.html>에서 인용)

[별첨 4]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2: 'Mere conduit'

1 Where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²⁹⁾ is provided that consists of the transmission in a communication network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or the provision of access to a communication network, Member States must ensure that the service provider

29)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 means 'any service normally provided for remuneration, at a distance, by electronic means and at the individual request of a recipient of services'.

is not liable for the information transmitted, on condition that the provider:

- (a) does not initiate the transmission;
- (b) does not select the receiver of the transmission; and
- (c) does not select or modify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transmission.

2 The acts of transmission and of provision of acc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clude the automatic, intermediate and transient storage of the information transmitted in so far as this takes place for the sol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transmission in the communication network, and provided that the information is not stored for any period longer than is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transmission.

3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possibility for a court or administrativ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Member States' legal systems, of requiring the service provider to terminate or prevent an infringement.

Article 13: 'Caching'

1 Where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 is provided that consists of the transmission in a communication network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service provider is not liable for the automatic, intermediate and temporary storage of that information, performed for the sole purpose of making more efficient the information's onward transmission to other recipients of the service upon their request, on condition that:

- (a) the provider does not modify the information;
- (b) the provider complies with conditions on access to the information;
- (c) the provider complies with rules regarding the updating of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a manner widely recognised and used by industry;
- (d) the provider does not interfere with the lawful use of technology, widely recognised and used by industry, to obtain data on the use of the information; and
- (e) the provider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to disable access to the information it has stored upon obtaining actual knowledge of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at the initial source of the transmission has been removed from the network, or access to it has been disabled, or that a court or an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ordered such removal or disablement.

2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possibility for a court or administrativ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Member States' legal systems, of requiring the service provider to terminate or prevent an infringement.

Article 14: Hosting

1 Where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 is provided that consists of the storage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service provider is not liable for the information stored at the request of a recipient of the service, on condition that:

- (a) the provider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of illegal activity or information and, as regards claims for damages, is not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the illegal activity or information is apparent; or
- (b) the provider,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to disable access to the information.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n the recipient of the service is acting under the authority or the control of the provider

3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possibility for a court or administrativ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Member States' legal systems, of requiring the service provider to terminate or prevent an infringement, nor does it affect the possibility for Member States of establishing procedures governing the removal or disabling of access to information

Article 15: No general obligation to monitor

1 Member States shall not impose a general obligation to providers, when providing the services covered by Articles 12, 13 and 14, to monitor the information which they transmit, nor a general obligation actively to seek facts or circumstances indicating illegal activity.

2 Member States may establish obligations for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s promptly to inform the competent public authorities of alleged illegal activities undertaken or information provided by recipients of their service or obligations to communicat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t their request, information enabling the identification of recipients of their service with whom they have storage agreements.

(Matthew Collins, 앞의 책, 401면에서 인용)

[별첨 5]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平成13年11月30日 法律第137號, 施行日:平成14年5月27日)

第二條 (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 次の各號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 當該各號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特定電気通信 不特定の者によって受信されることを目的とする電気通信(電気通信事業法(昭和五十九年法律第八十六號)第二條第一號に規定する電気通信をいう。以下この號において同じ。)の送信(公衆によって直接受信されることを目的とする電気通信の送信を除く。)をいう。

二 特定電気通信設備 特定電気通信の用に供される電気通信設備(電気通信事業法第二條第二號に規定する電気通信設備をいう。)をいう。

三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 特定電気通信設備を用いて他人の通信を媒介し、その他特定電気通信設備を他人の通信の用に供する者をいう。

四 発信者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用いる特定電気通信設備の記録媒体(當該記録媒体に記録された情報が不特定の者に送信されるものに限る。)に情報を記録し、又は當該特定電気通信設備の送信装置(當該送信装置に入力された情報が不特定の者に送信されるものに限る。)に情報を入力した者をいう。

第三條 (損害賠償責任の制限) ①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り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たときは、 當該特定電気通信の用に供される特定電気通信設備を用いる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關係役務提供者」という。)は、 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 権利を侵害した情報の不特定の者に関する送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が技術的に可能な場合であつて、 次の各號のいずれかに該當するときでなければ、 賠償の責めに任じない。ただし、 當該關係役務提供者が當該権利を侵害した情報の発信者である場合は、 この限りでない。

一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

二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 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を知っていた場合であって、 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ている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た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

②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は、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送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じた場合において、 当該措置により送信を防止された情報の発信者に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 当該措置が当該情報の不特定の者に對する送信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場合であって、 次の各號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 賠償の責めに任じない。

一 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利が不当に侵害されていると信じ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ったとき。

二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自己の権利を侵害されたとする者から、 当該権利を侵害したとする情報（以下「侵害情報」という。）、 侵害されたとする権利及び権利が侵害されたとする理由（以下この號において「侵害情報等」という。）を示して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に對し侵害情報の送信を防止する措置（以下この號において「送信防止措置」という。）を講ずるよう申出があった場合に、 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が、 当該侵害情報の発信者に對し当該侵害情報等を示して当該送信防止措置を講ずることに同意するかどうかを照會した場合において、 当該発信者が当該照會を受けた日から七日を経過しても当該発信者から当該送信防止措置を講ずることに同意しない旨の申出がなかったとき。

(법원 전산망 내의 일본판례검색시스템을 통하여 검색)

특별기고

설리번판결과 미국의 언론의 자유: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원칙의 40주년을 맞으면서

염규호

(미국 오레곤 대학교 Jonathan Marshall 제 1수정헌법 석좌교수)

미국의 언론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국가와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보도라고 할 것이다. 1970년 초의 국방성 기밀문서 보도¹⁾와 워터게이트 폭로사건²⁾은 분명히 미국 언론의 자유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9. 11. 테러이후 미국에서 언론이 과거처럼 활발하게 정부당국과 고위 공직자를 감시 보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사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몇몇 조사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언론은 결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을 즐기고 있지 못하다. 즉 2003년 뉴욕 Freedom House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13개의 언론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고 2003년 10월 이후 Reporters Without Borders는 국가별 언론 자유 등급을 매기면서 미국을 31번째라고 밝혔다.³⁾

TIME지의 증견 편집인이며 수석특과원을 했던 John Stacks는 9-11 사건 이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 “현재 미국 행정부에 대한 언론사의 뉴스취재는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주의를 기울이고 통제를 받는 상황이다.”⁴⁾ 그는 덧붙여서 “언론인들도 때로는 일반국민과 다를 것이 없다. 테러에 대한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미언론은 (테러혐의자들이나 이민법 위반자를 정부가 비밀리에 구금하는 것 등에 대해서) 전보다 더 기꺼이 눈감아 주려고 한다. 분명 나중에 회고하면 우리 미국 언론인들은 부시 행정부에 너무 약하게 대하고 있으며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고 결론을 지을 것이다.”⁵⁾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의 언론이 부시 행정부로부터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검열이나 통제를 직접 받고 있다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국가

1) For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First Amendment right to publish the *Pentagon Papers*, see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403 U.S. 713 (1971). For a detailed informative study of the *Pentagon Papers* case, see David Rudenstine, *The Day the Presses Stopped: A History of the Pentagon Papers Case* (1996).

2) For former *Washington Post* executive editor Ben Bradlee's account of the *Washington Post's* expose of the Watergate scandal in 1972-1973, see Ben Bradlee, *A GoodLife: Newspapering and Other Adventures* 325-84 (1995).

3) Kyu Ho Youm, "Free Speech Is Our Strength in Times of Crisis," *Register-Guard*, March 10, 2004, p. A13.

4) John F. Stacks, "Watchdogs on a Leash: Closing Doors on the Media," in *The War on Our Freedoms: Civil Liberties in an Age of Terrorism* 253 (Richard C. Leone & Greg Anrig, Jr., eds., 2003).

5) Id. at 251 (quoting Evan Thomas of Newsweek).

안보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위기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미 언론은 정부 정책결정에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지지를 제공하기를 요구받고” 있으며 애국심을 기대하는 미국민에 의해 타의에 의한 “검열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⁶⁾ 그러나 아직도 미국 언론은 정도에 차이는 있다고 해도 제1수정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보도의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음은 사실이다. 최근 이라크의 Abu Ghraib 감옥에서 미군에 의한 이라크포로들에 대한 육체적인 고문과 성적학대, 모욕을 New Yorker지에 폭로 기고한 Seymour Myron Hersh 기자의 상세하고도 치명적인 보도는 중요한 본보기라 하겠다.⁷⁾

국방성 기밀 보도, 워터게이트 폭로사건 그리고 최근의 전쟁포로에 대한 학대보도 등은 정부에 관한 미 언론의 견제역할을 그 기본으로 하는 미헌법의 언론 표현의 자유 보장에 근거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미국 정치제도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비판은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언론의 자유 판결인 New York Times Co. v. Sullivan⁸⁾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공적인 문제에 대한 토의는 억제되어서는 안 되며, 활발하고 최대한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가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가끔은 불쾌할 정도의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원칙에 우리 미국 국민은 의무적인 약속을 하고 있다.”⁹⁾ 이 “혁명적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법의 관계를 새로이 규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제1수정헌법의 기본법리를 바꾸었다.¹⁰⁾

1964년 3월 9일에 나온 판결문에서 연방대법원은 공무원이 자기의 공직업무에 관한 허위적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그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그것이 허위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그것의 진위를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고서 보도되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판시했다.¹¹⁾

“현실적 악의” (혹은 “헌법적 악의”¹²⁾) 원칙이 공직자 그리고 후에는 공적 인물

6) David Dudge, *Casualty of War: The Bush Administration's Assault on Free Press* 15 (2004).

7) See Deborah Hastings, "Journalist Still Making History," *Register-Guard*, May 22, 2004, p. A2.

8) 376 U.S. 254 (1964).

9) Id. at 270.

10) Geoffrey R. Stone,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in *The Oxford Guide to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s* 216 (Kermit L. Hall ed., 1999).

11) *Sullivan*, 376 U.S. at 279-80. For an extensive discussion of the "actual malice" rule and related issues in *Sullivan*, see infra notes 33-41 and accompanying text.

12) "헌법적 악의" (constitutional malice)라는 표현을 "현실적 악의" 대신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 이는 *Sullivan* 판결에서 쓰는 "현실적 악의"에서 나오는 보통법 상에서의 "악의"(malice)와 혼동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연유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헌법적 악의"표현이 "현실적 악의"보다는 더욱 명확하고 구별하기 쉬우며 그리고 미국 헌법에 근거한 악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부 미국 법학자들의 "헌법적 악의" 표현 선호에 동감한다. 그러나 "현실적 악의"가 *Sullivan* 사건에 대한 국내 법학자들이나 언론인 그리고 법판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 필자는 "현실적 악의"를 편의상 사용한다. For a discussion of the inherently confusing choice of "actual malice" as a term of art in *Sullivan*, see Slade R. Metcalf & Leonard M. Niehoff, *Rights and Liabilities of Publishers, Broadcasters, and Reporters* 1:23, at 135 n.4 (2002). Metcalf and Niehoff use "constitutional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다 자유롭게 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미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거론할 때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설리번 사건의 판결임은 재론이 필요 없다.

미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설리번 사건의 중요성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다. 사실 어느 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하다고 하겠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모든 정책의 방향을 국가안보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하의 정치적 권리와 민권의 우려스러운 제약을 냉철히 본다면 이는 자명하다: “설리번판결의 40주년을 기념하면서 미국이 진정 국내외적으로 인권의 신뢰할 만한 지도자인지를 의심받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의구심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를 볼 때 미국민은 설리번 사건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약의 모범적인 상징으로서 이를 수호함에 있어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¹³⁾ 저명한 미국의 언론법 변호사 David Bodney는 최근에 설리번사건의 의미를 미국의 현재 상황 속에서 설득력 있게 얘기했다. 그는 설리번판결을 연방대법원의 헌법판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 판결이 미국의 모든 것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미국의 삶을 얘기할 수 있게 하는 분수령적인 사건이었다. 전쟁과 테러리즘 그리고 민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 권리와 책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는 설리번사건을 하나의 슬로건으로 해서 언론에 비취진 우리의 모습을 책임적인 자치통치 실험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한다.”¹⁴⁾

설리번사건은 20주년¹⁵⁾과 25주년¹⁶⁾에 그랬던 것처럼 40주년에 즈음해서 언론인, 언론법 학자, 변호사, 그리고 판사들이 여러 학술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되새겨 보고 있다.¹⁷⁾ 이와 관련해서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오레곤대학교의 신문방송대학은 오레곤대학교 법과대학과 공동으로 올 10월 8일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참석하는 법학자, 법조인, 언론인 그리고 저널리즘교수들의 설리번판결에 대한 국내·외적인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주요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설리번판결 40주년을 맞아서 제1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정표적인 미연방 대법원 사건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카고 법대의

malice" rather than "actual malice" in referring to "knowing falsity or reckless disregard of the truth."

13) Youm, supra note 3, at A13

14) David Bodney, Remarks at the "Is Freer Journalism Better Journalism?: *New York Times v. Sullivan* 40 Years Later" forum at Arizona State University 33 (March 25, 2004) (private transcript on file with author).

15) See "*New York Times v. Sullivan: The Next Twenty Years*" (New York, March 8-9, 1984); "Libel Law Under the Constitution: Making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Washington, D.C., April 13, 1984).

16) See "Values in Conflict: Twenty-Five Years After *New York Times v. Sullivan*" (Des Moines, Iowa, March 30-31, 1999).

17) See "'Heed Their Rising Voices': *New York Times v. Sullivan* 40 Years Later" (Knoxville, Tenn., Feb. 27, 2004); "Is Freer Journalism Better Journalism?: *New York Times v. Sullivan* 40 Years Later" (Tempe, Ariz., March 25, 2004).

Geotfrey Stone 교수의 표현처럼 설리번사건과 그 이후에 나온 관련판결들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과잉 보호한다거나 과소 보호한다고 비판을 받았다.¹⁸⁾ 그리고 이 같은 설리번판결에 대한 찬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전 New York Times 기자이자 칼럼니스트였던 Anthony Lewis는 최근 “현실적 악의”의 확대는 제1수정헌법의 “핵심적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는 관련 없는 “공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명예훼손소송의 조건으로 “현실적 악의”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¹⁹⁾

한편 여전히 형사법적인 명예훼손죄가 설리번사건의 원칙 하에서 인정되고 있다. Media Law Resource Center는 2003년 3월 “비록 오직 소수의 주법만이 명예훼손죄를 형사범으로 인정하고 더욱 소수만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소추를 하고 있지만 제1수정헌법의 취지에서 보면 아주 활발한 뉴스 취재 보도는 예기치 못하며 설명할 수 없게 형사상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⁰⁾ 그리고 국제화하는 미국 언론사의 명예훼손적인 기사로 인해 미국언론사가 외국에서 소송을 당하는 예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언론사에 대한 외국법원의 판결을 미국법원에서 인정,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가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되었다.²¹⁾ 지금까지 미국법원은 한결같이 설리번사건의 원칙과 정신에 의거해서 미국의 제1수정헌법에 위반되는 외국의 명예훼손판결을 집행할 것을 거부했다.²²⁾

이 같은 설리번사건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면서 그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이 논문에서 관련성은 있으나 지면관계상 다룰 수 없는 것은 설리번사건이 외국의 명예훼손법이나 법원판결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에 관한 문제이다. 지난 수년에 걸쳐서 설리번판결이 국제적으로 점점 인정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면으로 거부당하기도 했다.²³⁾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문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기로 하고 본 논문은 미국 법에서의 설리번판결의 40년을 초점으로 다루겠다.²⁴⁾

18) Stone, *supra* note 10, at 216.

19) Anthony Lewis, "The Sullivan Decision," address at "'Heed Their Rising Voices': *New York Times v. Sullivan* 40 Years Later," *supra* note 17, at 17 (text on file with author). Lewis is the author of the definitive book on the *Sullivan* case, *Make No Law: The Sullivan Case and the First Amendment* (1991).

20) "Criminalizing Speech About Reputation: The Legacy of Criminal Libel in the U.S. After *Sullivan & Garrison*." *MLRC* [Media Law Resource Center] *Bulletin* I (March 2003).

21) See *Bachchan v. India Abroad Publications*, 20 Media L. Rep. (BNA) 1051 (N.Y. Sup. Ct. 1992).

22) See generally Rodney A. Smolla, *Law of Defamation* 12:41, at 12-31 to 12-38 (2d ed. 2003).

23) See generally Peter N. Amponsah, *Libel, Political Criticism, and Defamation of Public Figure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ustralia* (2004); *The International Libel Handbook: A Practical guide for Journalists* (Nick Braithwaite ed., 1995); Matthew Collins, *The Law of Defamation and the Internet* (2001); *Importing the First Amendment: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in Britain, Europe and the USA* (Ian Loveland ed., 1998); Ian Loveland, *Political Libel: A Comparative Study* (2000).

우선 설리번사건을 통한 “현실적 악의”와 미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의의와 가치 그리고 개선점을 알아보기 전에 설리번판결전의 미국의 명예훼손법을 간략히 기술함으로써 본 논문의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 설리번판결 전의 명예훼손법

개인의 명예에 해가 되는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규제하는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1960년대 초까지도 연방헌법 즉 제1수정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는 무관하게 각주 법에 근거한 보통법상의 문제였다. 명예훼손적인 기사 등은 개인이나 일반에게 유용한 사상을 표현하는 것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²⁵⁾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²⁶⁾ 따라서 보통법상에서 개인의 명예가 언론 표현의 자유에 연관된 비판의 권리에 우선했다.

보통법에서 명예훼손소송의 원고는 문제가 되는 표현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는 것, 그 표현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적인 내용으로서 원고 자신에게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 원고의 소송요건에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손해나 명예훼손적인 피고의 표현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없었다. “엄격책임” 원칙으로 인해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허위이고 이로 인해서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언론사가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과정에 과실의 유무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었으며 또한 내용의 허위를 피고 언론사가 인지했느냐 하는 것도 소송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²⁷⁾

설리번판결 전의 보통법에서 명예훼손의 면책사유는 세 가지 경우에 한정되었다. 즉, 소송의 발단이 되는 표현이 진실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 표현이 이를 허용하는 특권적인(privileged) 상황에 기인한 것인가 혹은 그 표현이 공평한 논평과 비평의 성격을 띠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 이들 면책사유는 그 입증 책임이 모두 피고에게 있었다. 다시 말해서 허위 증명을 원고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야 했다.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표된 명예훼손기사가 정부기관이 관련된 공적인 활동이나 기록에 근거함으로써 인해 법적인 특권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을 언론사가 입증해야 했다. “공평보도특권”(fair report privilege)에 의한 언론기관의 명예훼손면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제한적인 것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 기사가 부정확하거나 악의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²⁸⁾ 공평한 비평과 비판의 면책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표현을

24) See Kyu Ho Youm,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Forty Years Later: Its International Impact on Freedom of the Press"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Oxford Round Table on Freedom of the Press, Oxford University, Aug. 1-6 2004).

25) Chaplinsky v. New Hampshire, 315 U.S. 568, 572 (1942).

26) Beauharnais v. Illinois, 343 U.S. 250, 266 (1952).

27) See generally Susan Dente Ross, *Deciding Communication Law: Key Cases in Context* 14.1 (2004).

격려하는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보통법상의 명예훼손 면책사유의 하나였다.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비평이나 비판이 반드시 공정할 필요는 없으나 의견을 개진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을 공정하게 의견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문제된 의견의 합당성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²⁹⁾ 보통법상의 명예훼손의 면책사유는 피고에게 부과된 엄격책임에 대한 균형으로 “유익하고 가치 있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일반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겠다.³⁰⁾ 그러나 설리번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이 영국의 보통법에 근거한 미국의 1964년 이전의 명예훼손법의 면책이유들은 대체적으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영국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내용이든 비정치적인 내용이든 공적인사에 관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³¹⁾ 이 같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통법상 명예훼손의 제원칙을 헌법적인 차원에서 문제 삼은 것이 설리번사건이었다.

II. “현실적 악의”와 설리번 판결

설리번사건은 앨러배머주의 몽고메리시 경찰국장인 설리번이 뉴욕타임즈에 실린 의견광고로 해서 자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뉴욕타임즈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는 문제의 광고가 자신이 흑인에 대한 테러와 관련된 불법적인 경찰조치에 관여한 것처럼 암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광고는 허위이고 그것으로 해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했다. 그 광고의 어느 문구도 설리번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뉴욕타임즈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앨러배머주 1심 법원은 5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승소결정을 설리번에게 내렸고 앨러배머 대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주대법원은 주법에 근거한 명예훼손소송에 연방헌법의 제1 수정조항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선언했다.³²⁾

미연방대법원은 뉴욕타임즈 광고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소송사건의 파급효과를 미국의 정치이념과 헌법질서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즉 정부와 공직자는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하며 공적인 이슈에 관한 토론은 최대한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은 문제된 신문광고가 “우리 시대의 주요한 공적 문제에 대한 불만과 항의의 표현”이라고 결

28) For a discussion of the "fair report privilege" as a libel defense in U.S. law, see Kyu Ho Youm, "Fair Report Privilege versus Foreign Government Statements: United States and English Judicial Interpretations Compared," 40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124 (1991).

29) Ross, *supra* note 27, at 14.10.

30) Robert M. O'Neil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A First Amendment Lawyer's Retrospective," 9 *Communication Law & Policy* (Autumn 2004) (in press).

31) See Susanna Frederick Fischer, "Rethinking *Sullivan*: New Approaches in Australia, New Zealand, and England," 34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101, 114 (2002).

32) See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144 So. 2d 25, 40 (Ala. 1962).

론지으면서 “몇몇 부분적인 사실의 오류로 인해 피상고인(설리번)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해서 언론기관이 헌법적인 보호를 박탈당해야 하는가.”를 물었다.³³⁾ 헌법제정자들은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도의 남용을 예상해야 한다고 언명하면서 사실의 오류나 명예훼손적인 행위만으로는 공직자 관련 기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박탈당하지는 않는다는 과거의 판결들을 주목했다. 연방대법원은 “공직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기에는 사실적인 실수나 명예훼손적인 행위 어느 것도 불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두개의 이유가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³⁴⁾고 결론지었다.

연방대법원은 또 1798년의 정부비판을 금한 선동법(Sedition Act)은 비록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고 1801년에 자동으로 만기 폐기되었지만 역사의 심판으로 볼 때 그의 유효성은 없어진지 오래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형사상으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민사상 명예훼손법에서도 마찬가지다.”고 언명했다.³⁵⁾ 연방대법원은 앨러배머법에서 허용하는 형사명예훼손에 대한 최고 벌금보다 1,000배나 되고 선동법에서 인정한 벌금보다 100배나 많은 앨러배머주법원의 설리번의 손해배상액을 문제 삼으면서 “공개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공포와 두려움은 제1수정헌법이 생존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판시했다.³⁶⁾ 결과적으로 연방대법원은 공직자가 그들의 공직행위에 관련한 비판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하면 이에 대한 배상을 허용할 수 있는 주법의 권한을 연방헌법이 제한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연방대법원은 제1수정헌법이 이 제한적인 요건으로 바로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결했다.³⁷⁾ 이 새로운 헌법원칙을 발표하면서 1908년의 캔저스주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언론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 특권은 매우 다양한 주제에 적용되며 공적인 관심사, 공직자와 선거후보자...등이 포함된다.”³⁸⁾

연방대법원은 공직자의 공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현실적 악의” 특권은 사적인 시민이 공직자가 행한 명예훼손적인 행위에 대해 소송을 하면 공직자가 받는 보호와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다.³⁹⁾

한편 세 명의 연방대법원판사들은 William J. Brennan 판사가 쓴 판결에 동조하면서 보다 강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비판도 제1수정헌법에서 보호 받아야

33) *Sullivan*, 376 U.S. at 271.

34) *Id.* at 273.

35) *Id.* at 277.

36) *Id.* at 378.

37) *Id.* at 279-80. For the "actual malice" rule, as delineat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Sullivan*, see *supra* note 11 and accompanying text.

38) *Id.* at 281-82, citing *Coleman v. MacLennan*, 98 P. 281, 285 (Kan 1908).

39) *Id.* at 282, citing *Barr v. Matteo*, 360 U.S. 564, 575 (1959).

한다고 주장했다. 즉 Hugo Black 판사는 연방헌법은 국가가 공직자의 공직업무에 관한 비판자에게 명예훼손적인 손해배상을 부과할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⁴⁰⁾ 마찬가지로 Arthur Goldberg 판사도 동조의견에서 미국 시민과 언론은 비록 과도함과 악용에서 오는 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방헌법으로부터 공직자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특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썼다.⁴¹⁾

III. 설리번판결 후의 “현실적 악의” 적용

설리번사건에서 제1수정헌법의 “핵심적인 의미”는 정부에 대한 미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의 허용이며 여기에는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실수도 포함된다는 “현실적 악의” 원칙은 지난 40년 동안 연방대법원의 30여건의 주요 명예훼손사건에 적용되었다. 이 “현실적 악의” 원칙의 적용 과정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법의 균형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즉 언론기관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소송이 제1수정헌법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현실적 악의” 기준은 공적 인물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또한 “현실적 악의”의 의미와 입증 요건이 명확해졌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사적 인물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이라 할지라도 언론의 자체검열(self-censorship)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가 수립되었다. 특히 1974년 이후의 “현실적 악의” 판결들은 설리번사건의 근간이 되는 언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정책을 적용한 것으로 거증책임 등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다.⁴²⁾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 악의”가 적용된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을 분석하기 보다는 지난 40년 동안 나타난 주요 주제들을 선택적으로 토의하고자 한다.

A. 형사적 명예훼손죄와 “현실적 악의”

명예훼손을 형벌로 다룬 원래 목적은 정부비판적인 선동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회적인 치안방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의 진실여부는 형사법에서 정당사유가 될 수 없었다.⁴³⁾ 그리고 1952년 연방대법원은 형사적인 명예훼손은 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에 대한 처벌이나 금지가 허용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⁴⁴⁾

“현실적 악의”를 형사책임의 원칙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설리번판결이 있는지 8개월 후에 연방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되었다. 루이지애나주의 형사적 명예훼손법을 “현실적 악의” 기준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연방대법원은 “공무원 비판에 관

40) Id. at 293 (Black, J., concurring).

41) Id. at 298 (Goldberg, J., concurring).

42) David A. Logan, "Libel Law in the Trenches: Reflections on Current Data on Libel Litigation," 87 *Virginia Law Review* 503, 506-507 (2001) (citations omitted).

43) Robert D. Sack, *Sack on Defamation: Libel, Slander, and Related Problems* 3.2, at 3-4 (3d ed. 2003).

44) *Beauharnis*, 343 U.S. at 257.

한 한 형사명예훼손법은 민사명예훼손법과 그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헌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⁴⁵⁾고 밝혔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현실적 악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 비판을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1수정헌법 위반이라면서 “현실적 악의”는 민법이나 형법에 불문하고 똑같이 적용되며 “오직 설리번사건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허위가능성을 인지하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만이 민사 혹은 형사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⁴⁶⁾

한편 공직자에 대한 형사적 명예훼손에 “현실적 악의”가 입증요건이 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연방대법원은 “공적인 제반 사건들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한 사적인 명예훼손이 관계되면 다른 목적의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실시하고 형사적 명예훼손에 “현실적 악의”가 적용된다는 일반원칙이 전적으로 사적인 명예훼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지 말 것을 분명히 했다.⁴⁷⁾

B. “공적 인물”(public figure)과 “현실적 악의”

“현실적 악의”는 정부에 관여하지 않는 공적인 인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1967년 연방대법원은 밝혔다. Earl Warren 연방대법원장 등 5명의 판사들은 “현실적 악의”와 공적 인물에 대한 일치된 의견에서 공직자와 공적인물의 차이는 없다고 했다. “공직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공적인 문제 해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거나 그들의 유명한 사회적인 지명도 때문에 일반사회의 관심이 되는 분야의 사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Warren 연방대법원장은 썼다.⁴⁸⁾

그 이유는 공적 인물은 공무원과 같이 사적 인물에 비해서 언론사를 이용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반박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공적 문제 등에 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일반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명예훼손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⁴⁹⁾

연방대법원은 “일반적 공적인물”(general or all-purpose public figure)과 “제한적 공적인물”(limited-purpose public figure)로 구분 지었다.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은 일반적 공적 인물은 사회적으로 그의 엄청난 영향력이나 명성 등으로 해서 모든 목적에 있어 공인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사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언론 접근권”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감수할 것을 스스로 자임했다고 할 수 있다.⁵⁰⁾

45) *Garrison v. Louisiana*, 379 U.S. 64, 67 (1964).

46) *Id.* at 74.

47) *Id.* at 72 n.8.

48)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 163 (1967) (Warren, C.J., concurring).

49) See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44-45 (1974).

50) *Id.* at 345.

일반적 공적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으며 “현실적 악의”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은 대부분이 제한적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제한적 공적 인물은 다시 세분해서 “자발적 공적 인물”과 “비자발적 공적 인물”로 구분되고 있다. Gertz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자발적 공적 인물을 정의하기를 “특정한 공적인 분쟁의 전면에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공적 문제 결정에 탁월한 명성을 획득한” 사람들이라고 했다.⁵²⁾ 연방대법원은 제한적 공적 인물이라고 결정하려면 “명예훼손을 야기시킨 특정의 분쟁에 원고가 어떠한 성격으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⁵³⁾

연방대법원은 비자발적 제한적 공적인물은 “가상적으로 볼 때 개인의 목적적인 행동과는 무관하게 공적인물이 될 수 있겠으나 진정으로 비자발적 공적인물의 예는 지극히 드물다.”고 밝혔다.⁵⁴⁾ 현재까지 연방대법원은 비자발적 공적인물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한정시킬지에 대한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⁵⁵⁾ 그리고 전 Columbia대학교 법대 교수 William K. Jones는 최근의 명예훼손 법 저서에서 하급법원들은 “의도적으로 원고의 공적인물의 신분을 그가 취한 행동의 자발적인 것에 연관을 지음으로써 비자발적 공적인물이라고 특정짓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⁶⁾

흥미로운 것은 미연방대법원은 비자발적 제한적 공적인물에서처럼 아직까지 어떤 인물이 자발적 공적인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판결을 내린 적은 없다.⁵⁷⁾ 그러나 가장 흔한 자발적 공적인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명예훼손소송을 구하는 원고 언론사들이라고 하겠다.⁵⁸⁾

C. 사적 인물과 “현실적 악의”

현재의 미국 명예훼손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공적 인물과 사적 인물의 차이에서 오는 법적인 보호기준을 다룬 Gertz 판결에서 사인은 비록 공적인 관심사에 관련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악의”를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과오없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한 주법원은 사인을 해치는 명예훼손적인 허위를 발표한 신문사나 방송사에 대한 적절한 책임기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⁵⁹⁾ 사인에 대한 기준은 최소한 과실(negligence)의 입증이 요구되며 이는 특

51) Rodney A. Smolla, *Smolla and Nimmer on Freedom of Speech* 23:4, at 23-31 (2004).

52) *Gertz*, 418 U.S. at 345, 351.

53) *Id.* at 352.

54) *Id.* at 323.

55) W. Wat Hopkins, "The Involuntary Public Figure: Not So Dead After All," 21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1, 44 (2003).

56) William K. Jones, *Insult to Injury: Libel, Slander, and Invasions of Privacy* 85 (2003).

57) *Id.* at 78.

58) *Id.* at 79.

히 실질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인의 명예훼손소송에서 더욱 그러하다.⁶⁰⁾ 그러나 추정적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여전히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어야 한다.⁶¹⁾

압도적으로 많은 주에서 과실을 사인에 대한 최소한의 입증조건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6개주(특히 콜로라도, 인디애나 등)에서는 언론사가 관계된 사건의 경우 “현실적 악의”나 그와 유사한 기준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⁶²⁾

D. 공적 관심사와 “현실적 악의”

“현실적 악의”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사람의 신분 즉 공인인가 사인인가에 주로 달려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표현내용이 공적 관심사이냐 사적인 문제냐 하는 것도 여전히 미국 명예훼손법에 있어서 중요하다. 물론 주법에 따라 어느 정도 표현내용이 원고의 신분보다 더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적 악의”는 주로 원고의 신분에 크게 좌우된다. 물론 원고의 신분 결정에 명예훼손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71년에 연방대법원은 “공적 혹은 일반적 흥미가 있는 주제(a subject of public or general interest)에 관련한” 명예훼손이라면 사적인 인물이 개입되었거나 혹은 어느 면에서 그 사적 인사가 ‘자발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명예훼손이 공적인 것이 아니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⁶³⁾ 이 같이 공적인 흥미가 있는 주제에 대한 명예훼손에 “현실적 악의”를 적용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일반국민의 관심사는 뉴스의 초점이 되는 흥미있는 사건과 이에 관계된 사람들이지 반드시 그 사람들의 지명도 등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현실적 악의”를 명예훼손 대상자의 유명 혹은 무명이 아니라 명예훼손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인지 여부에 적용한 것은 “현실적 악의”의 최고의 확대 해석이었다. 이 같은 확대해석은 3년 후에 미연방대법원의 Gertz판결에서 배격되었고 원고의 신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다시 바뀌었다.

“공적 흥미”라는 기준은 “공적 관심사”(matter of public concern)와 흔히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적 흥미의 기원이 프라이버시 권리에서 유래되었음을⁶⁴⁾ 생각할 때,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공적 관심사”(matter of public concern)가 “공적 흥미”보다 지난 30년의 “현실적 악의”의 축소 적용에 더욱 적합했기에 “공적 흥미”기준은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59) *Gertz*, 418 U.S. at 347.

60) *Id.* at 349.

61) *Id.* at 349-50.

62) See Sack, *supra* note 43, *nn* 6.3, 6.4, at 6-10 to 6-18.

63) *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S. 29, 43 (1971).

64) The term "public or general interest" was derived from a seminal law review article on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93, 214 (1890). See Smolla, *supra* note 22, 3:21, at 3:34 n.3.

즉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⁶⁵⁾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적 관심사”가 아닌 명예훼손표현에 대해서까지 “현실적 악의”를 추정하거나 징벌적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를 입증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적 관심사”에 관련한 “현실적 악의”는 Dun & Bradstreet 판결에서 본다면 분명 “공적 흥미”보다 협소하고 제1수정헌법에서 중시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⁶⁾

E. 프라이버시와 “현실적 악의”

명예훼손소송으로 인한 언론자유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억제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폭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인정되는 “현실적 악의” 원칙이 프라이버시 영역에도 적용되었다. 연방대법원은 1967년 “허위적 공표(false light)”라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현실적 악의”를 인정했다. 허위적 프라이버시 침해의 요건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에 대해 일반에게 허위적인 인상을 심어 주는 표현을 공표한 자는 그 사람에 대한 허위가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지극히 불쾌한 것이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공표된 것이 허위라는 것과 일반인으로부터 허위적인 인상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거나 혹은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고서 행동했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⁶⁷⁾

허위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공표에 “현실적 악의”를 적용하는 것 - 특히 명예훼손적이 아닌 경우 - 개인에 대한 사진이나 글을 통한 표현에 대해 진실을 “확실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Times, Inc v. Hil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판시하기를 “특히 표현 그 자체 내용이 허위임으로 해서 타인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치 않으면 비록 과오를 책임지운다고 해도 매우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⁶⁸⁾ 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현실적 악의” 적용은 Hill 판결에 관한 한 원고가 공적 인물인가 사적 인물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소송의 사유가 된 내용이 “정당한 공적 인 흥미”가 되는 주체의 것이면 족하다. 결국 “현실적 악의”는 프라이버시 소송의 사적인 원고에게는 명예훼손소송의 경우보다 더욱 부담스러운 증거 책임을 지울 수가 있으며 한편 “현실적 악의”의 불필요한 확대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F. 정신적 고통과 “현실적 악의”

“현실적 악의”가 표현을 통해서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가? 바로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은 1988년에 다룬 바 있다. 즉 Hustler Magazine v. Falwel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직자나 공적 인물은 소송

65) 472 U.S. 749 (1985).

66) Smolla, supra note 22, 3.21, at 3-34.01.

67) Restatement (Second) of Torts 652 E (1977).

68) 385 U.S. 374, 389 (1967).

의 사유가 된 표현이 “현실적 악의”를 갖고서 공표되었음을 증명치 않으면 터무니 없고 추잡한, 고의적인 풍자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⁶⁹⁾ 연방대법원은 “현실적 악의”는 또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과 사상의 교환이 제1수정헌법의 책임임을 주목하면서 Hustler Magazine 사건에 문제된 잡지의 풍자내용이 공인인 원고에 대한 비판임을 지적했다.⁷⁰⁾

G. 외국인 공직자와 공적인사에 대한 “현실적 악의” 적용

“현실적 악의”가 대체로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도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년에 걸쳐 미국 법원은 주요 외국의 공직자나 공적인사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에 제1수정헌법의 기준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적용해왔다. 예컨대 1984년의 Sharon v. Time, Inc.에서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인 Ariel Sharon (현 이스라엘 수상)을 공적 인물로 결정하고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라고 판시했다.⁷¹⁾ 마찬가지로 Desai v. Hersh사건에서도 전 인도 수상인 원고를 공적인물로 규정짓고, “현실적 악의”의 제한을 받는다고 연방지방법원은 결정했다.⁷²⁾ 보다 최근에는 전 소련의 저명한 인권운동가를 “제한적 공적 인물”로 결론 내린 한 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⁷³⁾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 공직자나 공적인물에 대한 “현실적 악의” 문제를 연방대법원이 다룬 적은 없다. 따라서 외국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인 미국법상의 공직자 기준을 채택하기를 꺼리는 법원도 있다. 즉 1999년 뉴욕주의 한 연방지방법원은 콜롬비아 상원의원이면서 당시에 미국에 거주하는 의사인 원고를 공직자로 보지 않았다.⁷⁴⁾

“현실적 악의” 원칙이 외국의 공직자 등에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들의 활동이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들의 지명도가 높은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공직자 기준은 지리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외국인 공직자나 미국인 공직자를 구별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⁷⁵⁾ 또한 21세기의 지구촌이라는 다양한 국제 교류와 다국적 상호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현실에서 인위적으로 미국 공직자와 외국 공직자를 명예훼손법상 구별 짓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특히 미국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⁷⁶⁾

69) 485 U.S. 46, 56 (1988).

70) Id. at 50.

71) 599 F. Supp. 538 (S.D.N.Y.).

72) 719 F. Supp 670 (N. D. Ill. 1989), aff'd, 954 F.2d 1408 (7th Cir.), cert. denied, 113 S. Ct. 190 (1992).

73) See *Matusевич v. Telnikoff*, 877 F. Supp. 1 (D.D.C 1995). For a discussion of *Matusевич*, see Kyu Ho Youm, "The Interaction Between American and Foreign Libel Law: U.S. Courts Refuse to Enforce English Libel Judgments," 49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131 (2000).

74) *Lopez v. Univision Communications, Inc.*, 45 F. Supp. 2d 348 (S.D.N.Y. 1999).

75) David A. Elder, *Defamation: A Lawyer's Guide* 5:26, at 5-193 n.8 (2003).

IV. 설리번판결의 현재와 미래

설리번 판결에서 나온 “현실적 악의” 원칙은 언론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법의 균형을 이룩하려는 미국 헌법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수백 년에 걸쳐 보통법상 확립된 명예 우선의 법체제를 헌법화한 것은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냉철하게 인식한 연방대법원의 통찰력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특히 설리번사건이 50년대와 60년대의 인종차별 철폐와 민권 신장의 분규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보면 “현실적 악의”의 배경이 단순한 언론기관에 대한 한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이 아니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설리번판결로 해서 언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난 40년간 연방대법원의 기대 내지 희망대로 조화롭게 보호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답할 수가 없다. 여전히 명예훼손소송에 의한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는가 하면⁷⁷⁾ 이와는 대조적으로 설리번사건과 관련 판결로 인해서 명예훼손법은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고 있으며 명예훼손소송으로 해서 겁을 먹고 있는 현재의 언론기관의 모습은 실제와는 다른 것이다.”는 주장도 있다.⁷⁸⁾

설리번판결의 영향을 반드시 언론사의 승소율에 의거해서 혹은 배상금액의 증감에 따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 명예훼손법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는” 기능으로서 “언론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한다. 명예훼손법을 통해서 언론사의 뉴스취재와 보도 결정 과정을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⁷⁹⁾ “현실적 악의”가 “허위의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뜻할 때 명예훼손소송의 일부로 증거조사(discovery)를 통한 언론기관의 기사편집결정에 대한 원고의 광범위한 심리상태 조사는 기자나 편집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억제할 수도 있다.⁸⁰⁾ 이와 관련해서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규모 언론사로 하여금 “현실적 악의”를 통한 명예훼손면책을 아예 포기하게 할 수 있다.⁸¹⁾

“현실적 악의”가 요구되는 명예훼손소송의 절차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그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은 설리번판결의 “현실적 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공적 인물을 특히 사회적인 지명도와 관련지어 공적인 분쟁 등과는 무관한 사람들

76)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he "fair report privilege" as a libel defense, see Kyu Ho Youm, "Republication of Foreign Government Statements: The Fair Report Privilege in U.S. Libel Law Reexamined," 6 *Communication Law & Policy* 393 (2001).

77) See Kent R. Middleton et al., *The Law of Public Communication* 93-94 (6th ed. 2004).

78) See Logan, *supra* note 42, at 508.

79) Kyu Ho Youm, "Libel: The Plaintiff's Case." in *Communication and the Law* 97 (W. Wat Hopkins ed., 2004 ed. 2004).

80) Newsnotes, "Is 'New York Times' the Culprit?" *Media Law Reporter*, Feb. 10, 2004. See *Herbert v. Lando*, 441 U.S. 153 (1979).

81) *Id.*

을 “현실적 악의” 원칙에 포함시킨 것은 제1수정헌법의 참 뜻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⁸²⁾ 그리고 사적인 인물에 허위 공표적인 프라이버시사건에 대한 “현실적 악의” 적용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미국의 명예훼손법에서 실질적 손해를 증명치 않으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 Gertz 판결 이후의 확립된 법리이다. 그러나 아직도 명예훼손 유무와는 관계없이 “현실적 악의”가 명예훼손의 근거인 경우 표현의 명예훼손성으로 인해 가정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다. 언론법학자 David Anderson은 이 가정적 손해배상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은 설리번판결의 남은 과제라고 주장한다.⁸³⁾ 사실 2003년 7월 한 연방지방법원은 펜실베니아주 명예훼손법과 관련해서 추정적 손해배상을 거부할 세 가지 정책적 이유를 밝혔다. 즉 우선 “보상적 손해배상의 목적을 보면 추정적 손해배상의 배척을 정당시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명예훼손법의 주목적은 부당하게 명예훼손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므로 “해를 입지 않은 원고는 ‘명예훼손’의 원고가 아니다.”⁸⁴⁾ 둘째, 손해배상을 공정하게 산출해야 한다는 법원의 관심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추정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배심원은 보상액의 증거도 없이 보상금을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 손해배상기준이 아주 낮고 쉽게 증명할 수 있으므로 추정적 손해배상은 필요 없다.⁸⁵⁾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도 “현실적 악의” 원칙은 형사적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들은 합법적인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언론법 변호사 Bruce W. Sanford의 표현처럼 국제적으로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미국이 여전히 주법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⁸⁶⁾ 이점에서 영국 런던에 있는 자유언론 국제운동기구인 ARTICLE 19가 채택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에 관한 원칙”에 “현실적 악의”가 형사적 명예훼손요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즉 “현재 시행중인 어떠한 형사적 명예훼손법도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허위이고 허위임을 실제로 인지하거나 허위인 것을 무시하고서 그 표현을 공표했다는 것과 원고를 해하려는 구체적 의사를 가지고 공표를 했음을 증명치 않으면 형사적 명예훼손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⁸⁷⁾

한편 설리번사건으로 해서 미국 언론이 전보다 위축됨이 없이 과감하게 폭로적인 보도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부수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야하는 현

82) See Anthony Lewis, "New York Times v. Sullivan Reconsidered: Time to Return to 'The Central Meaning of the First Amendment,'" 83 *Columbia Law Review* 603 (1983).

83) David A. Anderson "Presumed Harm: An Item for the Unfinished Agenda of *New York Times v. Sullivan*," in *New York Times v. Sullivan: The Next Twenty Years* 461 (1984).

84) *Sprague v. American Bar Association*, 31 Media L. Rep. (BNA) 2217, 2231 (E.D. Penn. 2003).

85) *Id.*

86) Newsnotes, "Panelists Highlight Uncertainty in U.S. Criminal Libel Law," *Media Law Reporter*, Dec. 16, 2003.

87) ARTICLE 19, "Defining Defamatio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 of Reputation," Section 2, Principle 4 (July 2000).

실이 있다. 명예훼손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미 언론의 “방어저널리즘”은 그 한 예일 것이다. 방어저널리즘은 미국의 언론사들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기사를 내기 전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보도를 미리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⁸⁸⁾ 물론 적극적으로 법적인 문제들을 언론사가 해결하려는 것은 반드시 일반 독자나 시청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현실에 대한 교육지책이라고 할 것이다. Lois G. Forer판사는 “방어저널리즘을 언론사가 따르면 독자나 TV시청자들은 여과된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기사를 받아 보게 된다. 이것은 독자와 시청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사의 저자나 발행인과 제작자에게 소송비용과 상당한 손해배상액 지불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⁸⁹⁾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통한 예방상담은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도를 최대한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 즉 저널리스트적인 판단을 고려하면서 법적인 충고를 하라는 것이다.⁹⁰⁾

“현실적 악의”와 관련해서 미국 법원의 공적 인물과 사적 인물의 구별은 명예훼손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소송의 현실에서 보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원고에 대한 구분이 애매모호할 경우 사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다. 이 같이 원고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다. 명예훼손법의 언론자유에로의 구조적인 편향은 최근 수년 동안 언론사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는 프라이버시법이 원고에게 승소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익명보도 약속을 어겼다고 소송을 하고 불법침입(intrusion)을 이유로 프라이버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일반 “현실적 악의”의 예기치 않은 반사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기사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취재의 방법, 과정이 소송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21세기의 새로운 미국 언론법의 추이는 보여주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연방대법원은 주요 명예훼손소송판결을 하나도 내린 적이 없다. 대체적으로 언론에 적대적인 William Rehnquist 연방대법원장으로 볼 때 “현실적 악의”를 재고할 것이냐 하는 추측을 해 볼 수도 있다. 1988년의 Hustler Magazine판결이 시사하는 것이 있다면 “현실적 악의”는 이제 미국 헌법의 반석 같은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현실적 악의”의 존재함과 확대 적용의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특별히 예기치 않은 상황이 없는 한 “현실적 악의”는 어느 정도의 조율을 겪으면서 계속 언론의 자유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 악의” 원칙은 간접적으로 외국의 명예훼손법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 법원들의 한결같은 외국

88) For a useful study of U.S. newspapers' defensive journalism, see Debra A. Franklin, "The Media Attorney as Editorial Partner: A Study of the Role of Newspaper Counsel in the Newsroom Cultur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1991).

89) Lois G. Forer, *A Chilling Effect: The Mounting Threat of Libel and Invasion of Privacy Actions to the First Amendment* 31 (1987).

90) Smolla, *supra* note 22, 13:6, at 13-4.

명예훼손판결의 집행거부는 설리번사건에서 천명한 제1수정헌법의 근본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엄격책임을 배격하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인 경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언론사에게 고도의 과오 책임, 허위에 대한 증명 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설리번사건에서 유래한 절차 등은 영국 등의 법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⁹¹⁾ 이 같은 법적인 차이 등이 국제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소될 지는 아직 의문이다. 그러나 설리번판결이 일반적으로 외국의 혹은 국제기구나 재판소 등의 판결에서 이론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인정을 받는 것을 볼 때 정부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미연방대법원의 주장은 반드시 미국만의 헌법이상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적 악의” 적용이 작게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충돌을 보여 주는 것이며 크게는 한 사회 즉 미국민의 법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룩하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91) Joshua Rozenberg, *Privacy and the Press* 178 (2004).

언론피해구제제도 활성화방안

김 창 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5월 21일 부산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창룡(경남중재부 중재위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하선규 위원(사회로)의 사회로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논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주

1. 언론피해의 특징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계량화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일단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일반 독자나 시청자의 입장에서 오보와 정보에 대한 구별과 판단이 어려워 보도시점에서는 모두 정보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보도 정보와 같은 파급효과로 피해를 일으키기 마련이며, 한 언론사가 보도하면 여러 매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매체마다 반론권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회복이 어렵게 된다. 한편 법적 피해보상제도가 있어 잘못된 보도에 대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배상액수가 미미한 편이라 실익이 적고, 언론사에 항의했다가 자칫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 대응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2. 언론에서 주로 범하는 위법 취재 보도

언론에서 주로 범하는 위법한 취재 보도의 행태도 다양하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미성년 피의자 신원공개

기자들은 취재보도시 보다 구체적으로 기사작성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자들은 위법의식 없이 사건기사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도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소년법 제68조 2항에 의하면, 미성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할 시에는 신문의 경우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에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2) 봉욕당한 부녀자 신원공개

성폭행 당한 피해자의 신원 공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잘못된 보도는 당사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된다. 사건기사는 이런 류의 사고를 자주 접하게 되는 만큼 피해를 당한 인권을 언론이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도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3)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방법, 사용량 등 공표

약물복용이나 가스흡입 등 이런 사건이 잦아지는 만큼 기사화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히로뽕 등 ‘백색의 공포’가 점점 우리 가까이 침투해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기사에서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이용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 예가 자주 말썽을 일으키곤 한다. 기자의 전문성 부족이든 실수에 의해서든 이런 보도는 언론의 역기능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언론의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4)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 및 고발자의 신원공표금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리 언론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피의 사실 공표

한국 언론이 관행적으로 범해오는 대표적 인권침해사례 중의 하나이다. 헌법상 모든 범죄혐의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전에는 무죄로 추정되고 형법 제126조는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또 중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그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언론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한 피해자와 언론 모두를 위해서 이런 보도는 자제돼야 한다.

6) 개인이나 가족의 자살사건과 같은 사건사고를 무조건 기사화하는 관행

한 개인의 자살사건이든 가족집단지살사건이든 외국에서는 특별한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사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언론 특히 지방언론에서는 이런 류의 기사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죽음이라는 극적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개인의 비극을 보도할만한가의 가치평가를 하기도 전에 기사화하는 관행이 있다. 죽음은 중요한 인간사이고 언론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한 개인의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무시될 수 없다.

7) ‘설(說)’이나 소문을 기사화하는 경우

‘---라는 설이 있다’, ‘---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있다’, ‘○○○이 리베이트로 2천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등 밀도 끝도 없는 설과 소문을 보도하는 것도 언론이 흔히 범하는 위법 관행의 하나이다. 설과 소문은 취재의 단초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자체가 기사로 둔갑하는 데는 무리와 위법이 따른다.

8) 제목이나 편집상의 문제로 오보를 하는 경우

요즘은 지면도 많이 늘어나고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신문을 꼼꼼히 보는 사람들이 드물다. 제목이 섹시하고 강하면 눈길을 끌게 되고 관련기사가 읽히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형의 제목을 찾기 위해 편집기자들은 무리하게 논리를 비약시키기도 하고 제한된 지면에 맞추기 위해 쉽게 단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언론이 종종 무리수를 범하게 된다.

9) 타매체 기사를 베끼거나 통신사 기사를 전재하는 경우

한국 언론현실에서 타매체 기사를 베끼는 것이 드문 현상이 아니다. 소위 낙종을 하게 되면 비슷하게라도 보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크기는 줄이는 한이 있어도 대부분 기사를 베껴서라도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이처럼 타언론사의 기사

를 베껴서 냈다가 오보로 판명될 경우, 그 책임은 당연히 베껴서 보도한 언론사에 있다.

10) 데스크의 무리한 요구나 예단, 독단, 무소신의 경우

언론사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불법적 취재보도 이면에는 반드시 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데스크(부장)의 무리한 지시나 일방적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도 많다. 특히 한국과 같은 권위주의적 명령식 지휘체제가 갖춰진 언론사의 편집국이나 보도국의 분위기에서 데스크의 영향력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3. 언론중재위원회 활성화 방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이 중재신청을 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기관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 1일 「언론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언론피해상담센터」는 언론분쟁 관련 전문변호사와 상담원들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방문, 전화, 우편, 이메일,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담료와 소송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법률적 조력을 받기 힘든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론피해상담센터」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사후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언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종사자들에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보도활동이나 언론관련 판결 추이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유사한 언론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법률자문도 해주고 있다. 나아가 각 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중재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한데, 특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24시간 인터넷, 팩스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중재위원 선임시 적격성을 심의하는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정간법 개정을 통해 일정액수의 규모에 한해언론중재위원회에서 민사소송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피해 구제와 관련된 one stop service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뉴스를 포함하여 「OhmyNews」나 「미디어

다음」 등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 등도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토 론

사회 하 선 규
부산YWCA 사무총장

사회자 : 언론피해의 특징과 언론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위법 취재 보도 실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피해회복을 위해 중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충실하게 해주신 김창룡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참석자 여러분들이 토론주제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전반에 대해 갖고 계신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룡 (부산일보 편집부국장) : 제가 재직하고 있는 신문사에도 기사와 관련된 정정 요구 등이 가끔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문사 입장에서 기사로 인해 상대방의 인권침해 등 피해가 발생하여 정정이나 반론보도 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구제를 위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런 방침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박규용 (신라대 법학과 교수) : 주제발표 중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특징과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 취재보도의 유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피해구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언론피해구제제도가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언론피해구제를 법의 역할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재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구제의 최종 수단은 법적 구제이기 때문에 법적 차원의 대책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중재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법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언론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옥균(대한민국 상훈회 대표) : 언론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이나 사회적 지도자들에

대한 편파보도로 인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측면이나 대중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이러한 잘못을 정정하는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에서는 범죄나 사고 등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많은데 보다 밝은 측면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함으로써 국민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발표자 : 궁극적으로 법적 피해구제제도로 가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법적 피해구제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서 명예훼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피해구제제도가 최후의 보호막이 될 수 있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원용한 판결이라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간물법 개정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 관련 민사소송을 전담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언론피해구제가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하는 것보다 피해구제를 위해 실효성이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법적인 관점에서 피해구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당연한 지적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해왔고,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단일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언론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피해구제 규정을 단일법에 규정하고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사건도 중재위원회가 간편하게 비용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해 둔 상태입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이 피해구제를 좀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정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시회 회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준판결권을 가지고 분쟁을 조정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도 언론 분쟁에 대해 중재만 할 것이 아니라 준판결권을 가짐으로써 좀 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책자에 피해구제절차 안내와 더불어 중재위원회를 거쳐 피해가 회복된 사례를 게재함으로써 피해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로 (영산대 매스컴학부 교수) : 총선기간동안 특정 정파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게 일부분을 강조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한 경우가 많았는데,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왜곡된 인상을 주거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보도는 언론 스스로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피해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피해예방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재위가 피해예방을 위한 시민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되어야 하지만, 중재위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대한 경제적 징벌 효과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론사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게 하면 언론도 좀 더 신중하게 보도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기 (인간성회복운동추진부산울산경남협의회장) : 얼마 전 창원에서 있었던 왕따 동영상 사건으로 인해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인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표자 : 중재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합의가 될 경우 재판의 효력을 가지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재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왕따 동영상 사건을 중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재위원들이 언론보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여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우철 (부산중재부장, 부산지법 부장판사) : 법원도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소액심판이라든가 여러 유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말고 법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재위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언론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언론편을 드는 게 아닌가 하는 편견을 갖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의 의미에는 언론피해를 구제

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언론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러한 소송이 증가하면 언론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진구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론·추후보도청구의 경우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중재위원회가 종국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도 중재위를 거치게 되어 있어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절차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발표자 :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만큼 소송이 남발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작용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독립성을 보호하면서 부주의하고 신중하지 못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론보도나 추후보도청구는 법으로 규정한 중재위원회의 고유업무입니다. 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 법원에 가기 전에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보도청구도 중재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원만하게 해결되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만 법원으로 가는 등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제(부위원장, 전 부산일보 사장) : 언론의 자유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경제적 정의구현에 언론이 기여한 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발전되어야 하고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명예적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재위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언론 자유가 신장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성황을 이루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현장경험에서 우러난 언론피해의 유형분석과 언론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주신 주제발표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중재위원회는 피해구제와 함께 피해발생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근 변호

사 2명을 포함하여 8명의 전문상담원이 언론피해와 관련된 무료 상담을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에 가기 전에 언론분쟁의 사전 조정을 통해 중간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하고 있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재위의 피해구제율이 68%에 달하는 것은 중재위의 역할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구제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언론보도와 미성년자의 인격권

최영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범죄, 미성년자 그리고 미디어

국내 언론보도에서 인권은 사각지대였다. 최근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언론사들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나 성적 소수자, 미성년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격권은 여전히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방송법이나 청소년보호법 각종 심의규정, 윤리규정을 보면 일반 청소년보호는 물론, 청소년피의자의 인격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말뿐이다. 보통사람들의 인격권에 대한 미디어와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면에서 미성년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언론미디어가 달라지지 않는 한, 미성년자들의 인격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주지하듯 언론미디어는 범죄나 미성년 관련 보도를 선호한다. 자극적, 선정적으로 포장하여 사람의 관심을 끄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가령 아동성폭력이나 청소년비행과 같은 사안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상품화하는 단골 메뉴다. 다음 두 가지 사례를 보자.

먼저 세계적인 권위지라는 <워싱턴포스트>의 세기적 오보 '지미의 세계' 건이다. 1980년 7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 1면에는 흑인 여기자가 쓴 '지미의 세계'가 특종 보도됐다. 지미는 여덟 살인데 헤로인 중독자다. "지미는 다섯 살 때부터 헤로인 주사를 맞아 왔다"는 제목으로 시작한 장문의 탐사보도는, 소년의 어머니가 그런 것처럼 역시 사생아인 지미가 어머니의 애인으로부터 매일 헤로인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쿠크 기자는 마치 현장 모습을 눈으로 보는 듯 묘사했다. 그녀는 지미가 어머니와 동거 애인이 헤로인을 맞는 것을 보며 호기심에 중독자가 됐고, 그의 어머니의 부모도 중독자였으므로 결국 3대째 헤로인에 희생되고 있다는 끔찍한 기사를 훌륭한 문장으로 써 나갔다. 그해 '지미의 세계'는 풀리처상 특집기사부문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지미는 가공의 인물이었고 당연히 '지미의 세계'는 소설이었다. 기자의 특종장박과 언론사의 상업주의의 합작품이었다. 지금도 '지미의 세계'는 <워싱턴포스트>와 풀리처상 역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다.

다음은 최근 국내 신문의 기사다. 지난 5월 27일자 <○○일보> 1면에는 "30만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라는 기획기사가 실렸다. 큼지막한 아이사진과 "형은 학교급식으로 점심이라도 해결하지만 난 그것도 못 먹어요"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서울 사근동에 사는 승재(13) 군 3형제 중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막내 승용 군이 아침 점심 때도 굶을 때가 많으며 "할머니가 아프면 그냥 굶는다"는 승재 군의 말을 인용 보도한 내용이다. 다소 '쇼킹'한 사진과 함께 보도가 나간 후 가족들은 얼굴을 들고 나다닐 수가 없다고 통스러워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인 윤아무개 씨가 ○○일보 독자란에 반론을 올렸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는 <○○일보> 기자의 요청을 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위의 따뜻한 손길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기사에 실어 주리라 믿고 기사를 사근동 이승용 집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씨는 "아침 신문을 보면서 청천벽력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어안이 병병하고 글을 남기는 지금도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다. 아이가 굶고 있다니..."라고 어이없어 했다.<오마이뉴스> 2004년 6월 1일자 "<○○일보> 굶는 아이들 과장, 왜곡 말썽") 이 기사가 사실을 얼마나 왜곡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이 기사에서 어린이 삼형제의 인격권은 별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동서를 막론하고 언론매체는 어린이와 청소년, 특히 미성년 범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표면적 이유는 언론의 환경감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 상품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이 미성년자나 미성년피의자의 이런 속성에만 주목하는 한 앞으로도 청소년비행 관련 보도가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 과정에서 인격권이 크게 고려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물론 미성년자의 인격권이 무시되는 것은 꼭 언론 탓만은 아니다. 언론은 일정하게 우리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나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권을 표방하는 강금실 장관 취임이후 검찰도 범죄 수사에 있어 여성이나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보호에 크게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하지만 오랜 관행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언론보도와 인격권 영역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인권 침해 실태와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언론매체가 어린이와 청소년 특히 미성년 범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실제 이유는 그 상품성 때문

2. 어린이, 미성년, 청소년은 누구인가?

한국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국가와 사회의 보호 대상이다. 기성세대가 정해진 틀 속에서 정해진 규범에 순응해야 한다고 강요된다. 청소년 생활공간과 미디어 영역 전반에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이를 잘 보여준다. 어린이, 미성년자, 연소자, 청소년 등의 용어가 혼재한다. 공통적으로 아직 공동체내의 독립한 주체로서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지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고 부른다. 반면에 '아동복지법'이나 '근로기준법', '영화진흥법' 등에서는 청소년/연소자를 만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르게는 유년, 장년, 노년과 구분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자들을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청소년보호법). 그런 면에서 미성년자 인격권을 이야기할 때 미성년자란 넓게 잡을 때 대략 출생으로부터 24세까지로 보는 것이 현행법령의 태도로 보이는데, 좁게 보면 그 중에서도 민법상 미성년자의 범위에 속하는 20세 미만까지, 가장 좁게는 18세 미만까지를 주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김선택) 여러 관련법은 이들이 아직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기보다는 부모나 국가와 같은 타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부모나 국가는 이들을 성장 유해한 외부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해 줄 의무가 있다.

다른 면에서 '형법'을 들여다보면 소년범의 경우 14세 이상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14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근무중인 경찰에 적발되거나,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등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오게 되면,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문원지를 작성하게 된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한 후 사안이 무거울 때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또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12세 이상 소년이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범죄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등의 경우, 장차 형법 저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 그 소년을 역시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관리 시스템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요즘의 적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사회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장소인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으로 인해 범죄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미성년’이라는 용어가 그러하듯 이들의 일탈이나 범죄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역할은 사후의 응징의 대상이 아니라 예방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러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대화한 국내의 언론매체의 미성년자 관련 보도는 아직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부분을 추종하는 상업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뿐만 아니라 ‘방송법’, ‘언론윤리강령’, ‘방송심의규정’ 등 미성년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수히 많다.

먼저 소년법을 보자. “소년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대하여 그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推知)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제68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2항에서는 위반시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 방송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배려 때문에 규정된 것이지만, 모방에 의한 비행의 전과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임병국)

특히 미디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송심의규정과 언론윤리강령 등은 언론보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다. 방송심의규정에서도 청소년 범죄사건에 대한 보도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제22조 공개금지 조항을 보면 방송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 13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도할 경우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나 촬영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초상을 공표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초상자 본인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이 미성년자의 인격가치 이외에 그의 초상사용이 재산적 이익과 관계있을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국내의 청소년 관련법을 보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과 장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일단 어린이와 청소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사회적 힘이 취약한 관계로 일상적으로 인권침해가 일어나더라도 언론은 이에 대해 무심한 경향이 있다.

언론매체의 미성년자 관련 보도는 아직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부분을 추종하는 상업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3. 미디어 속의 미성년자들

현장 영상을 추종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범죄관련 미성년자 인격권 침해가 최근에도 더 심각하게 반복되고 있다. 앨범 등의 사진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범행현장과 수법을 기자나 목격자 등의 멘트로 세밀히 묘사하기도 했다. 포천 여중생·부천 어린이 실종피살 사건 등을 보도하며 “콘돔과 정액과 음모가 묻어 있는, 정액이 묻어 있는 휴지를 발견…”했다거나 “손가락을 깎지 끼워 묶는 등 결박 방법도 특이”하고 “두꺼운 외투를 뚫을 정도로 예리한 흉기로 급소만 여러 차례 찔려…”라는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겨레> 2004년 3월 4일자)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33살 김모 교사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반 여학생 10여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교사는 제자에 대한 애정표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성추행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한 방송사의 보도내용이다. 이 기사의 입장, 관점은 성인에 의한 어린이 폭행에 있고 그 행위에 대한 질타가 초점이다. 텔레비전의 경우 관련 화면이 등장하거나 화면 처리를 해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한다. 제작자들은 가린다고 가리지만, 많은 경우 그 어린이를 아는 사람은 식별이 가능하다. 얼굴을 가리지만 관련자가 다니는 학교나 동네의 현장화면과 인터뷰를 동시에 내보내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물론 방송 뉴스에서 현장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미성년 범죄와 관련해서까지 그 학교, 독서실, 동네에 접근해서 신원이 드러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연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관심을 가지고 한국 언론의 미성년자와 관련 보도를 보면 위법가능성이 큰 보도 사례가 부지기수다. 전형적인 것으로 첫째, 성명, 나이, 주소, 재학 중인 학교, 학년 등 모든 인적사항을 완전하게 공개하는 경우다. 둘째,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성과 나이만을 공표 했으나 주소를 밝히는 경우다 셋째,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성과 나이만을 공표 했으나 부모의 신원을 적시하거나 주변사항을 공표하여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경우다.(김창룡) 그 미성년자가 범죄와 연루된 경우에는 소년법, 방송심의규정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드러냄으로써 주변사람들은 능히 알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방송사의 경우 뉴스뿐만 아니라 심층보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추적 60분>,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도 아동이나 미성년자 범죄나 성폭행 등에 대한 이슈를 자주 다룬다. 뉴스보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층탐사취재물에서도 어린이, 청소년의 인격권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SBS의 간판 프로그램 중의 하나다. 1992년 3월 31일 ‘미스터리 다큐멘터리’라는 부제를 달고 첫 방송을 시작했다. 첫 회에 비장의 카드로 던진 아이템이 199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형호 유괴사건’이었다. 방송 다음날 수사본부로 시민들의 의견과 제보가 빗발쳤고 수사반은 급히 1대이던 전화를 6대로 증설하고 추가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청자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시청률도 30%를 넘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후에도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등의 문제를 빈번하게 다루면서 미성년자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아동관련 주제를 보면 ‘친부모의 아동학대’, ‘학대의 또 다른 이름, 방임... 그리고 학대 이후’, ‘아동 성폭행 문제’, ‘학대방지를 넘어 아동의 인권을 얘기

할 때...' 등 다양하다. 초기에는 마약이나 학교폭력, 왕따 등과 같은 자극적 소재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여 시청자 눈길잡기에 주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사건의 원인과 처방을 제시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동의 인격권은 여전히 문제다.

문화방송의 <시사매거진 2580>이 지난해 4월 내보낸 '커피 한잔의 비극'의 경우 여교사의 인권문제도 있었지만, 거둬드는 장례식장의 장면과 울면서 "선생님이 잘못 했어요"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들의 장면을 방영을 했다. 여교사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어린이들을 집단으로 동원하고 있는 경우였다. <추적 60분>의 지난해 6월 방영된 '가정폭력 실태보고...'에서는 신림동의 한 남자가 살해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와 상황들을 보여주었다. 가해자는 바로 그의 아내와 세 명의 딸로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참지 못해 살해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경찰서로 도움을 요청한 한 아내의 실제 상황과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아들의 상황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현장 영상을 추종하는 텔레비전의 경우 범죄관련 미성년자 인격권 침해가 최근에 더 심각하게 반복되고 있어

4. 인권 존중의 사회로...

미디어 채널이 늘어나고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들의 인격적 성장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가족과 학교의 울타리 기능이 허물어지고 있다. 심지어 새로운 미디어나 정보수단들이 학교와 가정의 기능을 일정하게 대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매체는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 언론미디어에서 선호하는 미성년 범죄나 비행관련 대표적 주제는 학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왕따), 원조교제, 길거리 아이들 등이다. 이런 사회문제의 단면이 언론에 의해 자극적으로 보도되면 여론이 소위 '냄비'처럼 끓는다. 그러면 교육당국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고 일단락된다. 언론은 이러한 문제의 담론형성을 주도하지만 대체로 당시 단편적 상황에서 대중적인 진단을 내놓게 마련이다. 지난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왕따'동영상이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교장선생님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찌 보면 우리 언론은 그저 늘 발생하게 마련인 미성년 범죄 등을 자극적 상품화하여 널리 유포시킬 뿐이다. 미디어간의 상업적 경쟁이 가속될수록 미성년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5월 주요 방송사 뉴스프로그램 등을 모니터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보호를 크게 강화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은 희박했다. 국가 폭력으로 인권유린이 일상화된 사회였다. 미성년자의 인격권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러하니 범죄자로 추정되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의 태도나 미디어의 보도는 그 자체가 거의 '범법행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디어의 미성년자,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직도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에 나온 '비행청

소년' 사진을 보고 "선생님, 이런 사진은 사실 '인권유린'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 시민단체는 북한에서 용천 폭발사고이후 관련 보도에서 어린이들이 마구잡이로 보도되는 것을 보고 인격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렇다. 문제의 핵심은 청소년 등 미성년에 대한 우리사회의 태도에 있다. 몇 가지 당위적 권고안으로 결론에 대신한다.

우선,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신장되어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나 보도를 담당하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 인권의식이 신장되지 않는 한 미성년피의자 인격권과 같은 '마이너 한' 문제들이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음으로 언론사, 언론인의 인권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누차 지적했듯이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 청소년 성매매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발이나 당위적 질타만 난무한다. 범죄보도, 청소년범죄보도는 이미 환경감시나 계몽이라는 고전적 언론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 부작용만 확산되고 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미성년에 대한 '상품화'는 자제해야 한다. 사회 감시를 위해 꼭 해야 한다면 철저하게 그들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끝으로 미성년자나 미성년피의자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구제행위가 필요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들은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 인권의식이 신장되지 않는 한 미성년 피의자 인격권 침해는 나아지지 않아

<참고문헌>

김선택, "아동,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 미성년, 아동, 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http://www.ccourt.go.kr/library/docu_material.asp)

김창룡, "취재보도 법제/윤리/관행", 기자협회 외 주최 토론회 <명예훼손 소송과 공익보도>(1999. 6. 23) 토론회 발표문.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 1999.

한진만 외, "청소년보호와 방송"(특집), <방송과 시청자>, 1997년 7월호

언론중재에 대한 두가지 조사 결과

정 연구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최근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여 중재제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다. 서울에 소재해 있는 언론인(지상파 방송 3사, 10대 전국지) 200명과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제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내용(이하 올해 연구)이다. 조사는 올해 초에 진행되었는데 조사 문항은 지난 해 중재위원회가 한양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연구한 “2003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 만족도 연구”(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이하 만족도 연구)의 조사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되었다.

조사 문항을 상당부분 동일하게 가져간 이유는 지난해 만족도 연구가 중재신청을 하거나 중재심리에 불려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응답내용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응답내용이 어떻게 다르며 그런 내용이 중재위원회와 중재제도의 개선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였다.

조사결과 만족도 연구의 조사 결과와 상당부분 유사한 응답을 얻었다. 가령 중재제도의 필요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만족도 조사의 경우, 중재 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 신청인의 96.1%가 찬성의사를 밝혔는가 하면 중재 피신청인인 언론인도 역시 92.2%가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올해 연구에 있어서도 시민의 92.0%가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는가 하면 언론인의 경우도 97.0%가 중재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정보는 이제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언론중재 경험 여부에 관계없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과 활용에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사람들과 그로 인해 중재심리를 당해 본 사람들로만 구성된데 반해 올해 조사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명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 법원이나 중재를 신청한 경우는 한명도 없는 집단이었다. 올해 조사에서의 언론인 집단도 중재심리 참석 경험을 통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잘 알게 되었다고 표명한 사람이 16% 정도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조사에서의 결과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중재위원회가 언론인에 있어서나 국민에 있어서나 매우 유용한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만약 유용성 인식에 대한 의견조사가 만족도 조사에서처럼 중재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보편 명제를 도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올해 조사가 만족도 조사와 설문 문항을 상당부분 같이하면서 다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한 기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설문문항을 동일하게 가져가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보편명제의 도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항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서도 중재제도

이용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겠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게도 된다.

가령 언론중재위원회 인지여부에 대한 응답결과가 그러한 사례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중재위원회를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고 올해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언론인의 경우는 비슷한 경향의 응답을 얻었다.

‘전혀 몰랐다’고 응답한 사람은 두 조사에서 모두 한명도 없었다. ‘이름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만족도 조사가 25.0%, 올해 조사가 25.5%를 기록했다.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는 자연적으로 각각 75%와 74.5%를 차지했다.

언론인의 응답과는 달리 만족도 조사의 신청인과 올해 조사의 일반 시민은 상당히 다른 경향의 응답을 했다. 신청인의 경우 ‘전혀 몰랐다’가 7.5%, ‘이름은 알고 있었다’가 44.3% ‘비교적 알고 있었다’가 48.2%였던 것에 비해 올해 조사의 경우 각 항목에 14.5%, 74.0%, 11.5%의 응답을 얻었다. 신청인의 경우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중재제도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해 피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올해 조사의 일반시민들은 중재제도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 차이가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는가? 만족도 조사가 중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고 이 집단에서의 중재제도 인지 정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높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렵지 않게 인과를 짐작할 수 있다. 중재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신청인의 경우 방송보도와 신문광고가 중재위원회에 대해 알게 해준 가장 중요한 채널이 되었다고 했다. 일반시민도 언론매체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피해 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 매체를 통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해 언론인들에 대한 상시적인 책임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미국 언론사, 명예훼손 소송 절반 이상 승소 - 2003년에는 14건 중 8건 이겨

신문과 기타 언론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언론사의 승소율은 높아진 것으로 MLRC(Media Law Resource Center)가 2004년 연차보고서에서 밝혔다. 2003년 신문기사 때문에 신문사가 법정에 선 경우는 14건이었으며 이중 8건을 이겨 57.1%의 승소율을 보였다. 2003년의 승소율은 2002년-법정에 간 6건 중 5건을 이긴-보다 낮았지만 이 숫자는 MLRC가 언론의 명예훼손과 사생활보호 관련 소송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1980년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승소율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언론사 승소율이 높아졌다. MLRC가 198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관련 소송 494건을 추적해 본 결과 이중 61%에서 패하고 있으나, 언론사의 승소율은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였다. 언론사들은 1980년대에서는 겨우 35.6%만 이기다가 1990년대에는 42.2%로, 2000년대 들어 지금까지는 54%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또한 법정까지 간 명예훼손 사건의 건수도 1980년대 연평균 24건에서 1990년대에는 23건으로, 2000년과 2003년 사이에서는 12.5건으로 줄어들었다.

배심절차 상에서의 승소율(Win Rate Before Juries)이 높아졌다. 판사 직접재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언론사의 소송 승소율의 증가는 배심절차 상에서의 승소율이 높은 결과에 기인한다.

소송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재판까지 가는 소송의 건수는 1980년대 이래 서서히 줄어가고 있다. 1980년대에는 1년 평균 24건이던 것이 1990년대에는 연평균 23건으로, 2000-2003년 사이에는 1년에 12.5건의 평균치를 보였다.

신문에 대한 소송은 줄어들었다. 기간 중 소송건수의 감소는 신문에 대한 소송의 감소에 기인한다. 방송에 대한 소송건수는 1980년 이래 줄지 않았으며, 2000년대에는 오히려 조금 늘었다.

배상액은 상승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지금까지 재판의 평균 손해배상 선고액은 340만 달러이다. 1990년대에는 한 번의 예외적인 220만 달러가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곤(결국은 기각됐지만) 평균 260만 달러였으며, 1980년대에는 평균 150만 달러였다.

배상금은 3분의 1일이 최종 집행됐다. 그러나 소송의 마지막 단계에 오면 1980년 이래 원고가 판결 받은 배상금의 4분의 1 가량이 판결 후 공방 와중에서 판사들에 의해 뒤집히거나 감액됐다. 이러한 배상액의 약 35%가 항소심에서 확정되거나 공소를 하지 않아 전액 지불되었다. 다른 14%는 쌍방간에 해결되었으며 나머지는 항소심에서 뒤집혀 지거나 변경되었고, 보고서 발행시점에 항소심 상태에 있거나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몇몇의 소송이 있다.

MLRC의 샌드라 배런 사무총장은 명예훼손이 아직 언론기관에 무서운 존재라고 말한다. “이렇게 과도한 배상금들은 항소심에서 줄어드는 반면에 그에 따른 소송비용이 상당하다.” 그녀는 “과도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항소비용들이 편집자와 발행인들로 하여금 논쟁적인 사안과 인물을 다룰 때 멈칫거리게 할 위험성이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명예훼손 소송의 약 4분의 3이 연방법원(108건)에서 보다는 주법원(386건)에서 이뤄져 왔고, 몇몇 주들은 소송 언론사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곳도 있다. MLRC는 언론 명예훼손 소송을 주 별로 비교한 결과 언론사들이 코네티컷 주와 오리건 주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들 주에서의 승소율은 83%였다. 가장 나쁜 주는 캔자스였는데 언

론사가 3건 소송 모두를 잃고 있다. 아칸소 주는 언론기관이 6건 중 1건만을,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5건 중 1건을 승소했다. 캘리포니아 주가 37건으로 가장 소송사건이 많았으며, 펜실베이니아가 31건으로 그 다음이었고, 텍사스 27건, 플로리다 21건의 순이었다. (MLRC 2004년 보고서) □

도쿄고등법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주간지를 판매금지한 도쿄지법 결정을 보름만에 취소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16일, 17일 발매의 「週刊文春」(3월 25일호)에 게재된 중의원 田中眞紀子 전 외상의 장녀(長女)에 관한 기사와 관련, 장녀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청구한 출판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동 잡지 발행원인 문예춘추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지 않는 한 동 잡지의 판매 등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으나 3월 31일 도쿄고등법원은 “기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으나 판매금지를 인정할 정도로 중대하고 회복이 어려운 손해의 우려는 없다”고 판시, 도쿄지법의 결정이 있는 지 불과 15일만에 이를 취소했다.

도쿄지법은 지난 3월 16일 이 사건을 심의하면서 “프라이버시는 명예와는 달리 널리 알려진 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명예의 보호보다도 사전금지의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하고 “사전금지의 요건은 ①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의 여부 ②공공목적이 명백한지의 여부 ③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판단, 동 잡지에 대한 판매금지를 명령했다.

도쿄고법은 도쿄지법의 결정을 취소하면서 출판의 사전금지에 대해서는 「헌법상 가장 존중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도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신문협회보』, 2004년 3월 23일자, 4월 6일자) □

“홈페이지상의 제목에는 저작권 없다” 도쿄지방법원, 최초의 사법판단

홈페이지의 기사제목은 무단으로 복제당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요미우리신문」 도쿄본사가 디지털콘텐츠 기획·제작회사인 「디지털어라이언스」에 대해 6,825만엔(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기사제목 복제의 금지등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도쿄지방법원은 2004년 3월 24일 “문제의 제목은 저작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요미우리」측의 제소를 모두 기각했다.

일본에서 신문기사 자체에 대해 사법부가 저작물성(性)을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문제가 된 것은 디지털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라인토픽스」서비스 등록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전광게시판처럼 흐르는 최신뉴스기사의 제목을 볼 수 있다. 제목은 인터넷서비스회사인 「야후=Yahoo」가 제공하는 뉴스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거나 유사하며, 「요미우리」가 「야후」에 유상으로 사용이 허락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제목을 클릭하면 「야후」의 뉴스사이트가 표시되어 기사전문을 읽을 수 있다.

「요미우리」 측은 기사제목에 대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며 취재로 작성되는 기사와 동일하게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지적, ①무단으로 복제, 제3자에게 반포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이며 ②기사와 함께 홈페이지에 떠올라 광고료수입외에 「야후」 등으로부터 사용 허락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제목을 복제, 다수인에게 송신하는 행위는 영업행위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미우리」 홈페이지의 제목은 기사 중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거나 이를 단축한 표현, 극히 짧은 수식어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므로 기사게재의 사실과 달리 각별히 노력을 들인 표현이 쓰여지고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 저작물성을 부정했다.

복제행위등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제목은 원고가 인터넷에 무상으로 공개한 정보이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라고 판시했다.

(『신문협회보』, 2004년 3월 30일자)

□

도쿄지법 판결, “현저한 신용훼손에는 금전배상뿐 아니라 사죄광고의 게재도 필요하다”

뿐

「가짜 같은 감정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보석감정회사인 「AGT젼라보라토리」가 선데이매일을 발행하는 매일신문사에 3.300만엔(약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법 제18부는 지난 3월22일 「기사의 중요부분은 진실이 아니며 취재활동도 충분했다고 할 수 없다」고 기사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330만엔(약 3.300만원)의 지급과 동지 차례페이지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라고 명했다.

선데이매일은 동지 2002년 4월 21일호에서 「조직적 “가짜표시” 발각」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가 다이아몬드 감정서에 기재한 독자표시는 국내규정에도 못 미치는 기준이기 때문에, 판매업자가 실제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데 악용되는 반면 소비자는 부당하게 비싼 값으로 사도록 만든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각별한 신뢰관계가 없는 프리라이터가 갖고 온 기사를 게재하면서 충분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면취재조차 실시하지 않고 줄속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다」고 지적하고 「대형백화점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하는 등 원고의 신용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므로 손해회복을 위해서는 금전배상뿐만 아니라 사죄광고의 게재도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문협회보』, 2004년 4월 13일자)

□

영국 PCC, 언론이 기밀정보 입수를 위해 경찰에게 금전을 주는 관행 금지키로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기밀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신문이 경찰관에게 불법적으로 금전을 주는 관행의 금지를 위해 행동강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문에 대한 불만과 관련하여 신문명, 불만건수, 불만이 인정된 숫자 등을 일람표를 만들어 공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제안은 거부했다.

범죄나 피의자에 관한 비밀의 내부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금전을 지불한 기자, 편집자는 증회로 유죄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죄」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보도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찰관도 처벌된다.

PCC는 또 강령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신문 편집자의 PCC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신문협회보』, 2004년 3월 2일자)

□

나오미 캠벨, 사생활침해 소송 최종 승소 데일리 미러에 1심 승리, 2심 패소 뒤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이 5월 초 열린 영국의 대법원인 상원의 사생활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재판관들은 3 대 2로 런던 소재 데일리 미러지가 2001년 2월 캠벨의 약물용 문제를 보도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캠벨의 약물중독과 치료가 합법적 공공이익의 보도대상이라고 판결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상원 재판관들은 미러지가 재활센터를 나오는 사진까지 실으면서 약물중독에 관해 상세히 보도한 일은 캠벨의 사생활을 침해해 고통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이 자기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자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사생활 침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재판관 호프경(Lord Hope)은 밝혔다. 여남작 헤일(Baroness Hale)도 캠벨의 약물남용과 치료는 언론보도의 ‘합당한’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은 1심 재판의 피해보상액인 3,500파운드(약 750만원)를 다시 복원시켰다.

데일리 미러지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항소법원에서는 이겼었다. 항소법원은 신문사에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캠벨의 거짓 공적 발언을 보도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은 나아가 보도된 사진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공개된 거리에서였으며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러지는 EU인권법원에 이번 판결을 공소할 방침인데, EU 헌법은 제10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U법원은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어 연합 내 개인들로부터의 공소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다.

“오늘은 거짓말하고 약물에 중독된 프리마돈나에게는 매우 좋은 날이다. 캠벨이 언론과

케이크를 나눠먹고 크리스털 잔에 샴페인을 부어 마시며 부끄럼 없이 폭음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날이다.” 미러지 편집인 피어스 모건(Piers Morgan)은 성명에서 한탄하고 있다.(RCFP 홈페이지 5월 10일)

*<http://www.rcfp.org/news/2004/0510campbe.html> □

아이다호 대법원, 아동포르노 규제법 재확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자유 위반하지 않아

아이다호 대법원이 5월 21일 아동포르노를 규제하는 주법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자유를 위반한다는 법률청원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이다호 주 대 모튼(State of Idaho v. Morton) 사건의 판결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률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결국 헌법상의 권리를 위반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금지되는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제한을 가하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테나이에 사는 레이몬드 모튼(Raymond Morton)은 비영리적으로 성을 이용한 물건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자 이 법에 대한 법률청원을 제출했었다. 그는 이 법이 불법행위뿐 아니라 다수 법원의 판결로 합법화되어 있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3월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나, 그 상황 하에서 법률청원을 낼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 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있다.

웨이인 키드웰(Wayne Kidwell)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순하게 아동의 생식기만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비디오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자유 보호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아이다호의 법은 성적 희열을 목적으로 그러한 물건을 소지하는 일은 아동포르노 규제 범죄를 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할 만큼 앞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포르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또 다른 결정을 내린 주 항소법원의 2002년 9월 판결과 배치된다. 당시 항소법원은 어린아이의 나체를 단지 사진으로 찍거나 비디오 촬영하는 일의 금지는 헌법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2002년 판결은 법률의 다른 분야를 다뤘었다고 해석했다.(AP통신 5월 24일)

*<http://www.firstmendmentcenter.org/news.aspx?id=13398> □

축구영웅 베컴, 신문보도에 불만 전 비서와의 스캔들 보도에 “명백한 치욕”

영국의 축구영웅 데이비드 베컴은 5월 25일 자기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보도한 타블로이드 신문의 보도가 “명백한 치욕”이라고 비난했다. 이 잉글랜드팀 주장은 위성방송 BSkyB를 위시한 몇 언론을 보이콧하려 생각중인데, BSkyB는 그와의 사적 관계를 주장하는 전직 개인비서 레베카 루스(Rebecca Loos)를 인터뷰하는 대가로 15만 파운드(약 3억 2천만 원)를 지불했었다.

4월 그의 부정에 관한 얘기가 나온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말하면서 자기는 가정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연습 중인 사르데냐에서 BBC 라디오5 생방송과 인터뷰하면서 베컴은 신문들의 보도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나는 이미 두 신문과의 인터뷰

에서 나와 내 가족이 다뤄진 부분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현재 나는 좋은 사람이고 사랑하는 남편이며 아버지이기 때문이며, 바로 이 점이 내가 언론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베컴은 자기 아내에 관한 소문에 대해서도 몹시 화를 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는 언제나 해로운 것뿐이다. 또 내 아내를 나쁜 엄마라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일뿐이다.”

베컴이 BskyB 위성채널과는 아무런 경기 후 인터뷰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들도 있어왔다. 하지만 25일 베컴은 다시 이를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는 잉글랜드팀 주장으로서 팬들에게 말할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이 내가 운동하는 이유다.”

한편 타블로이드신문인 뉴스 오브 더 월드(News of the World)는 베컴과 전 비서 루스의 관계를 4월에 보도하면서 선정적 기사를 서로 먼저 보도하려는 언론사들 간 광란의 경쟁을 촉발시켰다. 이 신문은 루스에게 인터뷰 대가로 35만 파운드(약 7억 4천만 원)를 지급했는데, 그녀는 또 스카이 원(Sky One) 방송에도 출연해 인터뷰했다. 두 건의 인터뷰로 루스는 80만 파운드(약 16억 8천만 원)를 챙겼다고 한다.(가디언 5월 26일)

*<http://media.guardian.co.uk/site/story/0,14173,1224675,00.html> □

몬테네그로 수상과 명예훼손 소송 편집국장 피살

일단의 괴한들이 5월 28일 몬테네그로의 한 보수일간지의 편집국장을 총으로 사살했다고 조사를 맡은 판사와 신문사가 밝혔다. 암살자들은 포드고리차에 본사를 둔 일간지 단(Dan)의 편집국장인 두스코 요바노비치(Dusko Jovanovic)가 차에서 내려 신문사 본부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저격하는데 자동소총을 사용했다고 목격자들과 조사담당 판사인 라도미르 아바노비치(Radomir Ivanovic)가 말했다. 요바노비치 국장은 가슴과 머리에 총격을 받았다고 신문사는 설명했으며, 암살자들은 검은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 신문은 요즘 몇 가지 명예훼손 소송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해 UN 전범법원은 요바노비치 편집국장을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들의 신분을 노출했다고 고소했었다. 보수논객인 그는 몬테네그로의 보수 야당들과 가깝다고 간주됐다. 그는 현 수상인 밀로 듀카노비치가 이끄는 연립정권에 비판적 자세를 자주 취해왔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논평을 즉각 발표하지는 않았다. 듀카노비치 수상은 요바노비치 편집국장과 단지에 자기의 인권관련 처리문제 보도에 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법원의 청문회는 6월 중에 시작된다.(뉴스데이 5월 28일)

*<http://www.ejc.nl/mn/showresultnews.asp?RecordID=11195> □

스페인 통신, 럼스펠드에 오보 사과

스페인의 EFE 통신사는 6월 10일 미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에 대한 자사 배급기사에 오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6월 4일자 엑스페티카(Expatica)지에 실린 이 기사는 럼스펠드 장관이 올 여름 스페인이 테러리스트들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럼스펠드의 이 같은 발언은 즉각 스페인과 미국간 외교적 마찰을 야기했다. 파장이 일자 EFE 통신은 이날 럼스펠드의 말이 오역됐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럼스펠드 장관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관해 언급하면서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스페인과 많은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보아왔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엑스페티카 6월 11일) □

진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 검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4. 3. 25. 자 판결 (2002나73403)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2004년 3월 25일 국회의원 김일운 씨와 보좌관 장○○ 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 설계대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 이었고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 시공이 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취재팀은 객관적인 자료수집, 분석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보자의 의혹제기 등 일부에만 집착하여 부당한 압력이 있어서 불필요한 공사를 하였다는 식으로 속단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검토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송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도내용과 기자가 취재 중 지득한 사실 등을 비교하여 보건대 보도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고 이를 보도내용에 일부 반영하였더라도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문화방송이 2001년 8월 26일 21:00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중 ‘기막힌 청탁’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들이 지방 국도변 휴게소 사이의 이권다툼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압력성 청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자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개인간의 이권 다툼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러한 다툼에 국회의원 또는 그 보좌관이 관할관청에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입했는지 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국민 전체의 알 권리의 영역 하에 있는 공적인 사항이고,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여 그 진실성에 대한 믿음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0집, 222~232면 참조)

사 건	2002나7340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김일윤 2. 장○○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박성하, 오동석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 11. 7. 선고 2001가합14932
판결	
변 론 종 결	2004. 3. 4.
판 결 선 고	2004. 3.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피고의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8. 26.부터 2004.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의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보도시간 중 지역방송보도 이전에 화면 상단에 두줄로 “김일윤 의원, 장○○ 보좌관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별지1 정정보도문을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이를 보통빠르기로 낭독하라.

다. 만약 피고가 위 나항의 이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원고들에게 각 1일 2,0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들에게 각 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2001. 8.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이 사건 판결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의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9시 정각)에서 화면 상단에는 두줄로 “김일윤 의원, 장○○ 보좌관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2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하며, (3) 만약

위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원고들에게 각 1일 금 5천만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원고들에게 각 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2001. 8.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이 사건 판결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의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9시 정각)에서 화면 상단에는 두줄로 “김일윤 의원, 장○○ 보좌관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하며, (3) 만약 위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원고들에게 각 1일 금 5천만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42, 갑 2, 3,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 3, 4, 5, 7,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여○○의 증언(단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제1심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원의 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여○○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김일윤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학교법인 경흥학원,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이사장이며,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제13대,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4선의원으로서 제15대 국회 당시인 1998. 8.부터 2000. 5.까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원고 장○○는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2년 교통안전공단 연구부 연구원을 거쳐 1985. 8.부터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활동하여 왔는데, 1998. 8.부터는 건교위원장인 원고 김일윤의 입법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방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을 운영하고 있다.

나. 사건의 발생경위 및 취재의 경과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92. 5. 14.부터 1993. 1. 8.까지 사이에 기존의 2차선이던 일죽과 장호원간 국도 38호선의 4차선으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설계하고, 1993. 9. 21.부터 1998. 12. 31.까지 이를 시공하였는데, 위와 같은 국도확장 및 포장공사의 설계시에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459-1 앞 부분부터 장호원 방향으로 약 280m 떨어진 대송마을 입구까지 사이에 국도 본선도로와 단차(노면의 높이차이)가 있는 부체도로(측도)를 설치하고, 본선도로와 부체도로 사이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

이 국도에 인접하여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그 인근에 주민들의 농지가 있어 위 농지경작의 편의를 위한 농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부체도로를 설치하되, 위 부체도로와 국도본선 간에 마을 차량 및 농기계 등이 무질서하게 진출입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국도의 교통흐름에도 심한 장애가 있을 것이 예상되어 이를 막기 위하여 위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2) 소외 최○○, 장○○은 1996. 2. 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와 같이 부체도로 및 가드레일이 설치될 예정지에 인접한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459-1에서 근린생활시설(식당) 및 주유소(이하 위 식당과 주유소를 합하여 편의상 당시 사용한 상호를 따서 ‘○○휴게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 송천리 466-4, 461-4, 578-12 등 3필지에 관하여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1996. 3. 13. 그 허가를 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 ○○휴게소로의 진입은 국도가 아니라 부체도로를 이용하고, ○○휴게소에서의 진출은 국도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최○○ 등은 그후 위 도로점용허가의 조건과 달리 차량이 국도 본선으로부터 위 ○○휴게소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국도와 ○○휴게소 사이의 부체도로 설치 예정 부지 일부를 매립, 포장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를 알게 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97. 3. 5. 위 최○○에게 ‘허가조건대로 진출로 1개소만 접속도로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도본선에 접속, 사용하고 허가부지 외 구간에 설치한 진입로상의 포장구간은 조속히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3) 한편 위 국도를 따라 위 ○○휴게소로부터 일죽쪽으로 약 700m쯤

떨어진 곳에는 소외 박○○이 운영하던 ‘△△휴게소’가 위 ○○휴게소의 설치 이전부터 휴게소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휴게소설치의 관련규정이던 ‘도로변휴게소관리지침’상 휴게소간에는 10km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위 ○○휴게소는 위 △△휴게소와 위 규정상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식 휴게소 허가를 받지 못하고 위와 같이 일반 일반음식점 및 매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던 것이다.

(4) 위 부체도로 및 가드레일 설치예정지 인근의 주민 일부인 소외 황○○ 외 144인은 1997. 4. 17. 관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국도 본선도로와 위 부체도로 사이의 단차를 없애고 위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7. 5.경 ‘일죽-장호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시 마을차량 및 농기계 등의 무질서한 본선 진출입 등으로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억제하고자 부체도로와 본선 도로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단차조정은 불가하고, 마을 및 인근지의 진출입은 신호등이 계획되어 있는 지점에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부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서울, 안성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5) 위 ○○휴게소를 운영하던 최○○ 외 3인은 다시 1997. 10. 2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7. 12. 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현지조사를 한 결과 위 부체도로는 당초 설계 당시 송천리 마을 주민 이용차량이 부체도로를 이용하여 서울, 안성 방향으로 본선에 진입토록 설계되어 있고, ○○휴게

소에서 장호원측 100-120m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버스가 본선에 진입하려면 상당거리의 가속차선이 필요하므로 (일반차량의) 휴게소로의 직접 진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휴게소 진입로를 낼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 수반될 수 있어 휴게소 진입은 부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체도로 폐지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체도로를 본선과 같이 높게 하는 방안도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추가매입을 수반하여야 하고 상대 민원발생의 우려성 등으로 타당치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 휴게소 설치시 도로점용허가조건에도 부체도로를 이용하도록 허가되어 있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부체도로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6) 그후에도 위 송천리 마을주민 일부(소외 조○○ 외 50인)가 다시 1998. 7. 안성시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안성시장은 1998. 7. 6. 위 민원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첩하면서 본 사항이 지역주민의 생계 및 정주의지와 결부된 중요사안임을 감안하여 주민요망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고 첨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8. 8. 3. 안성시장에게 위 부체도로 건설의 취소를 원하는 지역주민(○○휴게소, 주유소, 식당, 인근경작자 등)과 안성시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부체도로 건설을 취소하겠으니 부체도로 준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안성시의 의견을 회신하여 달라고 회답하였다. 이에 안성시장은 관할 일죽면장에게 그 문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일죽면장은 1998. 9. 2. 안성시장에게 '주민의견이 위 부체도로의 노면을 높여 국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 향후 지역발전을 도모하되, 부체도로를 높이면 국도와 부체도로의 구분이 없어 부체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사이에 가드레일은 설치하여 주민통행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이를 받은 안성시장은 1998. 9. 8.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 부체도로는 계획된 높이를 올려 본선도로와 동일한 높이로 시공하되, 가드레일은 주민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대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7) 한편 ○○휴게소의 운영자인 위 최○○는 1998. 3. 30. 각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위 국도의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측에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의 민원제기{위(5)항 기재}를 이유로 이 사건 부체도로 및 가드레일 공사를 보류해 달라고 부탁하여 1997. 10.경부터 공사가 보류되어 왔는데 1998. 5. 1.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공사를 설계대로 진행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협조하겠다는 것이었다.

(8) 위 ○○휴게소의 영업권을 양수받은 소외 권○○은 인근주민들 50인의 대표로서 1998. 12.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1998. 8. 1. '도로변휴게소관리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안성시장에게는 1998. 12. 1. 휴게소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는 1998. 12. 2. 휴게소허가에 필요한 진출입용 도로의 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체도로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9. 1.경 '부체도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상태이고, 가드레일은 현재 시공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뒤에서 보듯

이 1998. 12. 28.까지 가드레일의 설치도 완료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착오는 조사와 회신의 시간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도 개통 전에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도본선에서 위 ○○휴게소로 직접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과 같이 민원신청인 부담으로 가감속차선 뒤로 부체도로를 이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감속차선과 부체도로 사이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정확한 의미는 분명치 않으나 일단현재의 부체도로 뒤로 민원신청인 부담으로 민원신청인 소유 토지로 부체도로를 옮겨서 신 부체도로와 현 부체도로 사이로 가드레일을 옮기면 사실상 ○○휴게소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가드레일을 철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인 듯 함)로 회신하였다.

(9) 한편 위 ○○휴게소와 영업상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휴게소측은 1997년과 1998년에 이 사건 부체도로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예정대로 시행하여 달라는 민원을 3회 정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기하였다.

(10) 그러던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98. 12. 12.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휴게소 앞 부체도로 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도에서 위 ○○휴게소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11) 위 ○○휴게소측은 그후 위 (8)항 기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 내용대로 하면 휴게소로의 진출입로 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하여 1999. 8. 19.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산하기관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위 송천리 산 43-7 외 20필지(점용면적 2,880m²)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변경신청을 내었는데, 위 신청은 그후 여러 관련 기

관 사이의 의견교환 등을 거쳐 결국 2001. 3. 20.경 반려되었다.

(12) 위 ○○휴게소의 실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소외 전○○은 2001. 8. 14.경 피고 방송사 보도본부 카메라출동팀에 <권력형 비리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라는 제목으로, 위 ○○휴게소측과 마을 주민들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안성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을 수 차례 제기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원인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김모의원과 그 보좌관이 수원국도유지사무소 담당자 및 소장에게 수 차례 이 사건 부체도로 및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그 철거를 막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13) 이에, 피고 소속 기자인 소외 여○○은 위 제보자인 위 전○○을 만나 그 주장 사실을 듣고, 위 (8)항 기재 민원제기서류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문을 교부받아 이를 검토한 다음 일응 이를 보도 아이템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2001. 8. 16. 가드레일 설치 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었던 소외 이○○을 위 전○○을 대동한 상태에서 만나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위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경위 등 문제에 관하여 취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은 위 여○○와 전○○의 추궁성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당시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분명히 막아야 할(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할) 법적인 사유가 있었고, 가드레일 설치가 불법을 했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 ‘보좌관(원고 장○○)이 양쪽에 다툼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원만하게 해결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말도 하였다. 그러나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당시에 국회 건교위 소속 ○○○ 의원이 ○○휴게소측의 입장을 대변하여 가드레일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그리하여 담당실무자에게 해결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하였고 ○의원에게는 3개월 정도면 양측의 입장을 잘 조절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후에 바로 전출이 되는 바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지 못하여 ○의원측에 미안했다.’ ‘철거문제를 검토해보기는 하였지만 애초의 설치가 불필요하거나 불법이었던 것은 아니다’ ‘보좌관으로부터는 국회에 오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 그해 가을에 정기국회때 국회에 갈 일이 있어 위원장실을 들어서 보좌관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보좌관을 만났을 때 위원장님 관심사안이라는 투로 이야기한 것 같고, 솔직히 그 말에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일운 의원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는 것이었다.

위 취재 당시 여○○는 ○○휴게소측의 입장을 대변하여 ○○○ 의원이 그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이 가드레일 문제의 해결방안까지 제시하고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에 관하여는 아무런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김일운 의원측의 청탁 때문에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이 설치되었고 그 설치 또한 불필요하거나 3개월후에는 철거할 방침이었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질문을 수회 하였고, 그 질문에 전○○ 역시 가세하여 위 이○○을 추궁하였으나, 이○○은 가드레일의 설치는 당시 그럴법적인 사유가 있어서 된 것이기는 한데, 이 문제가 수년전의 일이라 가드레일의 설치근거와 설치이유, 지속적인 존치이유 등의 점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관계기관에 문의하고 관련서류들을 잘 검토하

여 취재해 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14) 위 여○○는 한편, 마을 주민 신경철, ○○휴게소의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한○○ 등을 만나 민원제기 이유 등을 취재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에 이 사건에 관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민원서류만을 교부받았고, 건설교통부의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을 열람하였다.

(15) 여○○는 2001. 8. 22.경 원고 장○○를 만나 인터뷰하였는데, 당시 원고 장○○는 이 사건 민원과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이를 가지고 와서 위 여○○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는데, 그 요지는 ‘1998. 9.경 △△ 휴게소의 박○○ 사장이 찾아와 김일윤 위원장과 같은 경주 출신이고 학교 동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가 원래의 설계와 규정대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련 서류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자신(원고 장○○)이 관련서류들을 검토하여 보니 원래부터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이 설치되기로 설계되어 있는데, ○○휴게소측은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곳에 휴게소를 설치하였고, 설치당시 받은 도로점용허가도 위반하여 부체도로가 설치될 부분을 불법으로 포장하여 국도에서 위 휴게소로 직접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휴게소 측이 수회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안성시 등에 내었으나 모두 그 민원대로 하면 국도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사안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대

립되어 있어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규정에 어긋나게 일을 처리하면 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규정대로 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러한 의견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인 이○○에게 한두 차례 전화로 이야기하였고, 이○○이 국회에 온 기회에 김일윤 위원장실로 찾아온 자리에서도 다른 이야기와 함께 이 사건은 규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규정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관하여는 원래의 설계와 계획대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간 것 같다. 그에 대하여 위 이○○도 원칙과 규정에 맞게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다. 위 인터뷰 당시 원고 장○○는 위 여○○에게 앞서 (1)항부터 (7)항까지 사이에서 본 바와 같은 1996년부터 1998년 말까지의 ○○휴게소측의 도로점용허가조건의 위반과 여러 관련기관에 대한 민원제기에 따른 기각회신내용 및 위 권○○이 서울국토관리청에 제출한 각서내용 등을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그 기재문구를 일일이 읽어주는 식으로 확인시켜주고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다만 위 (6)항 기재의 서울국토관리청장과 안성시장 사이의 협의내용에 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소측이 안성시장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등 이야기가 있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갔다}.

(16) 그 후, 위 여○○는 원고 김일윤을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날 두 차례 만나기를 요청했으나, 사무실직원은 원고 김일윤이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 지방에 가 있다고 대답하고, 원고 장○○는 전화상으로 원고 김일윤이 해외에 나가 있다고 대답하자, 원고 김일윤이 기자와의 접견을 회피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김일윤에 대한 취재시도

를 그만두고, 방송 1일 전인 2001. 8. 25. 원고 장○○에게 보도 초안 내용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그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장○○는 보도초안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몇 군데 문구를 지적하면서 ‘○○휴게소와 △△휴게소 양쪽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과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했을 뿐이고, 원고 김일윤 의원은 이 사건 민원 내용과 △△휴게소의 박○○ 사장을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은 애초에 ○○휴게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가드레일은 규정대로 설치되었을 뿐인데 이런 내용으로 보도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보도 및 그 내용

피고는, 위와 같은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2001. 8. 26. 일요일 오후 9시부터 방영된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의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카메라출동’코너에서 약 4분간에 걸쳐 별지3 보도내용과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가. 텔레비전 방송 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함에는

당해 보도가 방영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성향이 어떠하며, 또 일반인들이 그 프로그램의 성향을 어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하는 점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으나,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보도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인상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살펴건대, 이 사건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카메라출동’코너는 일반적으로 사회비리문제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인들에게도 그 코너에 방송되는 내용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회비리문제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보도 첫머리에 ‘기막힌 청탁’이라는 자막을 화면 우측 상단에 보여주면서 앵커가 리드멘트로서 “여야 정치인들의 압력성 청탁 관행은 인천공항 유희지 개발 같은 덩치 큰 사업뿐만 아니라 조그만 이권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카메라출동은 어느 지방 국도변 휴게소가 문을 닫게 된 사연을 취재하다가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개입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라고 말하여 보도 첫머리 부분에 의혹제기 수준을 벗어난 단정적인 내용의 자막과 보도를 함께 내보낸 점, 그리고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문구의 연결방법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채도로와 가드레일이 ○○휴게소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계획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건설을 담당하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3개월 후에는 철거할 방침으

로 일단 설치하였다고 보도한 후 그와 같이 수개월후 철거될 불필요한 도로와 가드레일이 설치된 원인을 쫓다가 원고들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며, 원고들이 김일윤 의원의 학교동문인 다른 휴게소의 민원을 받아 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위와 같이 철거될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 공사를 하였다는 식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점, 그리고 보도에서 원고들의 이름을 자막으로 내보내거나 기자가 읽는 방법으로 원고들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는 이를 시청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국회의원과 보좌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지방 국도변 휴게소 사이의 이권다툼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부당한 압력성 청탁을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이 어쩔 수 없이 3개월 후에는 철거할 방침하에 불필요하게 가드레일과 농로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휴게소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라는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방송 보도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도의 초점은 사인들간의 민원이 대립된 사안에 공인인 국회의원이거나 그 보좌관이 어떤 측면이든(원래의 규정이나 설계대로 해 달라고 한 것이든, 그것과 달리 해달라고 한 것이든) 개입하였다는 점일 뿐이고, 원고들이 부당한 압력성 청탁을 하여서 불필요하게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이 설치되게 하였다는 점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실시한 이유와 같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보도내용을 보면 그 보도는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함이 합당할 뿐 아니라, 취재기자인 여○○의 제1심에서의 증언취지

역시 동인은 ‘서울국토관리청장이 ○○휴게소와 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민원으로 인하여 원래 계획되었던 부체도로 및 가드레일의 설치를 실행할지에 관하여 심각히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압력성 청탁을 받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개월 후에는 철거할 방침하에, 일단 가드레일을 설치하였다’는 기본적인 인식 위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려고 의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그에 따라 동인은 ○○휴게소측의 민원을 대변하였다는 ○○○ 의원의 개입부분에 관하여는 보도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하듯이 어떤 측면이든 공인의 민원개입문제만 보도하려 하였다면 위 ○○○ 의원측의 개입도 취재, 보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리하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1) 언론기관의 방송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

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한다.

(2)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개인간의 이권에 관한 다툼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러한 이권 다툼에 국가기관인 국회의원 또는 그 보좌관이 관할관청에 부당한 압력성 청탁을 행사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일처리를 잘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은 그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일응 피고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우선 이 사건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려면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가 불필요하고 또 철거도 예정되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설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텐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1호증의 1의 기재와 앞서 본 증인 여○○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 있어서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가 원래 1993년의 설계당시부터 설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도 ‘1998년’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계획이 생긴 것으로 보도하여 그 설계나 계획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보도를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애초에 위와 같이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의 ○○휴게소가 1996년에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도로점용허가내용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고, 수차에 걸친 그쪽의 민원제기가 여러 기관에 의하여 모두 기각되었으며, ○○휴게소의 영업주가 1998. 5. 1. 이후에는 부체도로와 가드레일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다는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 장○○가 △△휴게소측으로부터 이 사건 민원제기를 받고 내용을 검토한 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에게 이야기한 주내용은 관계인들간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이므로 기존의 규정과 설계에 맞게 일을 처리함이 좋겠다는 내용으로서, 기존의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여 달라는 ○○휴게소측의 입장을 대변한 ○○○ 의원측의 청탁과는 달리,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공사를 한 것은, 당시의 상황이 그것의 설치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설계나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거나, 설계가 있다 하더라도 위 국토관리청이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여 이를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식의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애초부터 설계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 국토관리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설치할 법적인 의무가 있었고, 게다가 위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말아 달라는 ○○휴게소와 일부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기관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비슷한 이유로 기각되었고, 도로준공기한이 임박한 상황이었어서, 기존의 설계와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당하고(특히 앞서 제1, 가의 (6)항 기재와 같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1998. 9.경에 안성시장에게 안성시와 주민들이 원하면 가드레일의 설치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안성시가 주민의견을 조회하여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온 마당에, 설계와 달리 이 사건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 장○○가 그 문제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장○○가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위 부채도로와 가드레일의 공사가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이 이 사건 부채도로와 가드레일을 이해관계인간의 원만한 의결조절 후에 해결방안을 찾아 향후 철거를 시도할 계획이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 의원의 청탁이 있었던 데다가 ○○휴게소측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고려하는 등의 별도의 배려차원에서 안을 낸 것에 불과하고, 위 가드레일의 철거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거나, 애초부터 불필요한 것을 건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채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가 불필요하고 또 철거도 예정되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설치되었다는 이 사건 보도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진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는 않더라도 피고 입장에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만약 피고가 그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비록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권익을 양보시켜 피고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

일반적으로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방송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그 방송 등의 자료가 믿을 만 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그 방송 등의 자료가 믿을 만 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재기자가 취재한 자료를 정확히 인식하고 분석하였는지, 추가적인 자료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조사 및 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보도가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는 피고 방송사의 저녁시간 주 뉴스시간내의 사회비리고발 프로그램으로서 그날 그날의 뉴스를 보도하는 경우와 달리 일반인들의 제보를 받아 상당기간 취재를 한 후에 보도하는 프로그램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도내용이 보도시점을 기준으로 약 3년전의 일에 관한 것인 점과 위 프로그램의 영향력이나 보도내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한 보도대상자의 명예훼손피해의 정도 역시 상당히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는 그 방송의 신속성의 요청보다는 방송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보도내용을 취재한 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송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여○○는 우선 이○○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동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수년전의 일이라 이 사건 부채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이유와 근거, 존치이유 등 여○○가 질문하는 내용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관계기관을 조사하고 관련서류들을 잘 검토하여 취재해 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그 문제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과정을 충실하게 거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 장○○

로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계획이 이미 1993년의 국도확장 설계단계부터 설계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과 그후의 ○○휴게소의 영업시작 및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의 도로점용허가조건 위반과 시정명령, 여러 관련기관에의 민원제기 및 각 기각회신내용, ○○휴게소의 영업주(권○○)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각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관련서류도 상당수 제시받았으므로, 이미 그 단계에서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공사가 양측의 민원제기가 있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원래의 규정과 설계대로 시공된 것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상당부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자신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 원고들의 부당한 압력행사 여부 및 압력 행사와 공사시공의 연관성의 문제가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를 회의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 당사자에 대한 취재나 필요한 추가자료들을 더 수집,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앞에서 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안성시장 사이에 오간 위 가드레일의 설치 필요성에 관한 주민의견회신 등의 자료를 포함한 민원회신자료들과 애초의 설계도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근거에 관한 규정 등을 보다 충실히 수집하여 검토하였다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 원래의 설계대로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 시공이 된 사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여○○ 등 취재팀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수집, 분석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보자인 전○○의 의혹제기와 이○○, 장○○의 진술 중 일부(동인들이 만나 이 문제에 관

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로 인하여 이○○이 다소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부분)에만 집착하여, 부당한 압력이 있어서, 이○○이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공사를 하였다는 식으로 속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여○○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검토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송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이고 보도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안인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언론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도내용과 기자가 취재 중 지득한 사실 등을 비교하여 보건대 보도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보도의 초점이 사인들간의 민원이 대립된 사안에 공인인 국회의원이거나 그 보좌관이 어떤 측면이든 개입하였다는 점일 뿐이고, 그 부분은 관련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이 된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제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을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전에 보도 초안 내용을 원고 장○○에게 팩스로 보내어 그의 반론 또는 의견을 묻는 등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을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도 지적하나, 피해자에게 반론의 제기 기회를 주고 이를 보도내용에 일부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

였고,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도 없는 이상,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
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
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보도의 내용 및 명예훼손의 정
도, 보도의 방법과 분량, 보도가 포함된 뉴스프로그램의 영향력의 정도, 피고
의 사회적인 지위, 원고들의 사회적인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나. 정정보도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고 인정되
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정정보도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방송되는 엠비씨 텔
레비전(MBC-TV)의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보도시간 중 지역방송보도
이전에 화면 상단에 두줄로 "김일윤 의원, 장○○ 보좌관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별지1 정정보도문
을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이를 보통빠르기로 낭독

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 간접강제

나아가 보건대 다른 강제집행의 수단이 없는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그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채무명의를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들의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미리 만약 피고가 위 정정보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정정보도 이행완료일까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일 각 금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동시에 명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일인 2001. 8. 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4.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1 정정보도문을 앞서 인정한 방법으로 보도할 의무 및 그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간접강제로서 원고들에게 그 의무이행기간 만료 다음날

부터 의무이행일까지 1일 각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피고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찬 _____

 판사 김시철 _____

 판사 곽동우 _____

별지1

정 정 보 도 문

본 방송은 2001년 8월 26일 9시 ‘뉴스데스크’ 내 ‘카메라출동’ 프로그램에서 “기막힌 청탁”이라는 제목하에, 어느 지방 국도변 휴게소가 3년째 문을 닫게 된 원인이 국도확장공사가 진행중이던 ‘98년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김일윤 의원과 그의 보좌관 장○○씨가 위 휴게소와 이해가 상반되는 다른 휴게소측의 부탁을 받아 관계 당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휴게소 앞에 진입을 막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었기 때문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문제의 휴게소 진입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지난 93년 △△-장호원간 국도확장공사의 설계당시부터 국도와 그 옆의 농로를 구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건설되었던 것으로서, 위 두 사람의 부정한 압력 때문에 건설된 것은 아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2004.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끝.

별지2

정정보도문 (원고들의 청구내용)

본 방송은 2001년 8월 26일 '9시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 프로그램에서 "기막힌 청탁" 제하로, 어느 지방 국도변 휴게소가 3년째 문을 닫게 된 원인이 국도확장공사가 진행중이던 '98년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김일윤 한나라당 의원과 그의 보좌관 장○○씨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문제의 휴게소 진입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지난 92년 국도 38번 △△-장호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발주 설계 당시부터 신설 4차로와 부체도로 사이에 높이 차가 있어 부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농기구와 통행인들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당초부터 설계되어 그대로 시공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일윤 의원이나 장○○ 입법보좌관이 관계 당국에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카메라출동' 방송내용을 정정합니다.

문제의 휴게소측은 1996. 3.경 근린생활시설 및 주유소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뿐인데 건축물을 완공한 후에 확장공사중인 국도의 접속부분을 불법 매립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토록 하여 휴게소 영업을 하다가 1997. 3. 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1997. 12. 22. 진입로 설치 및 가드레일의 철거는 불가하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문제의 휴게소 사장은 1998. 3. 30. 가드레일 설치를 포함한 국도

확장공사 진행을 1998. 5. 1.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공사를 설계대로 진행하는데 이의를 제기키 않고 협조해드릴 것을 각서한다는 각서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앞으로 제출한 바도 있는데도 문제의 휴게소측이 1998. 5. 1. 이후에도 불법 진입로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도로확장건설이 지연되자, 인근 △△휴게소는 1998. 9.경 관계 법령의 준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오므로 장○○ 입법보좌관은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법령과 원칙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뿐이며, 그 과정에서 압력성 청탁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인근 △△휴게소 사장과 김일윤 의원은 학교 동문이 아니며 김의원은 △△휴게소 사장을 만나 본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2001년 12월 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김일윤 의원과 장○○ 입법보좌관에게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당초의 본 방송내용을 정정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 끝 -

별지3

보 도 내 용 생 략 - 편 집 자 주

몽타주사진은 그 특성상 의견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으로 기본법 제5조 1항(의견발표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

해당조문: 기본법 제5조 1항, 민법 제823조, 1004조, 조형예술 및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 제22조, 23조

판결요지

1. 몽타주 사진을 전체적으로 풍자를 나타내는 의견의 진술로 보고 기본법 제5조 1항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몽타주 사진에 있어서 특히 그 개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행하는 고찰방법”을 사용하여 그 허용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진을 공표할 때에 조형예술 및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 제23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는 풍자를 나타내는 사진을 발간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3. 과장, 비틀어짐, 왜곡으로 포장된 풍자의 고유성으로 말미암아, 풍자는 예술개념이 아닌 의견의 진술로 본다.

연방대법원 2003년 9월 30일자 판결 -VI ZR 89/02
(함부르크 지방상급법원)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00년도에 발행한 인쇄물의 여러 면에 걸쳐 공표한 몽타주 사진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그 당시 독일 텔레콤 협회의 의장인 원고의 모습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나타냈는데, 원고의 머리 부분은 원고의 사진에서 따오고, 신체는 전혀 낯선 것이었다. 원고는 자신의 얼굴이 본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더 길게 나타났고, 뺨과 턱 부분은 살이 더 오른 것으로, 목은 더욱 짧고 두텁게, 피부색은 훨씬 더 붉게 표현된 것을 수용하고자 하지 않는다.

원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몽타주 사진의 전파 금지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제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유

I.

제2심 법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반적 인격권(기본법 제1조 1항, 제2조 1항)의 위법한 침해를 이유로 민법 제823조 1항, 제1004조 제1항 2문을 적용하여 풍자를 나타내는 사진 전파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갖는다. 몽타주 사진이 예술작품에 해당한다고 볼지라도, 일반적 인격권은 예

술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고의 머리부분이 불안정한 조작에 의해 현저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고, 보통의 독자들은 원고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변경은 풍자적인 수단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견해에 따라서 볼 때에도 독자적인 풍자를 나타내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풍자 내용의 핵심과 그것을 포장한 것 간의 경계를 고려해 볼 때, 사진은 원고의 외모에 대한 허위의 것이며, 이는 원고의 일반적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한편으로는 몽타주 사진에 있어서 왜곡된 풍자적인 “T”자 형태의 모습과, 다른 한편으로는 풍자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내용이 없이 불안정하게 조작된 원고의 머리의 구성부분을 개별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그 구성부분이 개별적인 고찰을 가능하게 하므로 부분적으로는 보호받고 있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기술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원고의 머리 사진은 본래의 것으로 했어야만 했고, 이것이 몽타주 사진의 전체의 풍자적인 내용으로 인해 바뀌지 않았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침해는 이익형량을 할 때에 예술의 자유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 피고의 이익보다 더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초상사진이 “실제와 같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고가 가지는 이익은, 그 사진이 실제와 같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불러 일으킬수록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한다.

II.

위에 기술한 제2심 법원의 견해는 제3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문제가 된 몽타주 사진의 전파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민법 제823조, 제1004조에 의한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에 의해서도 또한 조형예술 및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 제22조의 침해를 이유로도 행사할 수 없다. 왜냐 하면 몽타주 사진이 풍자를 나타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는 기본법 제5조 1항 1문에 의한 의견의 진술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2심 법원이 본 바와 같이, 몽타주 사진이 예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풍자는 사실 예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풍자가 다 예술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공표할 때에 풍자를 나타내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는 상황만으로 기본법 제5조 3항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BVerfGE 86 S.1[9] = AfP 1992 S.133; BVerfG, NJW 2002 S.3767; 다른 견해 Gounalakis, NJW 1995 S.809 [813], 캐리커처 및 풍자는 원칙적으로 예술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위 내에 들어 있다). 왜곡, 비틀어 짐, 과장을 본질로 하는 풍자는, 예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의견을 진술할 때에도 물론 이용된다(BVerfGE 86 S.1 [9]). 제2심 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몽타주 사진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풍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기본법 제5조 1항 1문에 의거한 의견의 진술에 속하며 그 보호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참조: BGHZ 143 S.199[208]).

의견의 자유는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 제5조 2항의 제한을 받는다. 제2심 법원이 민법 제823조, 제1004조, 조형예술 및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 2항을 동시에 고려하여 근거로 삼고 있는 일반적 인격권이 이 한계에 속한다(최근에 BVerfG, NJW 2003, S.1855[1856]).

원고의 머리사진을 변형시켜 만든 몽타주 사진을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이 문제가

되었다(인격권의 특별 형태로서 조형예술 및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 제22조에 관하여 1985. 1. 22일자 판결 -VI ZR 28/83, VersR 1985 S.391[392] 및 1993. 10. 12일자 판결 -VI ZR 23/93, NJW 1994 S.124[125] -Greenpeace 참조). 원고의 머리사진을 이용한 이와 같은 몽타주는 왜곡의 정도를 고려할 것 없이 조형예술 및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 제22조의 의미에 있는 사진에 해당된다.

원고의 동의 없이 사진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공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고는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원고의 동의는 조형예술 및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 제23조 1항 1호에 따라 필요 없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풍자를 나타내는 사진을 공표할 때에도 해당되므로(Loeffler/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4. Aufl. 2000, kap.43, Rdn 16), 이의가 제기된 몽타주 사진도 이에 포함된다. 이 몽타주 사진은 일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즉 독일 텔레콤 협회의 상황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에 관하여 문자로 보도를 하고 풍자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편집한 것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기업은 그 규모 때문에 인지도가 높고, 오래 전부터 두터운 고객층에 대한 독점적 위치에 있어 많은 참가자에 대하여 “국민주식”에의 동참을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익이 형성되었다. 시대의 이와 같은 상황에 원고를 연결시키는 것은 의장인 당시의 원고의 위치로 볼 때 타당하다.

조형예술 및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 제23조 1항 1호에 의한 제한은, 사진이 전파됨으로써 동법 제23조 2항의 초상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지라도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의 사안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조형예술 및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 제22조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에 포함되는 초상권자의 일반적 인격권의 가치를 상대방의 권리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권리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는지를 정하는 방법인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BVerfG 2001 S.1921[1923]; 1993. 10월 12일자 판결). 이 경우에 개별적 사례에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이익 형량이 행해질 수 있다. 왜냐 하면 테두리법으로서 인격권의 특성 때문에, 그 범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형량하여 정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BVerfGE 101 S.361[386] = AfP 2000 S.76; BVerfG, NJW 2002 S.3767[3768]; 1993년 10월 12일자 판결). 따라서 원고의 일반적 인격권이 피고가 문제가 된 공표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권리 즉 기본법 제5조 1항 1문의 의견의 자유에 속하는 풍자를 나타내는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제2심법원은 몽타주 사진이 기본법 제5조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원고의 사진의 변형이 풍자에 고유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고의 인격권이 그가 수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침해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제2심 법원이 내세웠던 출발점이, 풍자에 대해 법률적인 평가를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표현의 본래의 내용과 풍자를 나타내는 것과의 분리를 함으로써 풍자의 내용을 심사한다는 것인데, 이는 타당하다(BGHZ 143 S.199[209], m.w.N.). 표현된 것의 본래 내용과 이에 대한 포장은 풍자가 당사자에 대한 멸시를 널리 알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검토할 수 있다.

제2심 법원은, 평균적인 독자는 사진을 첨가된 문자와 연관시켜 보므로 원고가 스스로 문 제점을 안고 있고, 그가 운영하는 기업이 심각하게 위협에 처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몽타주 사진이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판단으로 인해 당해사진이 의장으로서의 원고의 활동에 부정적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보았다. 제2심 법원은 이러한 진 술의 핵심은 허용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진술의 핵심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2심 법원이 근본적으로 몽타주 사진에 있어서 풍자적인 포장을, 표현하고자 한 핵심으로 부터 위와 같이 구분해 낸 것은 타당하다. 원고의 본래의 사진을 가지고 “불안정한 조작”을 한 풍자에 있어서, 원고의 보호받는 영역이 방치되고 있다는 제2심의 견해에 대해서는 심 각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제2심 법원은 “불안정한 조작”이라는 개념을 여러 번 사용하 면서, 편견 없는 독자가 보기에는 조작이며, 원고 얼굴의 2분의 1을 변형하여, 다른 사람의 앓아 있는 모습에 원고 얼굴을 접합 시켜, 부정적이고 실제의 모습에 맞지 않는 효과를 나 타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이해했다. 제3심 법원이 보여 주고자 하는 바와 같이, 독자들이 보기에 원고의 얼굴에 관한 것인 한, 사진은 실제와 같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각에 서 볼 때에 몽타주 사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제2심 법원은 보통의 독자라면 이는 몽타주 사진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찌그러진 거대한 “T”자 형태로 사진을 찍도록 허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독자가 이러한 몽타주 사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본래의 사진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제2심 법원은 이미 그 기대 한계를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제2심 법원이 몽타주 사 진을 허위의 사실의 주장으로 보고, 이에 대해 행한 -즉 원고가 몽타주 사진에서처럼 그렇 게 보인다-고 한 것은 이미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2심 법원은 원고의 얼굴의 변형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독자만이 원 고의 본래 사진과 비교해 볼 때에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한 것이므로, 여러 면에서 볼 때에 “불안정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그 변형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정도의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이를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인 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서는 몽타주 사진이 그 특성 때문에 풍자를 나타내는 의견의 진술 에 속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기본법 제5조 1항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 절대적으로 인격권 을 침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변형이 독자가 보기에 풍자적인 것이 아닌 원고에 대한 부정적이며 본래의 사진으로 생 각한다는 근거를 들어, 제2심 법원은 위의 것을 부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몽타주 사진에 대 한 전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풍자를 나타내는 포장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해 그 의미를 오해하였다.

제2심 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몽타주 사진에서의 원고의 얼굴부분의 변형은 풍자를 나타내 는 것이 그 변형에서 찾아질 수 있는 때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풍자에 대한 보호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유익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고찰방법은 몽타주 사진의 모든 부분이 풍자를 나타내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이는 풍자의 보호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초월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동의할 수 없고, 풍자를 나타내는 표현은 기본법 제5조 1항의 보호범위에 들어 있어, 표현의 핵심에서의 풍자를 나타내는 표현은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제2심 법원은, 분명히 풍자를 나타내는 표현은 보통으로 표현된 것의 핵심을 평가할 때에 적용되는 검토기준보다 훨씬 약한 검열기준에 놓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풍자의 본질은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낮선 것이기 때문이다(BVerfGE 75 S.369[378]; BGHZ 143 S.199[210f.]).

풍자가 문자로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진지하지 못하고, 위트를 통해 특이한 언어로 나타나 그 풍자가 독자의 주위를 끌어 웃음으로 끌고 가고자 하기 때문에, 몽타주 사진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눈에 띄게”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시선을 잡고자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독자가 볼 때에 원고를 웃기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단지 눈에 띄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물론 사진이 본래의 것과 완전히 일치하고, 시각적으로도 가능한 한 호감이 가는 사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문자로 하는 풍자의 경우에 좋은 취향 및 이의 없는 언어사용의 경계를 넘어서도 되는데, 이 때에는 평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BVerfGE 75 S. 369[377] = AfP 1987 S.667; BGHZ 143 S.199[210f.]). 피초상권자는 위와 같은 몽타주 사진이 캐리커처 되고, 가능한 한 질적으로 나쁜 표현에 대하여 이것이 인신공격 또 모욕과 같은 허용되지 않는 범질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된다(여기에 대해 BGHZ 139 S.95[101] = AfP 1998 S.506; BGHZ 143 S.199[208] 및 1993년 10월 12일자 판결. S.126).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2심 법원도, 피고가 원고를 무시하고 모독하고자 하는 의도로 원고의 얼굴을 변형했다고는 보지 않았고, 단지 좀 더 개선된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했다면 의도한 풍자를 나타내는 효과를 위해 얼굴을 변형시킬 필요는 없었다고 보았다. 몽타주 사진에 대해 제2심 법원은, 전체적으로 풍자의 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너무 좁은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2심 법원이 몽타주 사진의 구성부분에 대해 행한 “개별적 고찰방법”은 이미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례에 의하면, 풍자에 대한 개별적 부분은 따로 분리해 내어 고찰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만 한다(BVerfGE 86 S.1[12] = AfP 1992 S.133; BGHZ 132 S.13[20]; 139 S.95[102] = AfP 1998 S. 506; 1994년 6월 28일자 판결 -VI ZR 273/93, NJW - RR 1994 S.1242[1243] 및 1997년 3월 25일자 판결 -VI ZR 102/96, VersR 1997 S.842[843]; Gounalakis, NJW 1995 S.809[813] 참조; Kuebler, in: FS Mahrenholz, 1994 S.303[309]; Mahrenholz, in: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2. Aufl. 1994, #26 Rdn. 83 S.1315). 표현된 것의 내용을 조사할 경우에 대해 발전시킨 원칙들은, 풍자적인 표현을 평가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현이 모든 문맥상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과 같이, 몽타주 사진과 같은 풍자적인 것은 기본법 제5조 1항의 보호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개별부분으로 나누어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풍자를 나타내는 개별 부분을 고립시켜 고찰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풍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어 기본권의 보호는 거부될 것이다. 제3심 법원이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분리해서 하는 고찰방법”은 기본권을 위배하는 것이 되어 표현행위자의 활동공간을

준게 할 것이다. 제2심 법원이 행한 것과 같은 분리는, 이미 방법론상 풍자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잘못될 위험을 안고 있었으므로, 이를 허용되는 것으로 본 NJW - RR S.1116에 공표된 뒤셀도르프 지방상급법원의 판결에 근거를 두고자 했다면, 이는 명백히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체적 고찰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 판결을 폐기한 것을 간과한 것이다(BVerfGE 86 S.1[12] = AfP 1992 S.133 참조).

연방헌법재판소가, 1982년 6월 8일자 연방대법원(BGHZ) 84 S.237에 공표된 판결에 근거를 둘 수 없는 이유는, 전혀 다른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초상권자의 사회적 실체와 동일시되는 인격을 나타내는 사진에 대한 요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본래에 충실”한 사진에 대한 초상권자의 이익은 더 많이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출발부터 풍자적 특성을 가진 몽타주 사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은 것인데, 몽타주 사진이 원고의 사회적 실체와 동일시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가 몽타주 사진에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독자가 원고를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같은 원칙들을 고려해서 양 당사자의 기본권 간에 행해진 형량의 결과는, 이의가 제기된 몽타주 사진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판시한 바와 같이, 제2심 법원이 확정한 몽타주 사진의 범위 내에서의 원고의 머리에 대한 변형은, 모욕 또는 인신공격의 의미에서의 원고를 침해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것은, 그 표현이 평균적인 독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이다. 몽타주 사진이 원고의 몽타주에 사용된 본래의 사진보다 덜 좋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의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고는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를 수용해야만 하는데(BGHZ 84 S.237[243] = AfP 1982 S.237과 비교하시오), 이는 몽타주 사진이 기본법 제5조 1항이 보호하고 있는 의견의 진술로 보아, 그 의견의 진술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사진에 있어서 이미 언급된 변형의 사소함은 의견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양 당사자의 기본권을 형량할 때에는 인격권 침해의 강도를 구체적인 개별사실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만 한다(1993년 12월 10일자 판결, a.a.O., S.126). 원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진이 원고 개인에 대한 가치를 저하시켰다는 것 외에는, 몽타주 사진의 개별적인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는 것을 첨언한다.

몽타주 사진이 기사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공표되고, 그 기사는 중대한 공익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미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원고의 인격권 침해는 사실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기사가 나갔을 때 일반인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을 보도하고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언론인의 임무의 범위 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볼 때에 피고에게 기본법 제5조 1항 1문상의 기본권 향유를 부정할 수 없다.

출처: AfP(Zeitschrift fuer Medien- und Kommunikationsrecht), Heft 1- 2004 SS.51-53.

번역: 손원선(법학박사)

미국판결

기사가 공적 발언을 정확하게 요약한 것이고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면 그 발언이 부정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공정보도특권에 의해 보호된다

【Yohe v. Nugent 사건】 미국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

- 원고(항소인) : Harry Yohe
- 피고(피항소인)들 : Peter Nugent; Worcester Telegram and Gazette; Kate Walsh and Nashoba Publications, Inc.

판결요지

[1] 원고의 체포에 관한 기사에 사용된 피고 경찰서장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원고의 군 경력과 원고가 체포 당시 중무장하고 있었고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는 언급은 사실이거나 적어도 거짓이라고 밝혀지지 않았고, 그가 저격수 훈련을 받았었다는 내용의 또 다른 군 경력에 대한 언급은 비록 정확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아니며, 또 원고가 자살하려고 하였다가 자신의 믿음이었다고 한 피고의 발언은 공개된 사실에 대한 의견에 불과한데 그 의견의 기초가 된 사실들은 증인진술서에서 나온 정보임을 피고는 분명히 하였고 또 “증인의 말에 의하면”과 “...라고 보고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facts)을 재인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같은 사실에 기초한 원고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그 이유는, 피고가 기자의 질문에 직업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 또는 원고가 자살을 하려고 한 것으로 믿었다고 설명함으로써 원고의 체포를 정당화시킨 것을 “극단적이고 터무니 없는 것(extreme and outrageous)”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경찰서장과의 인터뷰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피고 신문사들의 기사는 정부의 행위에 관한 ‘공정한 보도특권(fair report privilege)’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 이유는, 공적 발언에 해당하는 경찰서장의 말을 기초로 하여 그 기사가 작성된데다가 그 기사의 내용이 경찰서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 기사는 공적 발언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요약한 것이며, 기사에 나타난 사실들이 조작되었다거나 부풀려졌다거나 각색되지 않았고, 기사의 근거가 된 공적 발언이 부정확하다고 하다고 하여도 피고에게 악의가 없다면 기사 피고가 그 부정확성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위 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제기한 원고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유 없다. 왜냐하면, 원고가 단지 소송의 이름만을 바꾸어 달리 소를 제기한다고 하

여 ‘공정한 보도특권’에 의한 상대방의 면책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개요

매사추세츠 지방의 미연방 1심법원 Zobel, J.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신문기사와 관련하여 경찰서장과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과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헌법적인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경찰서장과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전적으로 원고의 체포에 관한 경찰서장과의 인터뷰에 기초한 것이었다. 사건은 병합심리되었고, 연방 1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유리한 약식판결(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항소하였다.

항소인 Harry Yohe는 그린베레 출신의 퇴역 군인이다. 1997년 5월에 Yohe는 매사추세츠 주의 Townsend에서 살았고, 그 곳 Fort Devens 부대에 배치되었다. 1997년 5월 11일 저녁에 경찰은 Yohe의 집에서 가정불화로 인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관은 이웃집에 피신한 Yohe의 처를 만나 질문을 하였는데, 그녀는 Yohe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고, 그전부터 여러 가지 무기를 수집하였다고 말했다. Yohe의 처는 ‘Yohe가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2개의 AK-47 소총, 1개의 케블라 헬멧과 400발의 총탄으로 무장을 하였다’고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Yohe의 처는 또 ‘항우울증약을 복용하는 Yohe가 전날부터 술을 마셨으며, 17살 아들과 함께 집에 있다’고 경찰관에게 말했다. Townsend 경찰과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즉시 소규모 군대를 급파한 것으로 보아 Yohe의 처가 한 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 분명하였다. 특수기동대와 인질협상가를 포함한 30대의 경찰 차량이 Yohe의 집 앞으로 집결하였으나, Yohe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그후 Yohe가 Fort Devens 부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1997년 5월 12일 오전 1시 30분 경 그를 체포하였다.

Yohe는 Fort Devens 부대에서 체포된 직후 의학적 검사를 받기 위하여 Nashoba Deaconess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 후 정신과적 검사를 받기 위하여 Brighton에 있는 St. Elizabeth 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었다. 이 시점에서 기록은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 두 병원에서는 Yohe를 곧 퇴원시켰는데 검사결과 그에게서 술에 취하였다거나 자살충동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월 13일과 14일에 두 지역신문에서 위 체포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Worcester Telegram & Gazette 신문사의 기자인 Peter Nugent와 Townsend Times 신문사의 보도기자인 Kate Walsh는 Yohe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채 위 체포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두 기사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었고, 여기 아래에 Townsend Times 신문의 기사 전문을 그대로 옮긴다.

[가정불화가 험악하게 변하다]

TOWNSEND - 지난 일요일 저녁에 많은 지역 주민들은 Townsend의 거리를 질주하는 30대

의 경찰차량을 보고 놀랐다. 어떤 여자로부터 자신의 남편이 치명적인 火器와 수백발의 총탄을 소지한 채 술에 취하여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 William May는 추가 경찰 병력을 불렀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가정불화는 어머니날 오후 7시경 시작되었다고 May 서장은 말했다. 어떤 여자가 대략 오후 8:30경 자신과 그녀의 아이는 술에 취해 자살을 하려는 남편을 그대로 둔 채 집 밖으로 나왔다는 신고를 경찰에 하였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특수부대 출신의 퇴역 군인이며, 집안에는 2정의 AK47 소총과 500발의 총탄이 있다고 경찰에 알렸다.

May 서장은 “그 남편은 일주일 내내 술을 마셨다. 그 여자는 자신의 아들이 그 집에 있거나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정 무렵 신원미상의 남자를 체포하였고, 경찰은 그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May 서장은, 그 남자가 자살을 시도하려 하였던 것으로 자신은 믿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그 남자에 대한 어떠한 기소도 없었다.

경찰의 작전은 월요일 4시경 종료되었다.

Nugent 기자와 Walsh 기자의 기사는 Yohe가 체포, 입원 및 퇴원을 한 날로부터 1-2일 후 신문에 실렸다. 두 기사 모두 전적으로 May 서장과 인터뷰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Nugent와 Walsh는 각자 May 서장과 인터뷰를 하였으며, May 서장을 믿을만한 정보소식통(a credible source)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사를 쓰기 전에 더 이상의 독자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 기사에는 Yohe가 병원에서 완전히 퇴원하였다는 점이나 또는 그가 받은 병원검사결과에 대한 점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위 기사는 May 서장이 Nugent와 Walsh에게 말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May 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말은 경찰사건기록에 기초한 것이었고, 그 경찰사건기록은 Yohe의 처가 전화로 신고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기록을 그대로 재구성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May 서장의 말이, Yohe의 처가 가정불화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건기록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다툼이 없다.

Yohe는 Nugent와 Worcester Telegram & Gazette 신문사 및 Nashoba Publications, Inc.회사의 Walsh(이하 이들을 “신문사측 피고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 및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Yohe는 또한 May 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 및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추가적으로 그는 또 May 서장과 시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체포와 이에 대한 May 서장의 공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기사는 진실이거나 또는 공정한 보도 특권(fair report privilege)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이유로, 신문사측 피고들에게 유리한 약식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또 May 서장의 발언은 “체포에 기초하여 나온 정보로서 자신의 공식적인 능력 범위내에서 취득하였던 정보”를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May 서장에게 유리한 약식판결을 선고하였다. 나아가 그의 발언은 극단적이거나 터무니 없는 것(extreme and

outrageous)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Yohe는 자신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제1심 법원의 약식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현재 항소 중이다.

판결이유

본 법원은, May 서장과 신문사측 피고들이 승소한 제1심 법원의 약식판결을 다시 검토한다. 중요사실에 대하여는 진정한 쟁점이 없고 피항소인이 법률판단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Rochester Ford Sales, Inc. v. Ford Motor Co.*, 287 F.3d 32, 38 (1st Cir.2002).

명예훼손이란 원고에 대한 적시가 말이나 글로 공표되고, 그 말이 거짓이며,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McAvoy v. Shufrin*, 401 Mass. 593, 597, 518 N.E.2d 513 (1988).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명예훼손적인 말이 원고에게 멸시, 미움, 경멸, 비웃음, 조롱에 해당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원고의 지위를 손상하거나 적어도 사회의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집단(considerable and respectable class)의 마음 속에 원고에 대한 불신(불명예)을 초래할 의도로 행하여져야 한다. *Tartaglia v. Townsend*, 19 Mass.App.Ct. 693, 696, 477 N.E.2d 178 (1985). 둘째, 그 말이 비방된 당사자 이외에 적어도 1명 이상의 다른 사람에게 행하여져야 한다. *Brauer v. Globe Newspaper Company*, 351 Mass. 53, 56, 217 N.E.2d 736 (1966). 셋째, 그 말이 사회적 관심사(matter of public concern)에 관한 경우에는 원고는 그 말이 비방적인 것 이외에 거짓이라는 점도 입증하여야 한다. *Dulgarian v. Stone*, 420 Mass. 843, 847, 652 N.E.2d 603 (1995); see also *Philadelphia Newspapers, Inc. v. Hepps*, 475 U.S. 767, 776, 106 S.Ct. 1558, 89 L.Ed.2d 783 (1986) (원고가私人이고, 기사가 사회적 관심사인 경우인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상대방의 과실 외에 그 말이 거짓이라는 점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함). 마지막으로, 원고는 그가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Lynch v. Lyons*, 303 Mass. 116, 119, 20 N.E.2d 953 (1939).

이러한 배경설명을 염두에 두고, 이 법원은 May 서장과 신문사측 피고들의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이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사실적시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A. May 서장의 사실적시(Statements)

Yohe는 May 서장의 사실적시가 그를 명예훼손하였고,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Yohe는 May 서장이 언론에 대하여 한 다음과 같은 말, 즉 (1) Yohe는 “그린베레라는 군특수부대의 퇴역군인으로 저격수로서의 훈련을

받았었다”, (2)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였고, 몇 정의 대구경 총으로 무장을 하였다고 보고되었다”, (3) “그가 자살을 하려 하였다는 것이 나(May 사장)의 믿음이다”는 언급을 문제삼았다.

제1심 법원의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신문 기사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May 사장은 그의 공식적인 권한범위 내에서 알게 되었고 또 위 체포의 근거로서 제공된 정보들을 단순히 말한 것에 불과함이 명백하다. 그는 자신이 말한 정보들이 증인진술서에서 나온 정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증인의 말에 의하면”, “...라고 믿는다”, “...라고 보고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을 재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May 사장이 증인들로부터 얻은 정보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고 있을 뿐, 이러한 사실들이 May 사장에게 보고되었고, 이러한 사실들이 그(May 사장)의 행동의 전제가 되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Yohe v. May*, No. CIV.A. 00-10802-RWZ, 2002 WL 924225 at *1 (D.Mass., March 14, 2002).

Yohe의 군 경력 및 ‘1997년 5월 11일 그가 중무장을 하고 있었고, 혼란스러운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말한 May 사장의 말은 ‘사실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은 별 다름이 없다. 비록 Yohe는 이러한 말들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러한 말의 대부분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거짓이라고 밝혀진 바 없다. Yohe는 명예훼손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말들이 실질적으로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Dulgarian*, 420 Mass. at 847, 652 N.E.2d 603; see also *Phantom Touring, Inc. v. Affiliated Publ’ns*, 953 F.2d 724, 727 (1st Cir.1992) (언론사가 한 사실적시에 대하여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려면, 그 적시가 거짓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더욱이 Yohe의 경력에 대한 다른 적시들은 비록 그 적시가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Yohe는 그가 그린베레였지만 “저격수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사는 부정확한 것이지만, 부정확하다고 하여 막바로 명예훼손적 발언이 되는 것은 아니다. Yohe의 특수부대훈련에 대한 이러한 부정확한 적시가 Yohe에게 “멸시, 미움, 경멸, 비웃음, 조롱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원고의 지위를 손상시킬 의도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See *Tartaglia*, 19 Mass.App.Ct. at 696, 477 N.E.2d 178.

Yohe가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특정한 다른 유일한 적시(statement)는 “Yohe는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 내 믿음이었다”고 May 사장은 말했다”고 한 부분이다. Yohe의 경력과 5월 11일 Yohe의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언급한 다른 사실적시와는 달리, 위 사실적시는 체포 당일 저녁 Yohe의 정신상태에 관한 May 사장의 의견(opinion)에 해당한다. May 사장의 의견은 보도기자의 이야기와 명백한 연관성이 있다. 그 이유는, *Telegram* 신문의 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Yohe는 “스스로를 위협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를 경찰이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법에 의하여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그 적시가 의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언급된 적시

의 전체적인 흐름 및 문구의 연결방법을 조사하여야 한다. 법원은 사용된 어휘를 모두 살피고, ... 그 적시를 게재한 사람에 의하여 사용된 주의깊은 문구에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그 적시를 둘러싼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Lyons v. Globe Newspaper Co.*, 415 Mass. 258, 263, 612 N.E.2d 1158 (1993), quoting *Fleming v. Benzaquin*, 390 Mass. 175, 180-81, 454 N.E.2d 95 (1983). 여기서 “그의 믿음이었다”고 말한 그 한정적 언어는 분명히 1997년 5월 11일과 12일날 Yohe의 정신상태에 관한 May 서장의 의견표명이었다.

물론 그 적시가 의견에 불과하다고 하여 당연히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의견 표명은 종종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장을 수반한다.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497 U.S. 1, 18, 110 S.Ct. 2695, 111 L.Ed.2d 1 (1990); *Dulgarian*, 420 Mass. at 849, 652 N.E.2d 603. 따라서 “비공개된 명예훼손적 사실이 의견의 전제가 되었을 때”에는 그 의견도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May 서장의 의견은 명예훼손적 발언이 아닌 공개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May 서장은 자신이 말한 정보들이 증인진술서에서 나온 정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증인의 말에 의하면”,... “...라고 보고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facts)을 재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Yohe v. May*, 2002 WL 924225 at *1. 그 신문기사는 May 시장의 의견이 증인진술서 및 그가 받은 보고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의견이 비공개된 사실을 근거로하여 이루어졌다는 불합리한 추론을 하기에 충분하다. *Dulgarian*, 420 Mass. at 850-51, 652 N.E.2d 603, quoting *Lyons*, 415 Mass. at 266, 612 N.E.2d 1158. 공개되거나 비명예훼손적인 사실에 기초한 의견표명은 아무리 그 의견이 정당화될 수 없고 불합리하다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소송의 대상이 되기에 불충분하다. 결과적으로 May 시장이 Yohe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말한 의견표명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컨대, Yohe가 문제삼고 있는 적시들(statements)은 모두 다음의 3가지 범주에 해당한다. (1) 사실에 관한 다툼이 없는 적시; (2) 비록 그 적시 내용이 거짓일지라도 지역사회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보아 불쾌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적시; (3) 공개된 사실에 근거한 의견의 적시. 이러한 종류의 적시는 명예훼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ohe의 May 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Yohe는 또한 May 서장의 적시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는 명예훼손청구에서의 사실과 똑같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Yohe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즉 (1) May 서장은 고의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거나 또는 그 정신적 고통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알고 있었다는 점; (2) 그 행동은 극단적이고 터무니없다거나 통상의 예절범주를 벗어나 문명사회에서 매우 참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 (3) May 서장의 행동이 Yohe의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점, (4) Yohe가 겪은 정신적 고통

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Agis v. Howard Johnson Co.*, 371 Mass. 140, 144-45, 355 N.E.2d 315 (1976).

두 신문기자는 May 서장에게 왜 30대의 경찰차량과 특수기동대가 매사추세츠 주의 Townsend 주거지로 이동하여 내려갔는지를 물었다. May 서장은 최대한의 전문적인 조치로서, 중무장을 하고 자살을 기도하려는 그린베레출신 퇴역 군인이 일으킨 가정불화현장에 경찰관들을 급파하여 신속한 해결을 하려 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이 보고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요약하여 대중에게 전달하였고, Yohe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며, Yohe가 자살하려 하였다고 믿었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Yohe를 체포하기로 한 그의 결정을 정당화 하였다. May 서장의 행동은 어느 모로 보나 극단적이고 터무니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Yohe의 불법행위청구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Yohe는 May 서장이 다른 경찰관들에게 Yohe가 자살하려 하고 있고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결과 Yohe에게 불법구금, 신체적 구타, 생활침해, 영장 없는 가택수색 등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Yohe는 May 서장의 행동이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였고, U.S.C. § 1983 법령의 제42조에 따른 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가 요약하여 제출한 위 주장을 이 법원이 검토한 결과, 본안판단의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한다.

B. 신문사측 피고들

신문사측 피고들에 대한 Yohe의 청구는 May 서장에 대한 청구에서와 똑같은 사실 및 적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제1심 법원은 법률판단의 문제로 보아, Yohe의 체포에 대한 기사 내용은 정부의 행동에 대한 ‘공정한 보도특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문사측 피고들에게 유리한 약식판결을 하였다. 본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지지한다.

공정한 보도특권(fair report privilege)이란, 일정한 종류의 공적인 행동이나 정부의 행위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자는 그러한 보도로부터 발생한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을 말한다. *ELM Medical Laboratory, Inc. v. RKO General Inc.*, 403 Mass. 779, 782, 532 N.E.2d 675 (1989). 이러한 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대중매체가 정부기관이나 정부관리들의 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See *Sibley v. Holyoke Transcript-Telegram Publ'g Co.*, 391 Mass. 468, 472, 461 N.E.2d 823 (1984). 위 ELM Medical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공정한 보도특권은, (1) 국민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공적인 정부의 행동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2)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정부의 행동을 알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대중매체를 통한 보도라는 점; (3) 그 보도가 공정하고 정확하다면 그러한 보도를 면책시켜야만 그 보도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ELM Medical*, 403 Mass. at 782, 532 N.E.2d 675.

공정한 보도특권에 되기 위해서는 그 보도가 공적인 행동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공적 행동에 대한 기자의 대략적인 요약이 실질적으로 정확한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그 적시의 본질이나 요점이 진실하다면, 다시 말해서 독자의 마음 속에 정확한 진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 낸다면 그 적시는 공정한 보도로 간주되는 것이다.

공정한 보도특권은 경찰에 의해 작성된 체포보고서의 공표를 보호한다. *Jones v. Taibbi*, 400 Mass. 786, 796, 512 N.E.2d 260 (1987)(경찰관에 의한 체포는 공적 행동이고, 체포나 석방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한 체포 또는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의 보도는 공정한 보도특권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체포되었다거나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신문사의 공표는 그 공표가 사실이라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Thompson v. Globe Newspaper Co.*, 279 Mass. 176, 188, 181 N.E. 249 (1932). 따라서 체포에 관한 신문기사의 대략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확하다면, 신문보도는 이 특권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Cf. *MiGi, Inc. v. Gannett Massachusetts Broadcasters, Inc.*, 25 Mass.App.Ct. 394, 396, 519 N.E.2d 283 (1988).

두 신문사의 기사는 명백히 이 특권에 해당한다. May 서장의 말은 분명히 공적 발언에 해당하고, 신문기사 속의 정보가 May 서장으로부터 나온 것임은 분명하고도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문제가 된 기사는 May 서장의 공적 발언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즉 그 기사는 적어도 공적 발언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두 기사에 나타난 사실들이 기자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거나, 부풀려졌다거나, 각색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만일 그랬다면, 위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See *Brown v. Hearst Corp.*, 54 F.3d 21, 25 (1st Cir.1995); see also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611 (2002)

문제는 기사속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면 피고가 위 특권을 상실하느냐에 있다. Yohe는 피항소인측에서 부주의하게 기사를 게재한 것 외에 기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부정확하였기 때문에 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Yohe는 다음과 같은 이유, 즉 (1) 그 기사는 'Yohe가 체포될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자살을 하려 했다'는 내용의 부정확한 보도를 하였고, (2) 신문사측 피고들은 부주의했고 독자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 조사를 했더라면 '병원 검사결과 Yohe가 술에 취했고 자살충동이 있었다는 혐의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여기서는 공정한 보도특권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한다.

공정한 보도특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특권은 공적 언급이나 행동에 대한 정확한(즉 실질적으로 맞는) 보도를 할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그 기사에 부정확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문제는 두 신문사의 기사가 여전히 '공정한 보도특권'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Yohe는 그 기사가 May 서장의 발언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고, 그가 이 재판부에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확성"이란 공정한 보도를 그 기초자료가 된 공적 언급과 비교하거나, 또는 실제로 밝혀진 사건과 비교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론지어 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적

활동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부정확하게 작성된 공적 보고를 그대로 정확하게 보도한 신문기자는 ‘공정한 보도특권’에 의하여 여전히 보호되는가?

공정한 보도특권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확하게”라는 요건사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적 언급에 관한 기사는 공적인 보고를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족하다; 그 기사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정확하게 그대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Cf. ELM, 403 Mass. at 783, 532 N.E.2d 675. 즉 공정한 보도를 위한 “정확성”이란 보고된 사건에 대한 사실적인 정확성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로, ‘보도를 한 당사자가 그 적시가 거짓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한 경우라도 공정한 보도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법리는 널리 확립되어 있다. MiGi, 25 Mass.App.Ct. at 397, 519 N.E.2d 283; Roketenetz v. Woburn Daily Times, Inc., 1 Mass.App.Ct. 156, 161-62, 294 N.E.2d 579 (1973)

이 특권은 신문사측의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의 ‘부당한 행위’란 부정확한 공적 언급에 대한 부주의 또는 이를 단순히 인지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 특권의 적용을 배척하려면, 원고는 신문사가 공적 언급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신문사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의 항소심 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거짓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의 악의란 새롭게 정의(定義)를 내려야 한다; 아마도 원고에게 최대한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보도한 것이라면 이는 악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MiGi, 25 Mass.App.Ct. at 397, 519 N.E.2d 283.

“악의”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던 간에 Yohe는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사는 May 서장의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제1심 법원에서 그 기사가 공정한 보도특권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명예훼손소송에서 신문사측 피고들의 주장을 인용한 제1심 법원의 약식판결을 지지한다.

May 서장에 대한 청구에서와 같이, Yohe는 신문사측 피고들에 대하여도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하였다. 마찬가지로, Yohe의 위 청구 역시 명예훼손 소송에서와 똑같은 사실관계, 즉 May 서장에 대한 공적 언급에 대한 공표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단지 소송의 이름만을 바꾸어 다른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공정한 보도특권에 의한 상대방의 면책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orrellas v. Viveiros, 410 Mass. 314, 324, 572 N.E.2d 7 (1991).

결론적으로, Yohe의 체포에 관한 May 서장의 언급은 부정확하였고, 지역신문에서 이러한 언급을 연이어 게재한 것은 이러한 부정확성을 그대로 존속시킨 것으로서 Yohe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을 야기한 것이지만, 이 법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서장의 언급이나 기사가 이해관계 있는 대중에게 정부관리로부터 나온 정보를 합법적이고 비증상적으로 흘러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한다.

제1심 판결 인용(원고 항소 기각. Affirmed)

출처: Media Law Reporter 32권 pp. 1334-1340

번역: 윤 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TV보도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의
여부는 일반시청자의 보통의 주의와 시청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

상 고 인 : 甲野太郎 외 28인

피상고인 : 전국아사히방송주식회사, 동 대표이사 廣瀬道貞

최고재판소 2002(受) 제846호, 사죄광고등청구사건

2003.10.16 제1소법정 판결, 파기환송

원심 도쿄고등법원 2001(ネ) 제3301호, 2002.2.20 판결

원원심 사아다마지방법원(ワ) 제1647호, 2001.5.15 판결

판결요지

1. TV방송보도의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의 여부는 일반시청자의 보통의 주의와 시청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한다.

2. TV방송보도에 의해 적시된 사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시청자의 보통의 주의와 시청방식을 기준으로, 그 프로의 전체적인 구성, 등장한 사람의 발언내용,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의 내용을 중시하여 영상 및 음성과 관련되는 정보의 내용 또는 방송내용전체에서 받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만 한다.

3. 피상고인 방송사는 A지에서 생산하는 야채의 다이옥신류 오염 농도가 1g당 0.64~3.80 picogram(기호:pg, 1pg는 1조분의 1g)이라는 B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flip (TV방송 등에서 도표나 설명문을 기재하여 한장씩 넘기면서 사용하는 카드, flip chart 라고도 한다)을 통해 게시하고, 그 야채가 시금치를 비롯한 A지 생산의 잎 야채(주로 잎 부분을 먹는 종류)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가사 시금치를 비롯한 A지 생산의 잎 야채가 전반적으로 다이옥신류에 의한 고농도 오염상태에 있고, 그 측정치가 상기수치에서 보여준 대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조사결과 A지 생산의 라벨이 부착된 배추검체에서 상기최고치에 비교적 근접한 측정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판시(判示)의 사실관계 하에서는 위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3에 대해서는 보충의견이 있다)

주 문

원판결 중 상고인 등의 피상고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전항의 부분에 대해, 본건을 도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본건은 야채생산농가인 상고인 등이, 피상고인이 1999년 2월 1일 TV뉴스프로 「뉴스스테이션」에서 다이옥신류에 관한 특집을 방영해 埼玉현 所澤시 생산 야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함으로써 상고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야채가격의 폭락이라는 재산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 피상고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사죄광고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등

상고인등은 所澤 시내에서 시금치, 당근 등을 생산,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이다.

피상고인은 TV방송회사로 뉴스프로인 「뉴스스테이션」(이하 「본건프로」라 한다)을 제작,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부터 약 80분간 전국의 방송망을 통해 전국에 동시에 방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환경총합연구소는 관공청, 민간기업, 단체로부터의 위탁조사,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2) 다이옥신류

다이옥신이란 염소계화합물의 일종으로, 일반독성 외에 발암성, 생식독성, 면역독성, 간장장해, 골수장해 등의 원인이 되는 독성을 갖고 있어 식물이나 환경으로부터 인체에 섭취되면 그대로 체내에 축적되어 체외로 배출되기 어려워 인체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다이옥신류의 체중 1kg당 내용(耐容) 1일섭취량(다이옥신류를 일생동안 계속적으로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1일섭취량)의 기준이,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6조1항 및 동법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해 4picogram으로 정해져 있다.

(3) 所澤시 주변에 있어서의 다이옥신류 문제

① 攝南대학 宮田교수등이 1995년과 1996년 두차례 토양조사 결과 1g당 90~300pgTEQ (TEQ=독성등가량), 65~448pgTEQ의 다이옥신류 검출.

埼玉현이 1996년 조사 결과 지표로부터 0~5cm 범위의 토양에서 1g당 11~100pgTEQ, 평균 42pgTEQ, 지표로부터 0~2cm 범위의 토양에서 1g당 13~30pgTEQ, 평균 54pgTEQ의 다이옥신류 검출.

환경청이 1997년 所澤시를 포함한 埼玉현내 5개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토양, 식물등의 다이옥신류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주변토양에서 1g당 62~140pgTEQ의 다

이옥신류 검출.

②所澤시 농협은 所澤산 시금치와 토란에 함유된 다이옥신류 농도조사를 실시했으나 공표하지 않았으며 조합장은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③환경총합연구소는 1998년11월 所澤산 엽차 100g씩을 2검체(檢體)로, 시금치를 4검체, 무잎과 뿌리를 각 1검체로 하여 분석한 결과, 각 검체 1g당 다이옥신류 측정치는 엽차가 3.60pgTEQ 및 3.81pgTEQ, 시금치가 0.635pgTEQ, 0.681pgTEQ, 0.746pgTEQ, 0.750pgTEQ, 무잎이 0.753pgTEQ로 나타났다.

④宮田교수등이 1998년 「所澤産」 라벨이 부착된 배추(1검체)를 조사한 결과 1g당 3.4pgTEQ의 다이옥신류가, 시금치(1검체)에서는 0.859pgTEQ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되었다.

⑤후생성이 1996년과 1997년 전국의 시금치와 그 밖의 야채를 조사한 결과 시금치에서 96년에 1g당 0.106~0.308pgTEQ, 평균 0.188pgTEQ, 97년에는 1g당 0.044~0.430pgTEQ, 평균 0.187pgTEQ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되었다.

(4) 본건방송의 경위

피상고인은 1995년 10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더 스퀴프」라는 특집프로에서 7회에 걸쳐 다이옥신류 문제를 취급하면서 다이옥신류의 위험성과 그 오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프로에 출연한 환경총합연구소 靑山소장은 엽차와 시금치에 대한 측정치를 밝히면서 시간상 문제 등으로 각 검체의 구체적인 품목을 지적하지 못하고 단순히 所澤산 농작물에서 검출된 측정치인 것으로 전달했다.

피상고인 측 담당자는 이를 所澤산 야채에 대한 측정치인 것으로 오해하고, 방송할 flip에 「야채의 다이옥신 농도」 「전국(후생성 조사) 0~0.43picogram/g, 所澤(환경총합연구소 조사) 0.64~3.80pg/g」로 표시했다.

(5) 본건방송

피상고인은 1999년2월1일 오후 10시부터 약 16분간 본건프로에서 「所澤 다이옥신 농작물은 안전한가?」 「오염지의 고뇌 농작물은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특집방송을 했다.

전반에서는 녹화영상을, 후반에서는 靑山소장과 의 대담을 방영했는데, 전반에서는 ①所澤시 밭 부근에는 폐기물소각로가 많아 소각회가 밭에 내려 앉는다 ②시농협은 농가와 소비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③所澤시 토양의 다이옥신류 농도는 독일 같으면 농업이 규제 받을 만큼 높으며 농약공장 폭발사고 후 농업이 금지된 이탈리아 북부의 한 사고지역의 오염도를 상회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후반의 대담부분에서는 ④환경총합연구소가 所澤산 야채를 조사한 결과 1g당 0.64~3.80pgTEQ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되었다 ⑤그 결과는 전국의 야채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비해 약 10배나 높다 ⑥所澤시 주변의 다이옥신류에 의한 대기 오염농도는 일본 전국의 평균보다 5~10배 높으며, 일본의 경우 세계의 평균보다

10배나 높다. ⑦체중 40kg의 어린이가 所澤산 시금치를 20~100g 먹었을 경우 WHO가 정한 내용 1일 섭취량인 체중 1kg 당 1pgTEQ의 기준을 초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방영했다.

이 가운데 위 ④의 요약부분에 대한 대답에서 靑山소장은 본건 flip에 있는 「야채」가 「시금치를 비롯한 所澤산 잎 야채」라고 설명했다, 그 최고치인 「3.80pg/g」가 엽차에 대한 측정치임을 밝히지 않았으며 검체의 구체적 품목, 개수, 채취장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6) 본건방송후의 사정

①본건방송 다음날부터 시금치를 비롯한 所澤산 야채의 거래정지가 이어졌으며 거래량과 가격이 하락했다 ②시농협은 1999년2월9일 시금치에서 검출된 다이옥신류가 1g당 0.087~0.71pgTEQ이며 토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③피상고인은 1999년 2월 18일 본건방송에서 다이옥신류 농도가 1g 당 3.80pgTEQ 였다고 한 검체는 엽차임을 밝히고 시금치 생산농가에 피해를 준 데 대해 사죄했다. ④환경청, 후생성, 농림수산성은 1999년 2월 16일부터 所澤산 야채를 검사한 결과 시금치(출하상태)에서 1g 당 0.0086~0.18pgTEQ, 평균 0.051pgTEQ, 또 埼玉현은 1g 당 0.0081~0.13pgTEQ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3. 원심은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 상고인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1)본 방송은 所澤산 야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으며, 생산농가인 상고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

(2)본건방송은 다수의 조사보고를 인용, 다이옥신류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 보도자체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 명백하다. 또한 보도기관으로서의 사명 및 이 문제에 관한 종전부터의 대응 등을 감안할 때 본건방송은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①본건방송에서 적시된 사실 중 본건요약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부분 모두가 진실임이 인정된다. ②본건요약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총합연구소의 조사결과만으로 위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宮田교수등의 조사결과 배추(1검체)에서 1g당 3.4pgTEQ의 다이옥신류(고쁘라나-PCB 제외)가 검출되고 있어 고쁘라나-PCB를 포함하면 1g당 3.80pgTEQ에 필적하게 되므로 본건방송 당시 所澤산 야채에서 1g당 3.80pgTEQ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되었다고 한 중요부분에 관해 진실성의 증명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3.80pgTEQ의 다이옥신류 농도를 나타낸 所澤산 야채가, 어떠한 기관의 조사와 관련이 있는냐는 점은 所澤산 야채의 안전성에 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좌우하지 않는다. ③따라서 본건방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중요부분이 모두 진실로 인정되므로 본건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상고인의 상고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그러나 원심의 상기 (1), (2)의 판단은 시인할 수 있으나 (3)의 ②, ③의 판단

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신문보도의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식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한다(최고재판소 1954년(가)제634호 동 1956년 7월 20일 제2소법정 판결)는 판례가 TV방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TV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관해서도 일반시청자의 보통의 주의와 시청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TV로 방영된 보도프로에 대해서는, 신문기사 등의 경우와는 달리 시청자는 음성과 영상에 의해 계속해서 제공되는 정보를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이해해야만 하고, 녹화 등의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는 한 제공된 정보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다든가 재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해 보도프로에 의해 적시된 사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당해보도프로의 전체적인 구성, 등장인물의 발언내용, 화면에 표시된 flip 및 Telop(TV화면에 투사·삽입하는 자막·사진·그림)등의 문자정보의 내용을 중시해야 함은 물론 영상의 내용, 효과음, Narration등의 영상 및 음성과 관련있는 정보의 내용과 방송내용 전체로부터 받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만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건을 살펴보면, 전기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명백하다. ①본건방송의 靑山소장과의 대담 모두 부분에서 久米캐스터는 환경총합연구소가 所澤시 야채의 다이옥신류 오염의 조사결과 수치를 본건프로에서 발표하겠다고 전제한 후, 본건 flip를 게시하면서 「所澤 (환경총합연구소 조사) 0.64~3.80 pg/g」라고 말했으며, 靑山소장은 본건 flip에 있는 「야채」가 「시금치를 비롯한 所澤산 잎야채」라는 설명을 했으나 그 최고치인 「3.80pg/g」가 엽차에 대한 측정치임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측정대상 검체의 구체적 품목, 개수와 그 채취 장소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②靑山소장은 대담에서 주로 시금치를 예로 들면서 所澤산 잎 야채의 다이옥신류 오염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관해 설명했다. ③본건 방송 전반의 녹화영상부분에서는, 밭 부근의 다수의 폐기물소각로에서 소각회가 발으로 내려앉는다는 점, 농협이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도, 所澤산 야채의 다이옥신류 오염의 심각성,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④본건방송 다음날부터 야채의 거래정지가 잇따랐으며 거래량, 가격이 하락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할 때 본건방송 중의 본건요약부분 등은, 시금치를 비롯한 所澤산 잎 야채들이 전반적으로 다이옥신류에 의한 고농도의 오염상태에 있으며, 그 측정치는 환경총합연구소 조사결과 1g당 「0.64~3.80 pgTEQ」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이하 「본건사실적시」라 한다), 그 중요부분은, 所澤산 잎 야채들이 고농도의 오염상태에 있으며 측정치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 본건적시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 그것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전기 확정사실에 의하면 환경총합연구소 조사결과 각 검체 1g당 다이옥신류의 측정치는 엽차(2검체) 3.60pgTEQ · 3.81pgTEQ, 시금치(4검

체) 0.635pgTEQ · 0.681pgTEQ · 0.746pgTEQ · 0.750pgTEQ, 무잎(1검체) 0.753pgTEQ 였다는 것이다.

본건방송을 시청한 일반시청자는 본건방송에서 측정치가 명백하게 밝혀진 「시금치를 비롯한 所澤산 잎야채」에 엽차가 포함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엽차를 제외한 측정치는 0.635~0.753pgTEQ 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상기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본건적시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해 진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을 명백하다.

또 일반시청자가 측정최고치에서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채취장소도 명확하지 않은, 그것도 불과 1검체의 배추만을 조사한 측정결과가 본건적시사실의 최고치에 비교적 가깝다는 것만을 가지고 본건적시사실 중요부분의 진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전기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본건적시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해 그것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상의 판시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본건적시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해 宮田교수등에 의한 상기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진실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이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 있다.

논지는 이유가 있으며 원판결 중 상고인들의 피상고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과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본건적시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등에 대해 다시 심리를 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기부분에 관해 본건을 원심에 환송하도록 한다.

이에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泉 德治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냈다.

보충의견 : 본건사안에서 상고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근원적인 이유는 폐기물소각시설에 있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1)1992년경부터 폐기물시설, 중간처리시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2)농지가 많은 구누기산 지역은 소각회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해 농사일을 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다. (3)埼玉현이 1996년 5월 所澤시의 대기 중 다이옥신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최고치가 1입방미터당 1.4pgTEQ, 1997년 구누기산 주변조사에서 최고치 1입방미터당 2.5pgTEQ 였다. (환경청이 전국의 중도시 지역에서 측정한 평균치 1입방미터당 0.16pgTEQ). (4)1998년 주민들과 농민들은 건강피해, 농작물오염을 이유로 埼玉현 공해심사회에 소각로의 사용정지등 공해조정을 청구했다. (5)피상고인은 1995년 10월~97년 11월 특집을 통해 7회에 걸쳐 다이옥신류의 위험성과 오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행정적인 대응이 여러 외국에 비해 미비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본건방송이 있는 후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등 각종 규제법이 제정되어 입법조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다.

이와같이 본건방송을 포함한 위에서와 같은 일련의 보도는 다이옥신류 오염의 확

대를 방지하려는 공익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입법조치를 이끌어내는 역할까지 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입법조치에 의해 다이옥신류 오염의 확대가 방지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환경이 보전되고 所澤시 농민들의 이익에도 공헌한 면도 있다.

본건방송이 엽차의 다이옥신류 측정치를 야채의 측정치로 잘못 보도한 부분은 본건방송이 적시한 사실의 중요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를 간과할 수 없음은 법정의견이 설시한 바와 같으나 그 부분도 역시 본건방송의 일부이고, 본건방송 자체도 폐기물소각시설의 규제 등을 제기한 피상고인이 행한 일련의 특집의 일부라는 점, 그리고 앞서와 같이 所澤시의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근원적인 원인은 일련의 보도가 계속해서 제기한 폐기물소각시설의 난립에 있다는 데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공해의 근원을 적발하고 생활환경의 보전을 강조하는 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본인도 법정의견에 동조하기는 하지만 피상고인이 행한 일련의 보도에 대한 전체적인 의의를 평가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음을 부언해 둔다.

출처 : 『관례타임즈』,1140호 pp. 58~67.

번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개인의 슬픔을 보도할 때는 동정심을 갖고 시점을 잘 조절해 보도해야

불만신청내용

런던에 거주하는 도로시 요만(Dorothy Yeoman)은 2004년 1월 15일자 론다 리더(Rhondda Leader)지에 게재된 “연금생활자를 게걸스레 먹어치우는 굶주린 애완동물들” 제하의 기사가 보도실천강령 제5조(개인 슬픔의 침해; Intrusion into grief)의 위반으로 슬픔을 갖는 시간적 여유를 전혀 배려하지 못한 내용이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인의 불만은 수용됐다.

이 기사는 집에서 좌절해 죽은 한 남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의 여동생은 기사가 고통을 줬고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신문사 측은 불만신청인이 자기 오빠의 죽음에 상당히 낙담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신문사 측은 취재(다수의 공중이 정보를 제공했고 두 곳의 취재원에서 근거가 확인된)를 하면서 동정심과 신중함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와 같은 특이한 조건에서는 자극적인 기사를 출판하기 쉽겠지만, 신문사는 기사의 구성과 제목을 동정심을 갖고 또 미묘한 점을 적절히 조절했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평결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보도실천강령의 핵심이며, 평의회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들이 죽음을 목격한 바로 다음은 매우 상처가 클 시점임을 인정한다. 이는 제5조가 뉴스가 수집되는 과정에서나 또 신문이 기사를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뉴스의 출판 과정에 관련되는 이유이다.

그 기사들이 충분히 민감하게 작성됐는지의 판단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주관적일 것이나, 평의회는 이 경우 기사의 전반적 수위와 자세한 내용의 이유 없는 인용은 보도실천강령을 위반했다고 느낀다.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평의회는 이 기사가 남자가 죽은 바로 다음과 장례식 직전에 작성됐다는 사실과 상세한 내용이 예컨대 검시 결과보고서와 같은 공공적 영역에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

살인범의 남자친구에게 사진제공의 대가를 지불한 잡지사는 잘못

불만신청내용

줄리 클락(Julie Clark) 여사는 잡지 클로저(Closer) 2004년 1월 31일자에 게재된 “사람을 도우려 변호사가 되려한다” 제목의 기사 내용이 보도실천강령 제17조(형사범 보상; Payments to criminals)를 위반했다고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인의 불만은 수용됐다.

기사는 1998년 본의 아니게 어린이를 죽여 유죄판결을 받은 루이스 우드워드(Louise Woodward)가 인터뷰에서 자기의 절박한 법조 경험을 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신청인은 제17조의 형사범과 그 주변인물에 대한 보상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드워드가 그 기사 때문에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잡지사는 우드워드가 재활을 위해 수습 변호사로 근무한 취지(subject matter)는 공중의 관심영역이었으며, 나아가 우드워드는 인터뷰를 하면서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도 또 받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 그러나 잡지사는 우드워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제공한 남자친구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평결

보도실천강령 제17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표되어야 하며, 이 때문에 보상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판결을 받은 형사범의 주변인물에게 금전적 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우드워드의 남자친구에게 사진제공의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다. 평의회가 보기에 사진의 공표가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고, 아울러 잡지사가 주장하는 보상의 필요성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경우 보도실천강령의 위반이 있음이 분명하다. □

-영국사례 3-

동의 없이 행사사진을 게재했다 해도 행사의 성격이 공공성을 띤다면 사생활침해는 이뤄지지 않아

불만신청내용

웨스트요크셔에 거주하는 이버슨(W G Ibberson)씨는 브리그하우스 에코(Brighthouse Echo)지 2003년 12월 12일자에 실린 “석덴(Sugden)에 또 휘방” 제하 기사에 실린 사진 한 장이 보도실천강령 제3조(사생활; Privacy)의 위반이며, 또 동의 없이 촬영됐기 때문에 제4조(괴롭힘; Harassment)도 위반했다고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인의 불만은 수용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한 지방 학교의 개교 1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 받았다. 행사는 학교에서 열렸고 입장은 개별 초청만 할 수 있었으나 행사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그 뒤 신문에 실렸고, 신청인은 이 사진이 자기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자기는 사진을 찍는 일이나 출판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사진기자들을 한사코 거절해왔다는 것이다.

신문사는 그 행사가 매우 ‘공적’인 일이었고, 공주가 참석했기 때문에서라도 매우 공공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축하행사의 기록을 위해 초대됐고, 지역의 대사업가인 신청인의 사진을 찍어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사에 게재한 것이다. 신문사는 신청인이 사진이 실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사진을 찍어 게재한 일이 보도실천강령의 조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평결

비록 행사 자체가 물리적으로는 사유 재산에서 열렸다 할지라도, 평의회가 보기에 행사의 성격은 사적이 아님이 분명하다. 왕실의 한 고위 인사가 공적 행사에 출석했다면, 공식 의례로서 신문의 왕실 기사로 게재된다. 나아가 위원회는 사진기자가 초청을 받아 학교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자 하는데, 그는 행사주관자의 동의로 거기 있었으며 또 은밀하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아무런 제안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진기자가 사진을 찍기 전에 각 개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한 신문의 편집인도 기사의 문맥과 관계없이 그런 사진들을 신기 전에 허락을 득해야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필요치 않다. 설사 행사주최자가 기자들을 행사의 기록을 위해 초청했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몰랐었다고 평의회가 인정한다고 해도, 신청인에게 이유 있는 사생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행사였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안에 보도실천강령 제3조와 제4조의 위반은 없다. □

시민소송의 증가경향을 지적하는 의견기사는 정당한 내용이다

언론평의회는 브리즈번의 더 선데이 메일(The Sunday Mail)에 실린 공공의 책임 문제를 놓고 시민소송이 증가하는 경향을 비난하는 의견기사에 대한 시민법률재단의 불만신청을 기각했다. ‘애들이 어디서 놀아야 하는가?’ 제목의 이 의견기사는 기자의 관점을 빌어 정상적 사회생활과 공동체 관계를 규정하는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예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 신문은 한 예로 새 이동 주택차를 팔면서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잘 설명하지 않은 차량 생산업자를 고소해 성공을 거둔 한 남자가 “사안을 진행하면서 환회에 찬 허풍”을 떨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남자가 네비게이션 장치만 설치하면 자동운행 장치가 작동한다고 생각하며 핸들을 그냥 나둔 채 커피를 마셨다가 차가 충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법률재단은 비영리 단체로서 그 목적이 민사법정에 접근하는 개인적 권리의 보호와 강화를 촉진하고 복돋아 주는데 있다. 재단은 이 이동 주택차의 허황된 설명은 “근거 없고 유감스럽게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의 인용이 독자를 오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기 잘못 없이 다친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험담”이라고 비난하며 정정을 요구했다.

신문사는 재단 측의 기사에 대한 해석을 반박했다. “독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양식 있는 사람도 자신에게 발생한 까닭 없는 상처에 대한 법률적 구제를 찾는 소비자들을 기자가 비난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선데이메일 측에 대략적으로 동의했다. 이동 주택차의 사고를 ‘허풍’이라 묘사한 것은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했지만, 반면 기사는 몇몇 소송인에 대한 비난만을 담고 있으며, 또 기사의 초점은 개인들이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을 묘사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걸핏하면 소송을 일으키고 억지로 꾸며대는 법률 관행과 그들을 뒤에서 꼬드기는 “법조 동업자들과 거대 보험업자들”에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법률재단은 선데이메일에 항의 서신을 썼지만 “공개하지 말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이는 아마도 불만신청이 기사가 보도된 뒤 두 달 동안 잘 처리됐기 때문일 것이다. 평의회는 신문편집인에 보내는 시의적절하고 공개 가능한 서신만이 재단 측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데 제일 적당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

테러리스트들이 모슬렘이었을 뿐이지 모슬렘들이 자동적으로 테러리스트는 아니므로 기사제목에서의 사용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 공격의 보도기사 중 ‘이슬람’ ‘모슬렘’ 따위의 단어 사용은 호주의 모슬렘사회와 호주 언론 모두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평의회에도 불만신청이 접수된다.

종교적 연관성을 갖는 이러한 단어들이 정확하게 사용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슬람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몇몇 경우 온전히 공평하지는 않았다고 평의회는 믿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모슬렘일 뿐이지 모슬렘들이 자동적으로 테러리스트는 아니라는 말이다.

평의회는 신문들에게 보도하는 공동체의 민감한 부분을 배려하도록 요청했다. 제목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는 제목을 쓰는 제한된 자리에 예기의 핵심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평의회는 재차 주의를 강조했다.

마틴 올리버는 위켄드 오스트레일리안(Weekend Australian)이 지난해 11월 이스탄불 폭탄공격사건 보도기사의 제목인 “모슬렘이 ‘탄압을 중단’ 하라며 27명 살해” 중 ‘모슬렘’이란 단어의 사용에 대해 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폭탄공격은 영국영사관과 영국소재 홍콩상하이은행의 지점이 대상이

었다.

그는 불만신청에서 ‘모슬렘’이란 단어는 부적절했으며, ‘테러리스트’는 더 정확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호주 내 공포기류와 모슬렘 간 강력한 연관성을 획책”하려는 제목 뒤에 “정치적 노림수”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문사는 이번 공격이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이슬람 연방국을 설립해 모슬렘에 대한 압제를 중단시키는 게 목표인 과격 수니파 단체인 동방이슬람전사전선이 공동으로 저질렀다”는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기 때문에 제목은 “정확하고 공정”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어떤 감춰진 음모도 없으며 “모슬렘을 특정”하려는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부정했다.

평의회는 신문이 아무 숨은 동기가 없으며, 또 전체 모슬렘을 모독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평의회 관점에서 보면, 쓰여진 단어들이 본문에서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의 눈에는 제목이 너무 앞서 나가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불만신청을 수용했다.

한편 호주이슬람관계포럼(FAIR)은 지난해 8월 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에 보도된 주요 기사인 “이슬람의 테러가 바그다드와 예루살렘의 평화를 깬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두 도시에 감행된 자살폭탄 공격에 관한 뉴스를 소개하고 있다. FAIR는 이슬람이란 단어의 사용이 공격적이고 불공평하며, “평화를 뜻하는 이슬람의 의미에 대한 이유 없는 중상”이라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기사 중 ‘이슬람의 테러’ 구절에 나오는 ‘이슬람’이란 단어의 사용이 평상시 쓰는 범주 내에 들어있다고 봤다. 평의회는 모슬렘들이 보통 사안을 불공평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근본주의자들의 종교적 동기나 폭탄의 운용방법을 정확히 소개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불만신청은 기각됐다. □

MBC허위보도로 명예 훼손… 법원, “2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규)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수행비서 하모 씨(32)가 MBC와 MBC 기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MBC측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하씨가 특정됨으로써 하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가 수사관계자에게 제보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특검팀의 지휘부나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등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지난해 5월 MBC가 ‘65억원 새나갔다’는 제목으로 “대북송금자금 65억원 중 3000만원이 하씨 계좌로 입금됐으며, 특검팀은 65억원의 상당부분이 정치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중”이라고 보도하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2004. 5. 12.**

방송사 출구조사 오보…네티즌들, 손해소 청구

지난 17대 총선 직후 각 방송사들이 내보낸 출구조사 결과가 최대 30석 이상의 오차를 보인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다음달 10일 이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사이버 청년당원들의 모임인 ‘젊은 보수 젊은해밀’ 회원들은 7일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오보가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며 “소송에 동참할 네티즌들을 모으기 위해 ‘방송개혁을 위한 시민운동 모임’ (cafe.daum.net/reformbroadcast)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는 “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총선 예측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줬다”며 지상파 방송 3사의 총선 개표 방송과 관련해 KBS MBC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SBS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세계일보, 2004. 5. 8.**

김도훈 전 검사, 1심 유죄 부분 인정

‘양길승 몰래 카메라’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신문에 일절 옹하지 않았던 김도훈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는 1심 유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검사는 2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 신문을 통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외압설을 퍼뜨린 것과 관련, “젊은 혈기와 수사의욕이 앞서 그동안

몸담았던 검찰에 누를 끼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 준다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S용역업체에 몰카를 의뢰한 홍모(44) 씨에게 1억원 상당의 땅을 요구하고 이○○ 씨의 변호인 민모(37) 씨에게 ‘이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달라’고 했다는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천629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 2004. 4. 28.**

오마이뉴스, 조선에 2억 손해소

오마이뉴스(대표 오연호)는 지난 22일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오마이뉴스는 소장에서 “지난 1일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는 진중권 씨가 서울대 강연에서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진씨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 등이 “오연호 기자(오마이뉴스 대표)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며 진씨의 말을 인용 보도한 데 대해서도 “오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는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언론사로서 신뢰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디지털조선일보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부터 ‘진중권-오마이는 파시스트집단’이라는 제목으로 진씨의 강연내용을 보도했으며 조선일보는 당일 발행한 2일자 초판에 이같은 내용을 다뤘다.

진씨 발언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오마이뉴스가 항의하자 디지털조선일보와 조선일보는 1일 밤 10시 30분 판과 2일자 배달판 기사에 진씨 발언 등을 수정하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오마이뉴스 주장을 덧붙였다. **경향신문, 2004. 4. 24.**

‘인터뷰로 부인 명예훼손’ 조○○ 씨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24일 부인과 불화를 겪던 중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31)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10월 한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인 최○○ 씨와의 이혼협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에게 이혼 합의서 초안을 보내줌으로써 최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작년 11월 한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씨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 및 허위사실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전 직원 최모(2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2004. 4. 24.**

'명예훼손' 정형근의원 벌금 7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2일 '언론대책 문건사건' 관련 발언 등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벌이 아니어서 상급심에서 형량이 늘지 않는 한 선고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부나 국정원 지원을 받은 일 없는 서경원 전 의원이 정부 사주를 받았다고 한 발언과 '언론대책 문건'과 관련해 평화방송 이○○ 기자와 중앙일보 문○○ 기자가 해명했는데도 이강래 전 수석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서경원 전 의원이 방북시 받은 5만 달러중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사실로 믿었을 만한 개연성이 인정되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는 표현은 정치적 타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99년 3월 "서경원 전 의원이 정부 사주로 나를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발언 ▲99년 11월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빨치산 수법'을 쓰고 있고 서경원 전 의원에게서 1만 달러를 받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고 한 발언 ▲99년 10월 "이강래 전 수석이 '언론대책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 발언 등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200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2004. 4. 22.**

이신범 씨, '국정원 명예훼손' 고소 취하 요구

국가정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고소 취하와 검찰의 기소철회를 요구했다.

이신범 씨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JJ 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요청,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유재우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야당과 언론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1999년 4월 기자들에게 '김대중 정권의 고문 등 인권침해 사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 "국정원이 국회의사당 529호실을 비밀사무실로 운영,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 파악과 감시활동을 해 왔다"고 주장,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위원회 발표에서 '인권에 관한 국가제도: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국정원 사찰과 인권침해 때문에 한국에 조속히 독립적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유인물의 번역본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LA에 기반을 둔 국제교육개발/인도주의법률프로젝트 회장 랄프 퍼티그 변호사(

남가주대교수)는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의 활동을 비난했다고 5년이 지난 지금 기소 되는 것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유엔 인권소위원회 고등판무관실에 제소,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4. 4. 22.

'50억지원설' 김경재의원에 30억 배상판결

'노무현 후보 캠프 50억원 지원설' 주장과 관련, 민주당 김경재 의원에 대해 동원측에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기동 부장판사)는 21일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과 동원캐피탈(주), (주)동원에프앤비가 민주당 김경재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액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사무처에 소장 부분과 소송 안내서, 판결선고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피고측이 전혀 응소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소장 부분 송달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측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257조 1항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억원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원고측이 이에 근거해 본압류 절차를 밟아 김 의원의 재산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경매를 신청할 경우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경매에 대한 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김경재 의원은 "민사소송 진행은 물론 판결선고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오히려 원고측과 이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인데 기자에게서 판결선고 소식을 처음 들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 보좌관은 "총선을 앞두고 3월말부터 아무도 의원회관에 나가지 않아 법원 우편물이 왔는지 알지 못했다"며 "국회 사무처에서 누가 서명하고 법원 서류를 수령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은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효력을 띠게 되지만 판결이 확정해도 응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이유가 입증되면 추후에라도 추완항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말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 개최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원참치가 50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 대선 이후 당선축하금으로 줬는지, 후보단일화 이후 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재철 회장 등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2004. 4. 21.

"취재 진실성 있으면 배상 책임 없어"

취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당시 취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해당 기자와 언론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 3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6일 전 울산 북구의회 박모(50)

의원이 모 방송사와 이 방송사의 취재기자 김모(36)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박씨의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와 관련, 김 기자의 보도에 다소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으나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으로 인해 기자가 수사기관 처럼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기관이 실제로 원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울산의 주요 관심사항이 환경문제인 점을 감안하면 보도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9년 11월 자신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김 기자의 기사가 나온 뒤 구속영장이 청구돼 울산지법으로 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처분을 받아 기자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연합뉴스, 2004. 4. 16.**

서울대프락치 사건 관련 총선후보 피소

1984년 서울대생들로부터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 받아 폭행 당했던 전○○(49) 씨가 유시민(44.경기 고양 덕양갑) 열린우리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A(41)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14일 오후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전씨는 소장에서 "A후보가 무고한 고소인을 프락치로 여겨 폭행해놓고 자신의 각종 홍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폭행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처럼 진실을 오도하고 자신을 미화하고 있다"며 "이는 A 후보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고소인을 매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 9일 구리시 선관위에 A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A후보측은 "전씨 폭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는 A후보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 무고하게 공범이 돼 버렸다"며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A후보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신청, 현재 심의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4. 4. 14.**

"조선일보 보도는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친노단체인 '국민의 힘'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진성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23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작년 4월 3일자에 '국민의 힘이 전국 대회를 개최해 언론·정치 개혁 사업을 논의했으며, 김삼웅 전 평민당 당보 주간은 "예컨대 조선일보에 글 쓰는 사람과는 사돈 안 맺기 운동이나 조선일보 보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기 운동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측은 "'조선일보 보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자'는 말은 참가자들 간의 농담성 발언이었으나 이를 진지한 발언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발언이 사실인 만큼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힘측이 “행사 당시 ‘조선일보 기자는 나가달라’ 고 했는데도 취재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데 대해 검찰은 “정상적인 취재 행위이고,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사건·사무 규칙은 무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를 송달받은 뒤 한 달 이내에 항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힘측은 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2004. 4. 14.

노사모, 한나라당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4일 박모 씨 등 노사모 회원 2천870여 명이 “악의적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나라당과 박원홍 의원을 상대로 낸 28억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는 개별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공적 존재”라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상대방에 대해 비유적, 풍자적 표현을 통한 평가를 통해 상호비판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시 상황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발언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사모도 특정 정치인의 지지를 위한 단체인 이상 대립되는 정치세력에 의한 비판은 상당 부분 감수해야 하는 점과 일반 국민도 문제의 발언들을 특정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상대방 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 비판 정도로 받아 들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모의 단체적 특징이나 구성원 수에 비취볼 때 피고의 발언으로 노사모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함께 저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0년 5월 당직자 회의 및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 등에서 ‘노사모는 권력을 등에 업은 정치룸펜’,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박씨 등은 그해 7월 1인당 100만원씩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2004. 4. 14.

“진정서 제출만으로 명예훼손 성립안해”

상부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4일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회사에 제출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급자인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이 적시된 진정서를 회사의

인사부장 등 상부와 서울지방노동청에 보냈다고 해서 이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모 은행 직원 숙소 취사반에서 일하던 김씨는 2001년 7월 자신이 해고될 처지에 처하자 상급자인 A씨 때문이라고 생각,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회사 대표 등에게 보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죄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2004. 4. 14.**

무주군수 명예훼손 피고인 범정구속

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 최유정 판사는 13일 '무주군수 미성년자 윤락 의혹'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한모(52) 피고인을 범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죄질이 나빠 한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범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김세웅 무주군수는 지난 2002년 4월 모 지방 일간지가 '무주군 고위직 10대와 성관계'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자 해당 기자와 제보자인 한씨, 모 정보 기관원 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전주지검이 고소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김군수는 항고했고, 대검은 지난해 9월 전주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무주군수 미성년자 윤락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한 피고인의 불법 혐의를 포착, 지난 2월 한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2004. 4. 13.

"공적인 시정 비난 보도 손해책임 없어"

공적인 문제로 시정(市政)을 비난한 언론보도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조원철부장판사)는 8일 마산시와 황철근마산시장이 경남도민일보와 비난 기사 작성기자 및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의혹이 있는 조두남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비난하는 기사외에도 조두남 공과를 함께 기록한다거나 기념관 용도를 바꾸자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고 학계와 문학계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설립돼 다각적 논의가 이뤄졌으므로 공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사내용이 전체적으로 친일의혹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기념관 건립을 막기 위해 공개적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들의 행동이 위법행위로 평가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마산시와 황시장은 지난해 5월말 개관한 조두남기념관과 관련 도민일보측이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사이 수십차례에 걸쳐 조두남선생의 친일의혹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시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됐다고 정신헌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4. 4. 8.**

시사패러디 인터넷 운영자 등 3명 첫 기소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총선 후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노래와 가사 등을 게시,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웹디자이너 등 3명이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7일 유명 시사정치 인터넷 사이트와 음악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인 김모(37.고양 일산구), 강모(33.고양 일산구)씨와 웹디자이너 이모(28.수원 장안구)씨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총선에서 시사 패러디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 과정에서 시사 패러디에 대한 표현의 한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김씨 등은 "인터넷상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한달 가량 자신이 운영하는 시사정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비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래와 가사, 글 등 6건을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1월 소속사 웹디자이너인 이씨와 함께 가칭 친일청산법에 공동 발의하지 않은 국회의원 114명이 마치 모두 법안에 반대한 것처럼 '친일청산법 반대한 국회의원'이란 제목의 플래시 동영상 제작, 100여 곳의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 3곡과 가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배포하고 자신이 작사·작곡한 비슷한 내용의 노래와 가사를 김씨 인터넷 사이트에 링크시킨 혐의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에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들의 적극성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즉 명예 훼손이나 도덕률에 반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씨와 강씨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특히 플래시 동영상은 친일청산법 상정에 앞서 발의에 참가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찬성해 달라는 뜻에서 제작한 것으로 선거와 무관하며 노래와 가사 게시도 개정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04. 4. 7.**

"공익 부합되면 명예훼손 해당안돼"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3단독 신현범 판사는 22일, 지난해 6월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들에게 "원장이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부패된 음식을 먹였다"고 발언,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인 강모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밝히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이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과장된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소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은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의 원생과 관련된 일은 학부모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익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4. 3. 22.**

언론법제 관련 문헌

권혁남 (2004). 선거시기 여론조사 공표금지 이대로 좋은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 토론회 발제 논문, 4월 2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_____ (2004, 5월). 새 미디어선거법 적용과 문제점. 신문과방송, 제401호, 64-68.

김경호 (2004). 프레스 옴부즈맨 제도 운영에 관한 외국사례 고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주최 세미나 발제 논문, 5월 6-7일. 제주KAL호텔.

_____ (2004, 봄). 언론보도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언론중재, 통권 제90호, 102-107.

김광원 (2004, 5월). 언론의 편파성과 권력지향주의. 신문과방송, 제401호, 20-23.

김승수 (2004). 미디어환경변화에 따른 산업, 정책적 과제. 월간 신문과방송 40주년 기념세미나 발제 논문, 3월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김영주 (2004, 4월). 인터넷언론 보수언론의 카운터 파트, 기계적 중립성 거부. 신문과방송, 제400호, 64-67.

김옥조 (2004). 미디어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재영 (2004). 선거시기 언론의 특정정당 지지에 대해. 2004총선미디어연대국민연대 주최 토론회 발제 논문, 4월 13일. 서울: 철학카페 느티나무.

김재협 (2004, 4월). 정치인, 공무원 제보의 허용 범위. 신문과방송, 제400호, 128-131.

_____ (2004, 5월). 인신공격도 '의견 면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신문과방송, 제401호, 64-68.

김중석 (2004, 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지역신문의 과제.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통권 제9호, 158-177.

김지운 (2004). 글로벌 시대의 언론윤리. 서울: 한울.

김창룡 (2004). 언론피해구제제도 활성화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토론회 발제 논문, 5월 21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2층 그랜드볼룸.

_____ (2004, 4월). 언론의 인터넷 정보 인용의 문제. 신문과방송, 제400호, 168-171.

김학웅 (2004, 5월). 패러디의 법적 논란. 제401호, 64-68.

문재완 (2004, 봄).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언론중재, 통권 제90호, 4-21.

문종대 (2004). 존 밀턴의 언론 자유 사상. 한국언론학보, 48(1), 337-361.

민경배 (2004, 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패러디와 실명제 중심으로.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통권 제9호, 82-91.

박선영 (2004). 개정 정치관계법과 인터넷언론. 한국언론재단 주최 세미나 발제 논문, 4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2층 연수센터.

박인수 (2004, 봄). 공인의 반론권 행사에 관한 각국의 법제현황. 언론중재, 통권 제90호, 40-50.

서한 (2004, 4월). DMB 법안통과 이후 쟁점과 전망. 신문과방송, 제400호, 136-139.

성선제 (2004, 봄). 최근의 언론관계 판결 동향. 언론중재, 통권 제90호, 51-62.

손승혜 (2004). 위성방송 사업의 경쟁 형태와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8-1호, 289-327.

안상운 (2004). 야당의 방송편파성 시비에 대한 법적 정당성. 총선미디어연대 토론회 발제 논문, 3월 2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유동훈 (2004, 봄). 참여정부의 오보 대응. 관훈저널, 통권 제90호 20-29.

유일상 (2004). 신문독자불만처리제도의 정착과 발전 방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주최 세미나 발제 논문, 5월 6-7일. 서울: 제주KAL호텔.

이구현 (2004, 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 관훈저널, 통권 제90호 30-42.

- 이재경 (2004). 저널리즘의 위기와 언론의 미래. 월간 신문과방송 40주년 기념세미나 발제논문, 3월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이재국 (2004). 편파·왜곡보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주최 언론개혁 연속토론회 발제논문, 5월 20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재진 (2004, 봄). 정부의 대 언론사 소송 언론자유 훼손 가능성 많아. 관훈저널, 통권 제90호 11-19.
- 이재진, 유재웅 (2004). 언론중재제도의 조정전치 기능에 대한 재고찰. 한국언론학보, 48(2), 267-293.
- 이준웅 (2004). '공정성 시비'와 한국언론-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에 따른 언론비평의 변화. 언론광장 주최 포럼 발제논문, 4월 28일. 서울: 철학카페 느티나무.
- 이준웅 (2004, 봄). 공정성 시비와 한국언론: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에 따른 언론비평의 변화.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9호, 10-29.
- 장철익 (2004, 봄).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상). 언론중재, 통권 제90호, 63-75.
- 정윤식 (2004, 봄). 방송통신 융합의 쟁점과 과제.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9호, 138-147.
- 조관행 (2004, 봄). 언론중재절차의 개선방안. 언론중재, 통권 제90호, 108-109.
- 최영 (2004, 봄). 인터넷매체의 현황과 문제점. 관훈저널, 통권 제90호 94-100.
- 최영재 (2004, 5월). 기사인가 의견인가. 신문과방송, 제401호, 12-15
- 한동섭 (2004, 봄). 공적 개입과 언론: 미디어정책의 방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9호, 110-127.
- 한위수 (2004, 봄).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통권 제90호, 22-39.
- 홍명신 (2004). 미국 스팸메일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8-1호, 5-36.
- 황용석 (2004). 인터넷언론의 범주와 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한국언론재단 주최 세미나 발제논문, 4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2층 연수센터.
- 황용석 (2004, 4월). 인터넷실명제와 불복중운동. 신문과방송, 제400호, 184-188.
- Brian, R. (2004). The Public's Right to Know: A Dangerous Notion.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9(1)*, 46-55.
- Dan, B., & Yehiel, L. (2003, Winter). Professional Confidence and Situational Ethics : Assessing the Social-Professional Dialectic in Journalistic Ethics Decis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4)*, 783-801.
- Joel, T. (2004). Broadcast, Cable and Digital Must Carry : The Other Digital Divide.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9(1)*, 101-150.
- Mattew, D. B., & David, K. P. (2004). Standing At the Crossroads: Social Science, Human Agency and Free Speech Law.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9(1)*, 1-23.